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62-01

연 구 보 고 서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26-13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urt's Guardianship Supervision Practices

연구책임자: 신 유 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ii

Abstract ····· x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후견 및 후견감독 제도 개관 ····· 7

제1절 현행 후견제도 ····· 9

Ⅰ. 후견의 의의 ····· 9

Ⅱ.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 9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9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 10

3. 성년후견의 유형 ····· 10

Ⅲ.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 13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목적 ····· 13

2. 2011년 개정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 ····· 14

3. 미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및 후견인의 권한 ····· 14

Ⅳ. 후견사건의 진행 ····· 15

1. 성년후견 사건 ····· 15

2. 미성년후견 사건 ····· 20

제2절 현행 후견감독제도 ····· 22

Ⅰ. 후견감독 ····· 22

1. 의의 ····· 22

2. 후견감독의 필요성 ····· 22

3. 후견감독기관 ····· 23

Ⅱ.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 24

1. 근거 규정 ····· 24
2. 후견감독사무의 특성 ····· 27
3. 후견감독 절차 ····· 28

제3장 외국의 후견감독 제도 ····· 33

제1절 일본의 후견감독 제도 ····· 35
Ⅰ. 일본의 후견 제도 ····· 35
Ⅱ. 일본의 후견감독 실무 ····· 36
1. 가정재판소의 감독과 후견감독인 제도 ····· 36
2.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부담에 대한 대응 ····· 37
Ⅲ. 시사점 ····· 39
제2절 미국의 후견감독 제도 ····· 41
Ⅰ. 미국의 후견 제도 ····· 41
Ⅱ. 통일후견보호조치법의 후견감독 체계 ····· 42
1. 신상관리 후견 ····· 42
2. 재산관리 후견 ····· 42
Ⅲ. 미국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안 ····· 43
1.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 ····· 43
2. 개선안 ····· 44
Ⅳ. 시사점 ····· 45
제3절 독일의 후견감독 제도 ····· 46
Ⅰ. 독일의 후견 제도 ····· 46
Ⅱ. 후견법원의 후견 감독 ····· 47
1. 후견법원의 조직과 기능 ····· 47
2. 후견법원의 지원과 감독 ····· 47
Ⅲ. 후견청의 감독 지원 ····· 48
1. 후견청의 관할과 조직 ····· 48
2. 후견청의 역할 ····· 49
Ⅳ. 시사점 ····· 50

제4장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문제점 ····· 51

제1절 후견감독실무 현황 ····· 53
Ⅰ. 개관 ····· 53

Ⅱ.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 ····· 54
1. 연도별 후견감독 개시건수 ····· 54
2. 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 56
3. 연도별 후견감독 종국건수 ····· 59
4. 진행 중인 사건 수 ····· 61
Ⅲ. 각 법원의 인적 현황 ····· 64
1.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 64
2. 업무담당자 사무분담 형태 ····· 67
3. 보직기간 ····· 71
Ⅳ. 후견감독업무 처리 절차 ····· 72
1. 사건 분류 및 관리 방식 ····· 73
2. 후견인 교육 ····· 74
3. 초기후견감독 ····· 77
4. 정기후견감독 ····· 79
5. 심층후견감독 ····· 83
6. 후견감독 종료 ····· 84
Ⅴ. 각 법원의 업무지침 및 양식 ····· 87
1. 각 법원의 업무지침 ····· 87
2. 각 법원의 보고서 양식 ····· 88
Ⅵ. 후견감독업무 지원체계 관련 현황 ····· 89
1. 외부 전문가 위원의 위촉 및 운영 ····· 89
2.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 92
3. 후견감독담당자 연수 및 교육 ····· 94
Ⅶ. 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 95
1. 설문조사 개요 ····· 95
2.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초정보 ····· 96
3. 업무의 비중 ····· 98
4. 업무량 ····· 106
5. 업무 수행의 어려움 ····· 109
6. 적정 보직기간 ····· 112
7.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 113
8. 소결론 ····· 113
Ⅷ. 서울가정법원 실무 운영 체계 ····· 114
1. 개관 ····· 114
2. 후견센터 설치와 초기 운영 ····· 115
3.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 개선 ····· 116

4. 후견과 설치 ····· 120
제2절 현행 후견감독실무의 문제점 ····· 121
Ⅰ.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문제 ····· 121
1. 인력 수의 부족 ····· 121
2. 사무분담 관련 문제 ····· 122
3. 보직기간 ····· 125
Ⅱ. 법원별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 정도의 상이 ····· 126
Ⅲ. 통일적 업무지침 및 지원체계 부재 ····· 128
1. 업무지침 ····· 128
2. 지원체계 부족 ····· 129

제5장 후견감독실무 개선방안 ····· 131

제1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 ····· 133
Ⅰ.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개선 ····· 133
1. 후견감독사건 전담 인력 배치 ····· 133
2.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활용 확대 ····· 134
3. 후견사건 담당 조직 개편 ····· 137
Ⅱ. 통일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 마련 ····· 140
1. 통일적 업무지침 마련 ····· 140
2.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 154
Ⅲ. 감독업무 지원 전문가 활용 방안 ····· 158
1.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 ····· 158
2. 운영 방안 ····· 159
3.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160
Ⅳ. 국선후견인 제도 정비 ····· 162
1.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 162
2. 국선후견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166
3. 사건 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 167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168
Ⅰ. 논의의 배경 ····· 168
Ⅱ. 각 방안에 관한 검토 ····· 169
1. 본원에서 지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 · 지원하는 방안 ····· 169
2. 후견사무전담기구 설치 방안 ····· 169
3. 관할 집중 방안 ····· 170

4. 검토 ····· 171
Ⅲ.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 172
1. 현행 가사소송법상 후견감독사건의 관할 ····· 172
2. 기존 가사소송법 개정안 ····· 172
3. 가사소송법 개정안 ····· 174

제6장 결론 ····· 177

참고문헌 ····· 181

별첨 ····· 184

[별첨1] 각 법원 후견감독보고서 양식 ····· 184
1. 서울가정법원 ····· 184
2. 수원가정법원 ····· 208
3. 대구가정법원 ····· 211
4. 부산가정법원 ····· 218
5. 울산가정법원 ····· 222
6. 광주가정법원 ····· 228
[별첨2]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문항지 ·· 237

표 목차

[표 1] 연도별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 ····· 27
[표 2] 연도별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 ····· 28
[표 3]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 ····· 54
[표 4]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 56
[표 5]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 ····· 59
[표 6]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수 ····· 62
[표 7]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 65
[표 8] 각 법원 후견업무담당자의 업무분담 형태 ····· 68
[표 9] 후견감독업무 담당 시기 ····· 97
[표 10] 근무 법원 유형 ····· 97
[표 11] 업무담당 당시 직렬 ····· 98
[표 12]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전체 응답자 대상) ····· 99
[표 13]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 99
[표 14]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 100
[표 15]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 100
[표 16]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직렬별) ····· 101
[표 17]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직렬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 102
[표 18]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전체 응답자 대상) ····· 103
[표 19]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 103
[표 20]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 104
[표 21]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104
[표 22]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직렬별) ····· 105
[표 23]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직렬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 106
[표 24] 업무량 비교(전체 응답자 대상) ····· 107
[표 25] 업무량 비교(업무담당시기별) ····· 107
[표 26]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전체 응답자 대상) ····· 108
[표 27]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업무담당시기별) ····· 109
[표 28]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법원유형별) ····· 109
[표 29]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전체 응답자 대상) ····· 111
[표 30]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업무담당시기별) ····· 111
[표 31]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법원유형별) ····· 112

[표 32] 적정 보직기간(전체 응답자) ····· 112
[표 33]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전체 응답자) ····· 113
[표 34]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 155
[표 35] 감독업무 보조 전문인력 활용 관련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160
[표 36] 국선후견인 선임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안 ····· 163
[표 37] 국선후견인 선임 관련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164
[표 38] 후견감독사건 관할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안 ····· 174

그림 목차

[그림 1] 후견의 유형 ····· 11
[그림 2] 후견개시심판 청구건수 ····· 36
[그림 3] 후견인 선임자 수 비율 ····· 38
[그림 4]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누적개시건수 ····· 56
[그림 5]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 58
[그림 6]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누적종국건수 ····· 61
[그림 7]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수 ····· 64
[그림 8]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합계 ····· 67
[그림 9] 법원유형별 후견업무담당자 업무분담 형태 ····· 70
[그림 10] 후견감독업무분장 형태 ····· 71
[그림 11] 법원사무직렬 보직기간 ····· 72
[그림 12] 조사사무직렬 보직기간 ····· 72
[그림 13] 미성년후견감독 사건과 성년후견감독 사건 구분 관리 여부 ····· 73
[그림 14] 성년후견감독사건 차등 관리 여부 ····· 74
[그림 15]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 교육 실시 여부 ····· 76
[그림 16]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 교육 실시 방법 ····· 76
[그림 17] 미성년후견인교육과 성년후견인교육 구분 실시 여부 ····· 77
[그림 18] 초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여부 ····· 78
[그림 19] 초기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여부 ····· 78
[그림 20] 후견인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확인 여부 ····· 78
[그림 21] 재산목록보고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 79
[그림 22] 재산목록보고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내용 ····· 79

[그림 23] 정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여부 ····· 80
[그림 24] 정기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 80
[그림 25] 정기 후견감독 조사방법 ····· 81
[그림 26] 후견사무보고서 사전 제출요구서 발송 여부 ····· 81
[그림 27] 후견사무보고서 및 증빙서류 확인 여부 ····· 82
[그림 28]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 82
[그림 29]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내용 ····· 83
[그림 30] 심층후견감독 실시 여부 ····· 84
[그림 31] 심층후견감독 형태 ····· 84
[그림 32]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확인 여부 ····· 85
[그림 33]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 85
[그림 34]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의 내용 ····· 86
[그림 35] 종료감독보고서 작성 여부 ····· 86
[그림 36] 후견종료등기신청 안내 여부 ····· 87
[그림 37] 업무지침 존부 ····· 88
[그림 38] 후견감독보고서 양식 존부 ····· 88
[그림 39] 후견사무상담위원 위촉 여부 ····· 90
[그림 40]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여부 ····· 91
[그림 41] 심층후견감독위원 위촉 여부 ····· 91
[그림 42]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위촉 여부 ····· 91
[그림 43] 서울가정법원 연도별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건수 ····· 93
[그림 44] 국선후견인제도 운영 여부 ····· 94
[그림 45]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인력 재배치 ····· 118
[그림 46]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인력배치 현황 ····· 139

국문 요약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피후견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후견감독사건은 일반적인 소송사건과 달리 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계속되고 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후견감독사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후견감독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사법 자원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인적 · 물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법원이 적지 않고, 후견감독의 구체적 업무처리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하여 법원에 따라 감독업무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견감독실무가 전국적으로 보다 균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각 법원의 후견감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후견감독사건의 추이,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인적 구성과 사무분담, 감독절차, 업무처리 기준과 지침, 지원체계 및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후견감독사건 수와 업무부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겸임 구조 및 단기 보직기간으로 인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지침과 보고서 양식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 국선후견인과 같은 지원체계가 법원별로 달라 감독실무에 있어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실무 개선이 가능한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 내 개선방안으로, 후견감독 전담 인력 배치, 전문직위 제도의 활용, 후견조사과 설치 등을 제안하였고, 업무지침과 조사보고서 양식 정비, 예규 개정 등을 통해 통일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과 국선후견인 제도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가정법원 본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후견, 후견감독,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 전담 인력, 업무 표준화, 국선후견인, 관할 집중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urt's Guardianship Supervision Practices

Shin, Yuri
Researcher, JPRI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e 2011 amendment to the Civil Act, family courts came to exercise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affairs of guardians after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Since guardians exercise powe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persons under guardianship, including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welfare matters, conducting appropriate supervision of guardianship affairs is essential to protecting the welfare of such persons. Guardianship supervision cases differ from general litigation cases in that they continue for a long period until a cause for termination arises and tend to increase cumulatively. As the number of these cases increases, the burden on courts in performing guardianship supervision has also grown.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ue to limited judicial resources, many courts have not been able to secure sufficient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to keep pace with the rising caseload. Furthermore, the handling of guardianship supervision affairs often vari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rt, leading to disparities in supervision practic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guardianship supervision practice in courts nationwide and proposes ways to promote greater consistency in its oper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as well as written inquir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of court personnel responsible for guardianship supervision. Through these methods, the study examined trends in guardianship super-

vision cases, staffing and allocation of duties, supervisory procedures, work standards and guidelines, support systems, and the views of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guardianship supervi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ourts face staffing shortages relative to the number of guardianship supervision cases and the resulting workload. The findings also reveal that concurrent assignments and frequent personnel rotations make it difficult to build expertise and undermine continuity in the work. Courts also differ in how they conduct guardianship supervision, while work guidelines and report forms remain insufficiently standardized. Support systems, such as the utilization of external expert committee members and publicly funded court-appointed guardians, also vary by court, resulting in disparities in guardianship supervision practice.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both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and mid- to long-term institutional reforms. As measure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suggests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to guardianship supervision, making use of the specialized-position system, and establishing guardianship investigation divisions. It also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a more unified system through the refinement of work guidelines and investigation report forms, as well as amendments to relevant court rul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ways to make more effective use of external experts and to improve the publicly funded court-appointed guardian system. Finally, as a mid- to long-term reform measure, the study suggests that legislative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to concentrate jurisdiction over guardianship supervision cases in the principal seats of family courts.

Keywords: guardianship system, guardianship supervision, family court, guardianship supervision practices, specialized-position system, standardization of work procedures, publicly funded court-appointed guardian,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제1장

서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1. 3. 7. 민법이 개정[1]되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피후견인의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후견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사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후견인은 건강상태나 판단능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의 재산처분이나 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신상보호 영역에서도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 의료행위, 면접교섭 등과 관련한 후견인의 결정이 피후견인의 삶의 질과 기본권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견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사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실질적 절차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감독절차에서 후견인의 재산관리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여 후견인을 변경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례[2]도 확인되는데, 이는 후견감독이 후견인의 위법 · 부당한 후견사무 수행을 통제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후견감독사건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개시되고, 피후견인의 사망, 미성년자의 성년 도래, 특정후견 기간만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 종료되므로, 다른 사건과 달리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성년후견사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후견감독사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후견감독 업무 부담도 커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
2)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5억 8,000여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82).

지고 있으나, 후견감독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 업무처리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인적 · 물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법원도 적지 않다. 서울가정법원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가정법원의 경우 후견과나 후견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체계를 갖추어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은 규모 법원에서는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후견감독이 형식화되거나 사건 관리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 따라 감독의 기준과 강도가 달라지거나 업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조치의 내용이 달라져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견감독실무가 전국적으로 보다 균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와 관련한 인적 구성과 사무분담, 감독 절차, 업무처리 기준 및 지침,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한 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견감독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견감독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의 내용

이 보고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제6장을 제외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감독제도를 개관하고, 법원의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근거 규정, 후견감독사무의 특성, 후견감독 절차 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후견감독 법제를 살펴본다. 법원이 후견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후견감독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들 나라의 후견감독 운영 현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각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먼저 전국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 인적 현황, 업무 처리 절차, 업무지침 및 양식, 업무 지원체계 등 실제 후견감독실무 현황을 조사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후견감독사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후견감독업무의 비중과 업무량, 업무수행의 어려움, 적정 보직기간,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다. 그리고 전국 법원 중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운영을 검토한다. 나아가 각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후견감독실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개선, 통일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 마련, 감독업무 지원 전문가 활용, 국선후견인 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II.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후견감독제도와 실무 운영 현황에 관한 문헌을 수

집 ·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후견감독사건의 개시건수, 종국건수는 사법연감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서 제공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법원의 구체적인 후견감독업무 처리 현황에 관하여는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견감독사건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조사는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후견감독 제도와 관련하여 김성화, 양승욱 조사위원이 일본과 독일의 관련 규정과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초안 작성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백수빈 조사위원은 통계조사 결과와 각 법원의 구체적 후견감독 업무처리 현황 자료에 대한 시각화 및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각화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제2장

후견 및 후견감독 제도 개관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현행 후견제도

I. 후견의 의의

후견제도는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년자와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민법은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와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II.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2011년 개정 민법'이라 한다)에 도입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다. 종래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위한 보호제도로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규정하였으나,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하여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4]

3)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
4)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전원재판부 결정.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5] 피후견인이 후견의 일방적인 객체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필요성, 보충성, 보편화(또는 정상화, normalization)의 원리를 들 수 있다.[7] 필요성의 원리는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견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안 되고, 후견은 개시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피후견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화(또는 정상화)의 원리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하거나 격리하는 대신 그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성년후견의 유형

2011년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8]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9]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

5)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6)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7-8. 위 논문에서는 ‘잔존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현존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 이하의 내용은 윤진수 · 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2013), 21-22;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8-9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8) 미성년후견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성년후견을 ‘광의의 성년후견’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9) 법정후견의 한 종류인 성년후견을 ‘협의의 성년후견’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림 1] 후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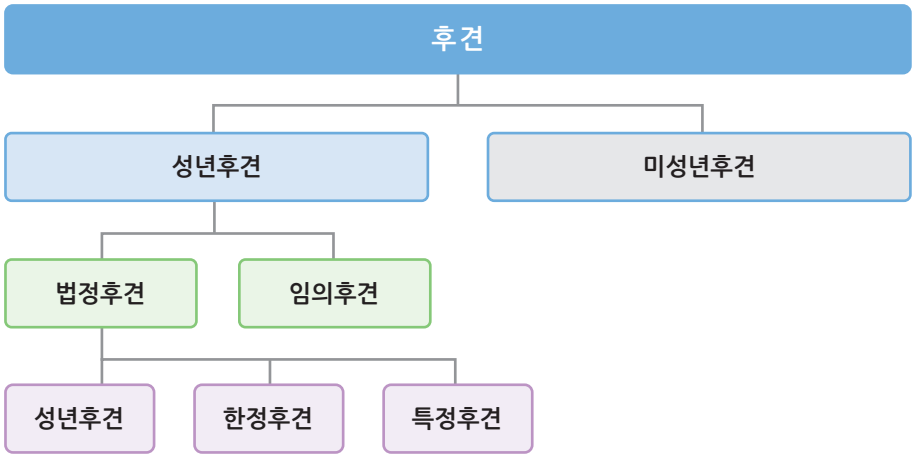

가. 법정후견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법[10] 제9조)을 대상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법 제1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법 제938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법 제949조 제1항).[11] 피성년후견인은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법 제947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법 제938조 제3항). 성년후견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법 제11조),[12]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법 제14조의3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법 제959조의20 제2항 본문) 심판에 의해 종료되고,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심판 없이 종료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10) 이하 민법은 '법'이라 칭한다.
11)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친족 2](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611.
12)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정신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의미한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34].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법 제12조)이 대상이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으나,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법 제13조 제4항).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가진다(법 제959조의4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법 제959조의4 제2항, 제938조 제3항). 한정후견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법 제14조),[13]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법 제14조의3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법 제959조의20 제2항 본문) 심판에 의해 종료되고,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심판 없이 종료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법 제14조의2)이 대상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개시되면 종료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지속적 · 포괄적 보호제도임에 반해, 특정후견은 개별적 · 일시적 · 일회적으로 보호조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14]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부여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진다(법 제959조의11 제1항).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 대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15]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 제959조의8).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사무처리가 종료된 경우(법 제14조의2 제3항),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후견등기에 관한 법

13)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 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54].
14)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 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57.
15)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 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63.

률 제29조 제1항) 종료되고,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법 제14조의3),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법 제959조의20 제2항) 심판에 의하여 종료된다.

나.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후견이다(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959조의14 제3항). 임의후견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법 제959조의18 제2항), 임의후견인이 해임된 경우(법 제959조의17 제2항),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법 제959조의20 제1항), 피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사망 또는 파산한 경우, 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법 제690조) 종료된다.

III.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목적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개시된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

16)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

2. 2011년 개정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

2011년 개정 전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의 의사나 친족과의 관계 및 친밀도, 친족의 후견에 대한 의사와 능력, 미성년자의 보호 · 교양과 관련한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 양육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미성년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17] 2011년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3. 미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및 후견인의 권한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개시되는 후견이다(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법 제938조 제1항),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법 제949조 제1항)과 동의권(법 제5조)을 가진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 · 재산관리권의 상실 또는 사퇴에 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법 제946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하게 미성년자를 보호 ·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거소지정권이 있다(법 제945조 본문).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45조 단서).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법 제826조의2), 사망하는 경우, 친권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실권 회복 선고가 있는 경우(법 제926조), 사퇴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회복한 경우(법 제927조 제2항), 미성년자가 입양되어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법 제909조 제1항 후문),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이 있는 경우(법 제909조의2 제4항, 제927조의2 제2항 제3호, 제931조 제2항) 종료된다.

17)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203.

Ⅳ. 후견사건의 진행

1. 성년후견 사건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사건

민법상 청구권자에 의한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정신상태의 감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가사조사, 심문(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등 심리를 거쳐 후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후견인 선임을 하여야 한다(법 제929조, 제936조, 제959조의2, 제959조의3).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대하여 친족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다.[18] 실무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친족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19]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건본인을 돌볼 가까운 친족이 없거나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본인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친족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향이 있다.[20]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947조, 제959조의6).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941조 제1항).[21] 또한

18)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55.
19)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법 제930조 제3항, 제959조의3 제2항),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20)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5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05.
21) 한정후견은 민법 제941조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으나, 실무는 민법 제959조의6, 제954조를 근거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한정후견인에게도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61].

실무에서는 후견개시심판에서 후견인에게 민법 제954조,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22]에 근거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후견인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해진 기준일 및 제출주기[23]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4]

후견개시심판 주문 예시[25]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확정일,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6]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22)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23)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주기는 통상적으로 1년이나, 사건본인의 재산이 일탈되었거나 사건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축하기도 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 그 주기를 길게 정하기도 한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09-1210].

24) 후견인이 제출한 후견사무보고서는 후견감독의 기초 자료가 된다.

2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10.

26) 사법연수원, “후견사건 실무”, 2025년 가사재판실무 연수일정표 및 연수자료 (코트넷 2025. 4. 9. 게시).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940조, 제959조의3).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임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7] 후견인 지위의 사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법 제939조, 제959조의3),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후견인을 선임한다(법 제936조 제2항, 제959조의3).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여 후견종료심판을 받은 경우,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사무는 종료된다.

나. 특정후견 사건

민법상 청구권자에 의한 특정후견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정신상태에

27)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대한 심리(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가사조사, 심문(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등 심리를 거쳐 후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후견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법 제14조의2 제1항), 실무에서 특정후견 심판 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사건이다.[28]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개시심판절차 지원, 피후견인 및 후견인 발굴, 후견인 후보자 교육 · 양성, 후견인 보수 등 후견 관련 비용 부담, 후견인 관리와 감독 등을 하여 사회취약계층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29][30][31]

---

2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78.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 · 법인 · 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특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후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특정후견 사건에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32]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법 제959조의10), 공공후견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고 있다.[33]

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 심판에서 정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처분 등의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959조의12, 제947조).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나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법 제941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959조의9, 제940조). 특정후견인 지위의 사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법 제959조의9, 제939조),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특정후견인을 선임한다(법 제959조의9, 제936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사무처리가 종료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사무는 종료된다.

다. 임의후견 사건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로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피임의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심리(가사소송법 제45조의5), 심문(가사소송법 제45조의6) 등 심리를 거쳐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0) 박인환,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제70권 제3호 (2021. 6.), 44-4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78-1279.

31)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후견유형은 특정후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도 가능하나, 주로 특정후견 형식으로 후견심판이 청구되고 있다.

3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83.

3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84-1285.

대한 감독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게 된다(법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은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959조의16 제1항). 실무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 기준일과 제출주기를 정하여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4)]

임의후견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되어 임의후견인이 해임된 경우, 피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등에 종료된다.

2. 미성년후견 사건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되고, 이 경우 반드시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법 제928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본인과 관계인의 의사 확인(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65조), 가사조사, 심문 등의 심리를 거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의사와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재산상태, 생존하는 부나 모, 미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양육의사 및 능력,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 후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자를 보호 · 교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한다.[35)]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교양에 있어 친권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미성년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보호와 교양을 할 수 있는 친족이나 보호자 중에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나,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추천된 후보자 중 적절한 사람이 없는 경우, 친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많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 또는 학대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6)]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3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310.
35)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친족 2](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584-585.
36)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219.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한다. 후견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941조 제1항). 또한 실무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면서 미성년후견인에게 민법 제954조에 근거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37]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정해진 기준일 및 제출 주기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940조). 미성년후견인 지위의 사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법 제9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친권 등의 회복, 친권자 지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은 종료된다.

3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344.

제2절 현행 후견감독제도

I. 후견감독

1. 의의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에 대한 견제와 지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후견감독이다.[38] 후견감독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개입하는 것뿐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관리를 포함한다.[39]

2. 후견감독의 필요성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므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미성년후견의 경우나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격리 허가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후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40] 그런데 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숙하므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의 부적합한 사무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후견인을 상시적으로 견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개입하는 감독행위가 필요하다.[41]

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에 대한 비위행위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적절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성

38)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45.
39)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46.
40)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7), 1.
41) 전현덕,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사단법인 온율 엮음), 나남 (2022), 350.

년후견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의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견제와 개입,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후견감독기관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감독기관으로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 중 임의후견[42]을 제외한 법정후견과 미성년후견의 경우 임의적[43] 후견감독인 제도를 두고 있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감독한다(법 제940조의6 제1항,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10 제2항).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941조, 제953조, 제959조의6, 제959조의12).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고,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후견사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법 제940조의6, 제950조,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 제2항). 후견감독인은 후견감독사무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954조). 실무에서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에게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견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공공후견 사건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임의적 후견감독인 선임률은 낮은 편이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후견감독인의 감독사무를 감독한다.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하여는 아래 II.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42) 임의후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43)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하여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감독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점, 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할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피후견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후견감독인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윤진수 · 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2013), 96 참조].

44)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5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253.

II.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1. 근거 규정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 제954조(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의해 준용), 제959조의16,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45조의7,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6이다.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 · 한정후견사무 · 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7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가정법원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법 제954조(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의해 준용), 제959조의16,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45조의7,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6은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다. 가정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제한 없이 거의 모든 종류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45] 후견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

45)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153.

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후견감독)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
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③ 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
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감독(기본)
3. 한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한정후견감독(기본)
4. 특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특정후견감독(기본)
5. 임의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임의후견감독(기본)

④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전산양식 C2601]를 작성 비치하고 해당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후견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 등에게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전산양식 C2602]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전산양식 C2603]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전산양식 C2604], 후견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5]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6]의 제출요구[전산양식 C2607]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 계속 중에 심판으로써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된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인 등이 스스로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 법원은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후견감독사무의 특성

후견감독사건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개시되고, 피후견인의 사망, 미성년자의 성년 도래, 특정후견 기간만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 종료된다. 이러한 후견감독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후견감독사건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6]

[표 1] 연도별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47]

연도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개시건수	1,595	2,857	3,051	3,866	4,714	4,963	5,092	5,205	5,035	4,979	5,095	46,452

위 표에서 보다시피, 후견감독사건은 2014년 하반기에 1,595건 개시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5,095건 개시되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개시건수[48]는 46,452건이다.

46)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7)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전산자료 회신(2024. 10. 7.자 및 2025. 10. 29.자)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가 2014.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견감독사건의 개시건수 및 종국건수에 관한 통계는 2014. 7. 1. 이후의 자료가 회신되었다.

48)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누적 개시건수.

한편,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연도별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는 다음 표와 같은데, 종국건수를 고려하더라도 전국 법원에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수는 매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

연도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종국 건수	42	215	565	1,053	1,327	1,751	2,054	2,509	3,593	3,360	3,632	20,1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후견감독사건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후견종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감독업무의 수행에 있어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한편, 후견감독사건은 후견개시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적 또는 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처분 등을 하는 가사비송사건이다.[49] 비송사건의 특성상 법원의 허가 또는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량의 여지가 크다. 후견적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후견인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후견감독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업무이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와 금융, 의료,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후견감독 절차

후견감독은 각 법원마다 인력과 사정이 상이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견감독사건 직권개시 → 후견인 교육 → 재산목록 제출 → 재산목록에

4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805.

대한 초기후견감독 →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후견감독(필요한 경우 심층후견감독) → 후견감독 종료'로 진행된다.[50]

가. 후견감독사건 직권개시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51]

나. 후견인 교육

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 특히 친족후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친족후견인은 후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재산목록의 작성이나 후견사무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후견제도와 후견감독절차에 대한 이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방법, 일반적 후견사무 수행 방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청구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미성년후견인 교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 정서적 특징을 고려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양육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다. 초기후견감독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담당 판사는 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52] 또는 가사조사관[53]에게 후견인의 재산목록의 제출 여부 및 작성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후견감독 조사명령을 하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

50) 이하 일반적인 후견감독 절차는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353-1363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2항.
5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53) 법원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로 법원사무관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예규의 '후견감독사건 담당자'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후견감독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을 후견감독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한다.[54] 미성년후견의 경우 초기 신상후견감독을 실시하기도 한다.

라. 정기후견감독

초기후견감독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 무렵에 정기후견감독을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후견개시심판에서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 매년 정기후견감독을 실시하는데, 법원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여 감독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사무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요구서나 보정명령을 보낸다.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사무보고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후견인에 대한 유선 또는 소환 조사, 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마. 심층후견감독, 조정조치 및 후속조치

초기후견감독 및 정기후견감독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층후견감독, 조정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판사의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회계사, 세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감독위원에게 후견감독재산조사의뢰 또는 후견감독신상조사의뢰를 하여 전문후견감독위원으로 하여금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후견감독재산조사보고서 또는 후견감독신상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전문후견감독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법원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이 심층후견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면 판사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후견인이 오랜 간병으로 인한 피로감, 무력감, 후견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미성년 사건본인이 친권자의 사망이나 양육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부당행위 등으

54)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산목록 제출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초기후견감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는 조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판사의 조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은 상담기관이나 상담위원에게 대상자의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 실시 후 상담위원이 제출한 상담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후견인이 감독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후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후견인이나 피후견인으로부터 후견사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 관계인을 심문기일에 소환하여 심문하기도 한다. 후견감독 결과 후견인의 사무수행에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서면경고문을 보내기도 하고, 후견사무 수행의 부적절성이 커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나 후견인이 질병, 노령 등으로 후견사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임하기도 한다.

바. 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은 후견감독인이 제출한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 조사, 출장 조사, 소환 조사 등을 통하여 후견감독인의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 · 보고한다.

사. 후견감독 종료

후견종료심판이 확정되거나 피후견인의 사망, 미성년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등의 후견종료사유가 발생하면 후견감독은 종료하게 된다. 후견종료사유가 발생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별다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종국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재산심층후견감독,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를 한 후 종국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외국의 후견감독 제도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일본의 후견감독 제도[55]

I. 일본의 후견 제도

일본은 1999. 12. 8. 민법상 금치산·준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149호),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호),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호) 및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호)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6]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나뉘고, 법정후견제도는 후견·보좌·보조로 나뉜다.[57] 후견은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좌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사람을, 보조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장래 자신의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장래의 후견사무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후견이다.

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일본 후견개시심판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3만 5천 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58] 일본 정부는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후견제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후견개시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이 기존 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 4.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9호)을 제정하여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 이후 청구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청구건수는 약 4만 건이다.

---

55) 각 나라의 후견과 후견감독 제도에 관한 소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위 연구 이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본, 미국, 독일의 후견감독 법제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56)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12.

57) 이하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12-213;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135-138.

58) 이하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그림 2] 후견개시심판 청구건수[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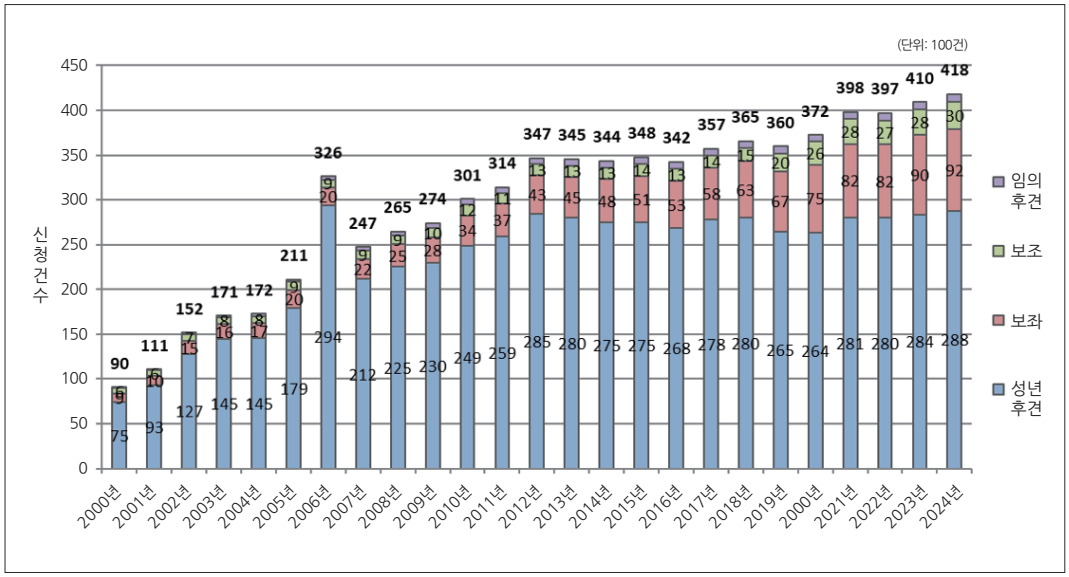

II. 일본의 후견감독 실무

1. 가정재판소의 감독과 후견감독인 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정재판소에서 성년후견재판 및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정재판소는 사건마다 정해진 시기(일반적으로 1년에 1회)에 후견인에게 조회서를 발송하고 후견사무보고서와 재산목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60)] 후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서기관 또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가사심판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61)] 가사심판관은 이를 기초로 검토를 진행한 후 감독 종료나 추가 조사 또는 심문 등 조치를 취한다. 가정재판소는 적당한 자에게 후견사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조사인'이라 하고,

59)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60)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56.
61)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56-257.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보수가 지급된다.[62]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가 감독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나,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감독인을 통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는 사안별로 재판소가 판단하는데,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는 유동자산이 많은 경우, 후견인에 의한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을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이 높은 사안으로 제시한다.[63] 후견감독인을 누구로 선임할지는 개별 사건이나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사법서사나 변호사 등 직업 전문가가 선임되고 있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비율은 약 97.3%이다. 그중 변호사는 748건(56.6%), 사법서사는 423건(32.0%), 사회복지협의회는 103건(7.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64]

2.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부담에 대한 대응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감독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사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자주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65] 최고재판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후견인에 의한 횡령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311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피해의 대부분은 친족후견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66]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로는 감소하였다. 일본 가정재판소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 제도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67]

---

62)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58.
63) 東京家庭裁判所 後見センター, “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について”, 後見センターレポート 第22号 (2020), https://www.courts.go.jp/tokyo-f/vc-files/tokyo-f/kouken/030421-25.pdf (2026. 1. 17. 확인).
64)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家庭局,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令和 6年 1月 ~ 12月—”, 12頁, 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2025/20250313koukengaikyou-r6.pdf (2026. 1. 17. 확인).
65)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150.
66)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67)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가. 전문가 후견인 선임의 증가

가정재판소는 친족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후견감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68] 이에 친족후견인 선임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전문가 후견인 선임 비율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당시인 2000년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중 친족의 비율이 91%이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7%로 크게 감소하였다.[69] 이에 비해 변호사, 사법서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수는 2000년에 전체 인원의 8%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71%로 크게 증가하였다.[70] 이와 같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증가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71]

[그림 3] 후견인 선임자 수 비율[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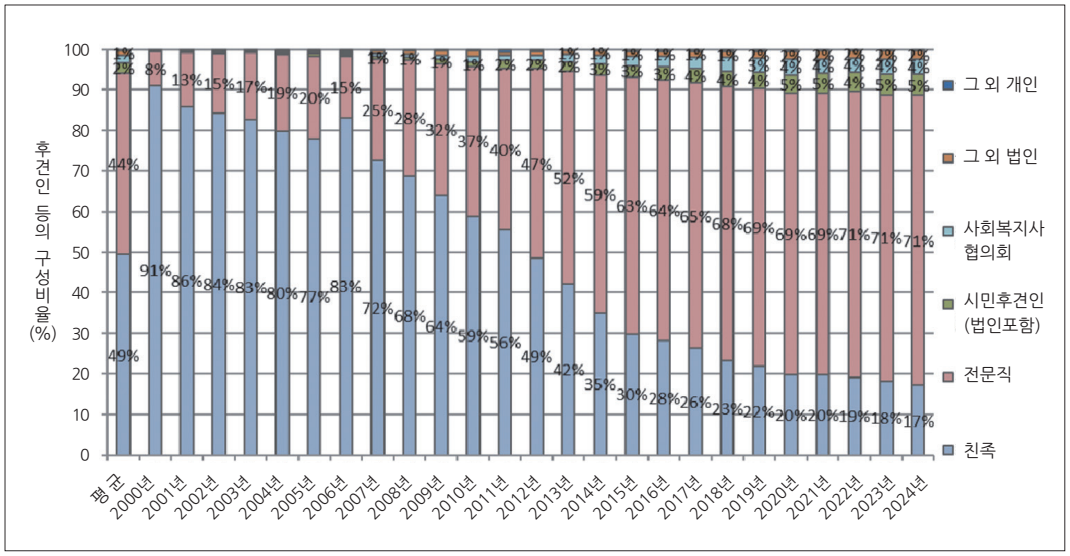

68)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152.
69)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0)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1)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2)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한편, 전문가 후견인은 그 수가 제한적이며, 후견업무의 부담으로 후견인 역할을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전문가 후견인만으로 향후 증가하는 후견수요를 전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73] 게다가 전문가 후견인, 특히 법률 전문가 후견인 중 일부는 신상보호에 관한 업무수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후견인의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로 평가된다.[74]

나.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의 도입

또한 일본 가정재판소는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을 도입하여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일상적인 지출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돈을 예금하여 후견인이 관리하게 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돈은 신탁계좌에 예치하여 신탁재산의 인출이나 신탁계약의 해약을 위해서는 가정재판소가 발행한 지시서가 있어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75]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에는 98명, 43억 엔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 6,963명, 2,153억 엔으로 급증하였고, 그 후 2024년에는 2,038명, 1,056억 엔으로 감소하였다.[76]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은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본인의 재산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77]

III. 시사점

일본의 전문가 후견인 비중이 높은 점은 친족후견인이 주로 선임되는 대부분의 나라와 비교하여 이례적이기는 하나,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

73)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4)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5)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79-280;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150.
76)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77)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成年後見制度の現状と課題”,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중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있어 친족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부담이 크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78]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은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선후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실무 현황과 개선방안의 해당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신탁제도를 활용한다면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감독 중 상당 부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후견제도지원 신탁 및 예금 제도는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신탁기관 및 제도 설계 등 신탁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79] 향후 우리나라의 후견제도하에서의 신탁제도 설계 및 활용에 있어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80]

78) 민법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79) 제철웅, "노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신탁기관",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55-61.

80) 신탁제도가 적절히 설계되는 경우 법원의 후견감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후견감독 제도 내에서의 법원의 실무 현황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제2절 미국의 후견감독 제도

I. 미국의 후견 제도

미국의 성년후견제도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state law)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그 운영방식이나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어 왔다.[81] 그러나 이러한 분권적 구조에도 다수의 주가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제정한 모델법인 1997년 통일후견보호절차법[Uniform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UGPPA)], 2017년 통일후견보호조치법[Uniform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Other Protective Arrangements Act(UGCOPAA)]의 기본 원칙과 규율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입하여 입법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82]

후견절차는 대체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의료 종사자 또는 공공기관의 후견개시 청구에 따라 개시되며, 법원은 사건본인의 판단능력 존부와 정도를 조사 · 심리한 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흠결이 있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선임한다.[83] 법원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신상보고서 및 재산목록과 회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후견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사건본인의 사망이나 후견의 필요성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을 종료한다.[84]

미국에서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가족 · 친지 후견인(family guardian), 사적 전문 후견인(professional guardian), 공공 후견인(public guardia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85] 이 중 공공후견은 후견인으로 선임될 책임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거나

81) U. S. Department of Justice, "Guardianship: Key Concepts and Resources", https://www.justice.gov/elderjustice/guardianship-key-concepts-and-resources (2025. 12. 31. 확인).
82) 장은영, "미국의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교육양성 실태 및 후견사무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3-4; 이종문, "미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후견인 감독 기관 및 방법"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8) 9-16.
83) U. S. Department of Justice, "Guardianship: Key Concepts and Resources", https://www.justice.gov/elderjustice/guardianship-key-concepts-and-resources (2025. 12. 31. 확인).
84) U. S. Department of Justice, "Guardianship: Key Concepts and Resources", https://www.justice.gov/elderjustice/guardianship-key-concepts-and-resources (2025. 12. 31. 확인).
85)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Beyond Guardianship: Toward Alternatives That Promote Greater Self-Determination" (2018), 33-34.

사적 전문후견인을 이용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단체(publicly-funded organization)를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주가 주 또는 지방정부 재원에 기초한 공공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86]

II. 통일후견보호조치법의 후견감독 체계

1. 신상관리 후견

신상관리 후견인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60일 이내에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후견인의 주거, 돌봄, 사회적 관계 및 후견 수행 방식 등에 관한 후견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출된 후견계획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87] 후견인은 이후 최소 매년 1회 이상 법원에 피후견인의 정신적 · 신체적 · 사회적 상태, 주거 환경, 각종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 현황,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취한 조치, 장래의 보호 및 지원 계획, 후견 계속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8] 법원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를 거친 후 후견인의 의무 준수 여부, 후견 계속 여부, 후견인이 청구한 보수의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한다.[89] 법원은 후견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관을 선임하여 후견인 또는 사건본인을 면담하거나 후견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후견인 해임, 후견 종료, 후견인 권한 변경을 위한 심문절차를 열 수 있다.[90]

2. 재산관리 후견

통일후견보호조치법은 재산관리 후견에 대하여도 신상관리 후견과 유사한 감독 구조를 두면서도, 재산 보호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재산관리

86) 장은영, "미국의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교육양성 실태 및 후견사무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5-6.
87) UGCOPAA (2017) § 316.
88) UGCOPAA (2017) § 317.
89) UGCOPAA (2017) § 317.
90) UGCOPAA (2017) §§ 317-319.

후견인은 법원이 면제하지 않는 한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대체 자산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1] 재산관리 후견인은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재산의 관리에 관한 계획과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출된 재산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92] 후견인은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재산에 포함된 자산과 보고 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 부채 내역을 기록한 회계 기록, 피후견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목록, 재산관리 지속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93] 법원은 재산관리 후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도 추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관을 선임하여 후견인 또는 사건본인을 면담하거나 후견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후견인 해임, 후견 종료, 후견인 권한 변경을 위한 심문절차를 열 수 있다.[94]

III. 미국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안

1.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

미국의 후견감독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법원이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95] 후견인의 보고서와 회계자료를 검토할 전문 인력과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장기간 사건을 추적 · 관리할 사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극적인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년후견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후견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적 개선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96] 주 법원의 구조와 사건관리시스템이 다르고 표준화된 집계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후견사건의 규모와 사건본인의 기본 특성에 관한 자료

91) UGCOPAA (2017) § 416.
92) UGCOPAA (2017) §§ 419, 420.
93) UGCOPAA (2017) § 423.
94) UGCOPAA (2017) § 423.
95) 이하 Sally Balch Hurme & Diane Robinson, “What’s Working in Guardianship Monitoring: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72 Syracuse L. REV. (2022), 291-367.
96) 이하 Jim Berchtold, “Guardianship Data Reform”, Justice in Aging (2024), 1-9.

축적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감독개혁 정책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2. 개선안

가. 감독 인력과 조직의 확충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은 2024년경 뉴욕주 전역의 후견사건 처리 지침을 통일하고 각 지역 법원의 감독 실태를 총괄하는 주 전체 조정 판사(statewide coordinating judge)와 법적 ·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견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후견 전담 특별 자문관(special counsel for guardianship matters)을 두고 감독체계를 정비하여 개별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 감독 방식을 시스템 중심 감독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97] 또한 뉴욕주의 고령화 마스터플랜 보고서는 후견절차의 정기적 검토와 개선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비식별화된 후견데이터 수집, 집계 및 공표, 후견서비스의 실행과 감독을 위한 연간 1,500만 달러의 재원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감독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98]

나. 보고 · 감독 절차의 개선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문을 열어 후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자를 통해 추가 확인을 실시하고, 보고서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토지침 또는 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99] 예컨대, 뉴멕시코에서는 연례보고 검토용 1쪽 점검표를 통하여 추가 조치의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플로리다에서는 후견인이 제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점검용 점검표를 마련하였다.[100] 한편, 미네소타 법원은 후견인이 재산목록과 연간 회계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MyMNConservator(MMC) 시스템과 이를 전문 인력이 검토하여

97) Times Union, “Courts appoint special counsel to oversee reform of NY’s troubled guardianship system”, https://www.timesunion.com/news/article/ny-courts-move-increase-oversight-troubled-19901076.php (2025. 12. 31. 확인).
98) Master Plan for Aging Council, “New York State Master Plan for Aging: Final Report”, New York State (2025), 211-212.
99) Sally Balch Hurme & Diane Robinson, “What’s Working in Guardianship Monitoring: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72 Syracuse L. REV. (2022), 291-367.
100) Sally Balch Hurme & Diane Robinson, “What’s Working in Guardianship Monitoring: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72 Syracuse L. REV. (2022), 320.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추가 조사를 권고하는 CAAP(Conservator Account Auditing Program) 및 CARP(Conservator Account Review Program)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산관리 후견 감독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101]

다. 데이터 표준화와 공유 체계 마련

미국 주 법원 전국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는 국가 공개 법원 데이터 표준[National Open Court Data Standards(NODS)]을 만들어 주 법원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수집 ·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였다.[102]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미국 전역에 이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수집 · 공유에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주 법원은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03]

Ⅳ. 시사점

미국의 후견감독 실무에서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감독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여러 주에서 법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통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감독을 개별 법원의 역량이나 담당자의 개인 역량에 맡기기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격차를 줄이고 감독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통일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든지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우리의 실무 개선을 위한 개선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01) Minnesota Judicial Branch, “MyMNConservator(MMC)”, https://mncourts.gov/help-topics/mymnconservator (2026. 3. 20. 확인); Minnesota Judicial Branch, “Conservatorship”, https://mncourts.gov/help-topics/conservatorship/audit-programs (2026. 3. 20. 확인).

10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Open Court Data Standards”, https://www.ncsc.org/our-centers-projects/national-open-court-data-standards (2025. 12. 31. 확인).

103) Jim Berchtold, “Guardianship Data Reform”, Justice in Aging (2024), 1-9; Sally Balch Hurme & Diane Robinson, “What’s Working in Guardianship Monitoring,” 72 Syracuse L. REV. (2022), 291-367.

제3절 독일의 후견감독 제도

I. 독일의 후견 제도[104]

독일은 종래 행위능력 박탈선고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Vormundschaft für Volljährige)와 장애감호제도(Gebrechlichkeitspflegschaft)가 성년자 보호제도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여지가 크고 재산관리에 치중하여 신상보호가 불충분하며 후견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독일은 1990년에 '성년자를 위한 후견과 감호법개정법[Gesetz zur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 (Betreuungsgesetz–BtG) vom 12. September 1990, 이하 '성년후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통적 후견제도와 장애감호제도를 폐지하고 1992. 1. 1.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질환, 육체적, 정신적, 심인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법원이 성년자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신의 임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한다.[105]

후견인의 후견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이 후견감독을 수행한다. 후견법원은 후견인에게 직무 수행을 안내하고, 후견인을 지원하며,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후견청(Betreuungsbehörde)은 후견법원에 대한 지원 및 집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04)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4–83;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93–130; 소은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4), 46–52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05) § 1821 Abs. 2, § 1823 BGB.

II. 후견법원의 후견 감독

1. 후견법원의 조직과 기능[106]

후견법원은 후견재판을 담당하고 후견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후견법원은 간이법원(Amtsgericht) 산하의 재판부(部)로 간이법원의 직능별 업무분장을 지칭한다. 후견법원에는 후견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와 다른 사건과 후견사건을 직무의 2분의 1로 겸무하는 판사가 있고 각 법원마다 평균적으로 4~5명의 후견 전담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후견판사는 법정후견인의 선임과 해임, 임무변경, 법정후견인 및 대리인의 동의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각 후견법원마다 사법보좌관이 후견사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한다.

2. 후견법원의 지원과 감독

가. 후견인 상담 및 지원

후견법원은 후견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한다.[107]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역할은 후견인에게 업무 수행을 안내하고 후견인을 지원하며 그 업무를 감독하는 데 한정된다.[108] 후견법원은 후견인의 지도 및 업무 수행 안내를 위해 후견청과 후견 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109] 이에 따라 후견인은 자신이 속한 관할 법원에 상담을 요청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110] 법원은 피후견인과 그 가족에게 조언을 하고 직무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11]

---

106)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5;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114-115.
107) § 1861 Abs. 1 BGB.
108) OLG Frankfurt, Rpfleger 2001, 491, 492; BayObLG, Rpfleger 1999, 445.
109) § 1861 BGB.
110) Damrau/Zimmermann, Betreuungsrecht, § 1837 BGB a.F. Rn. 2; Jürgens-Klüsener, Betreuungsrecht, § 1837 BGB a.F. Rn. 8.
111) RegE BtG 1992, BT-Drucks. 11/4528, 113.

나. 후견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

후견법원은 후견인의 모든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112] 법원의 감독은 후견인의 모든 업무에 미치며, 재산관리 등 특정 업무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후견인은 후견법원에 보고, 정보 제공 및 회계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후견인은 후견 개시 시점과 이후 매년 피후견인의 개인적 사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13] 보고서에는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 후견의 목표, 이미 수행하였거나 예정된 조치,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개인적 접촉 내역, 후견 계속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후견인의 업무범위에 재산관리가 포함되는 경우 회계보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14]

법원은 후견인에게 언제든지 후견업무 수행 및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115] 후견법원은 후견인이 후견을 수행할 자격이 없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해임해야 한다.[116] 특정한 중대한 조치는 후견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후견인이 수행할 수 없다.

법원의 감독은 후견인이 임명됨과 동시에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직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III. 후견청의 감독 지원

1. 후견청의 관할과 조직

후견청의 관할은 연방주가 주법에 따라 결정한다.[117] 일반적으로 후견 업무는 군(Landkreise)과 군에 속하지 않는 시(kreisfreie Städte)가 담당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행정위원회가 제정한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된다.[118] 기존 기관[예를

112) § 1862 Abs. 1 S. 1 BGB.
113) § 1863 Abs. 1 S. 1, S. 4, Abs. 3 S. 1 BGB.
114) § 1863 Abs. 1 S. 2, Abs. 3 S. 3, § 1865 Abs. 1 BGB.
115) § 1862 Abs. 3 S. 1, 2, § 1864 Abs. 1 BGB.
116) § 1868 Abs. 1 S. 1 BGB.
117) § 1 Abs. 1 BtOG.

들어 소년청(Jugendamt)]에 후견 업무를 배정하거나, 새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119] 독일 연방주(Bundesländer)는 지역 후견청(örtliche Betreuungsbehörde)과 각 주(州) 정부 부처(Ministerium) 외에도 중간(Mittelbehörden) 또는 상급(Oberbehörden) 후견청과 같은 추가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120] 이에 일부 연방주는 광역 후견청(überörtliche Betreuungsbehörden)이나 특별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121] 후견청은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2]

2. 후견청의 역할

가. 후견법원 지원

후견청은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법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견법원은 후견인을 임명하거나 동의유보를 명령하기 전에 후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후견청은 피후견인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 후견의 필요성과 다른 적절한 지원 수단의 가능성, 피후견인의 의견 등에 관한 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법원을 지원한다.[123] 후견청은 사회보고서 제출 시 또는 후견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적합한 후견인을 추천해야 한다.[124] 추천은 피후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추천된 후견인의 개인적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25] 그리고 법원이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견청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126]

나. 후견인 상담과 지원 및 후견제도 지원

후견청은 후견인(Betreuer)과 대리인(Bevollmächtigter)이 요청하는 경우 상담

118)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 1 BtOG Rn. 2.
119) Jurgeleit/Kania § 2 BtBG Rn. 2(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 1 BtOG Rn. 2에서 재인용).
120)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 1 BtOG Rn. 5.
121)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 1 BtOG Rn. 6.
122) § 3 BtOG.
123) § 279 Abs. 2 FamFG, § 11 BtOG.
124) § 12 Abs. 1 S. 1 BtOG.
125) § 12 Abs. 1 S. 2, Abs. 3 S. 1 BtOG.
126) § 11 Abs. 1 Nr. 3 BtOG.

및 지원을 제공한다.[127] 또한 후견청은 피후견인에게도 상담을 제공한다. 후견인의 업무, 피후견인의 질병이나 장애, 재활 기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지식 등 후견인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재산목록 작성, 법원에 대한 보고 및 회계의무 이행, 비용 상환 및 보수 청구 등의 과정에서 후견인을 지원한다.[128] 후견청은 후견수요의 파악과 법원절차 지원, 후견인 후보자 발굴 및 제안, 관련 개인 · 단체의 활동 촉진 등으로 후견제도를 지원한다.[129]

Ⅳ. 시사점

독일의 후견감독은 후견인의 업무에 대한 통제에 국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견법원과 후견청이 협력하면서 후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후견청은 사실조사와 후견인 지원 역할을 감당하여 후견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 외에 외부 기관을 두고 후견사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독일의 시스템은 법원이 법원 본연의 사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제도 설계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130]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후견감독 법제는 별도의 외부기관을 두지 않고 법원에서 후견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제하에서는 사실조사와 후견인 지원 기능을 사법 기능과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한 독일 법제의 취지를 참고하여 현행 후견감독 실무의 절차적 · 구조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27) § 5 BtOG.
128)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 5 BtOG Rn. 9, 12.
129) § 6 Abs. 2, § 8 Abs. 1, 2, § 11 Abs. 1, Abs. 2, § 12 Abs. 1 S. 1 BtOG.
130) 후견청과 같은 별도의 관청이나 외부 기관에 후견감독기능의 일부를 이관하거나 위탁하고 법원은 재판 사항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논의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207-230 참조.

제4장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문제점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후견감독실무 현황

I. 개관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 업무처리는 법원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법원의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를 살펴보고 각 법원의 인적 현황 및 감독 단계별 실무 현황을 살펴본다.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는 사법연감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서 제공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전국 법원의 연도별[131] 사건유형별[132] 후견감독 개시건수, 종국건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유선조사를 통해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사무분담 형태, 업무분장, 보직기간, 사건 분류 및 관리 방식, 후견인 교육 방식, 후견감독 단계별 업무처리 방식,[133] 후견감독 종료 시 업무처리 방식, 업무지침 및 양식,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여부, 국선후견인 제도 운영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코트넷과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법원공무원 교육 담당 사무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후견감독담당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내용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2014년 이후 후견감독사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후견감독업무의 비중과 업무량, 업무수행의 어려움, 적정 보직기간,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 및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에 대한 서면, 유선 및 대면 질의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운영을 검토하였다.

131)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연도별 자료.
13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133) 후견감독 단계별 업무처리 방식은 성년 · 한정후견 사건과 미성년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공공후견 사건이 대부분인 특정후견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임의후견은 사건 수가 적고, 성년 · 한정후견 사건의 업무처리방식이 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134]

1. 연도별 후견감독 개시건수

각 법원에서의 후견감독실무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도별로 개시된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135]는 다음 표와 같고,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누적 개시건수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표 3]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

법원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가정법원	서울	422	608	603	839	896	891	1,044	1,009	951	893	965	9,121
	인천	73	180	142	219	249	289	281	326	258	265	241	2,523
	수원	110	128	147	189	289	259	228	309	254	274	320	2,507
	대전	43	74	64	60	194	142	192	174	195	145	204	1,487
	대구	67	111	152	248	351	342	272	166	325	231	235	2,500
	부산	120	97	249	207	248	315	370	413	349	302	326	2,996
	울산	46	48	52	70	182	145	153	151	146	127	127	1,247
	광주	77	89	105	190	201	240	186	154	200	180	196	1,818
지방법원	의정부	0	140	140	110	199	154	148	159	130	124	103	1,407
	춘천	40	19	27	67	35	26	47	71	56	61	65	514
	청주	0	109	71	90	99	75	125	96	94	99	112	970
	창원	22	60	43	79	73	82	67	90	98	98	98	810
	전주	41	63	50	84	83	94	89	91	104	82	92	873
	제주	0	51	96	45	79	79	88	128	92	123	116	897
사무국설치지원	고양	104	88	93	145	105	131	153	157	160	173	147	1,456
	남양주	0	0	0	0	0	0	0	0	25	70	77	172
	부천	89	60	54	76	150	141	130	93	84	134	101	1,112
	성남	51	84	74	96	118	126	143	123	138	183	163	1,299
	안산	35	68	60	88	106	153	129	133	151	143	134	1,200

134) 이 항의 통계는 사법연감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전산자료 회신(2024. 10. 7.자 및 2025. 10. 29. 자)에 의한다[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가 2014.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견감독사건의 개시건수 및 종국건수에 관한 통계는 2014. 7. 1. 이후의 자료가 회신되었다].

135) 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 사건 개시건수를 합한 수치이다.

법원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안양	41	52	52	81	97	108	113	133	123	99	105	1,004
	천안	0	60	40	50	52	114	91	76	93	101	103	780
	순천	31	48	57	68	54	63	50	97	53	65	62	648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20	5	41	40	35	54	55	57	77	52	53	489
	평택	0	64	98	48	12	102	75	122	61	69	72	723
	강릉	9	1	23	28	70	41	35	36	53	44	38	378
	원주	22	19	27	37	36	19	64	46	45	49	41	405
	속초	0	6	12	16	9	12	8	13	13	17	9	115
	영월	0	0	10	3	17	38	11	11	27	22	16	155
	홍성	20	33	33	37	21	33	28	61	35	54	40	395
	공주	4	8	8	11	11	13	27	15	21	14	19	151
	논산	9	11	20	12	30	23	28	20	28	29	25	235
	서산	0	62	25	41	10	49	35	50	37	37	42	388
	충주	0	21	7	61	32	42	43	30	45	42	30	353
	제천	0	16	13	11	28	32	16	23	19	31	25	214
	영동	0	9	9	15	12	10	11	7	11	14	13	111
	안동	14	13	23	31	33	32	47	40	40	43	28	344
	경주	0	19	9	11	33	36	20	19	20	33	39	239
	포항	0	41	24	32	39	65	36	36	40	40	51	404
	김천	0	9	46	17	42	20	27	36	23	29	24	273
	상주	11	28	14	31	23	33	40	25	26	23	36	290
	의성	7	3	8	7	9	10	3	23	20	6	15	111
	영덕	1	0	2	2	10	15	13	13	10	10	11	87
	마산	0	37	25	24	38	46	45	51	30	48	37	381
	진주	0	61	34	43	42	36	53	63	53	57	48	490
	통영	0	37	18	18	34	42	55	30	36	54	29	353
	밀양	9	8	15	15	21	11	10	24	19	13	19	164
	거창	0	10	15	14	3	14	15	15	16	10	18	130
	목포	0	44	39	38	64	65	54	66	51	45	43	509
	장흥	6	6	6	11	4	2	1	6	11	3	7	63
	해남	16	13	14	41	13	18	25	22	5	11	21	199
	군산	25	18	38	48	70	39	64	61	40	62	114	579
	정읍	0	4	15	13	32	32	33	24	31	29	26	239
	남원	10	14	9	9	21	10	16	11	13	17	14	144
합계		1,595	2,857	3,051	3,866	4,714	4,963	5,092	5,205	5,035	4,979	5,095	46,452

[그림 4]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누적개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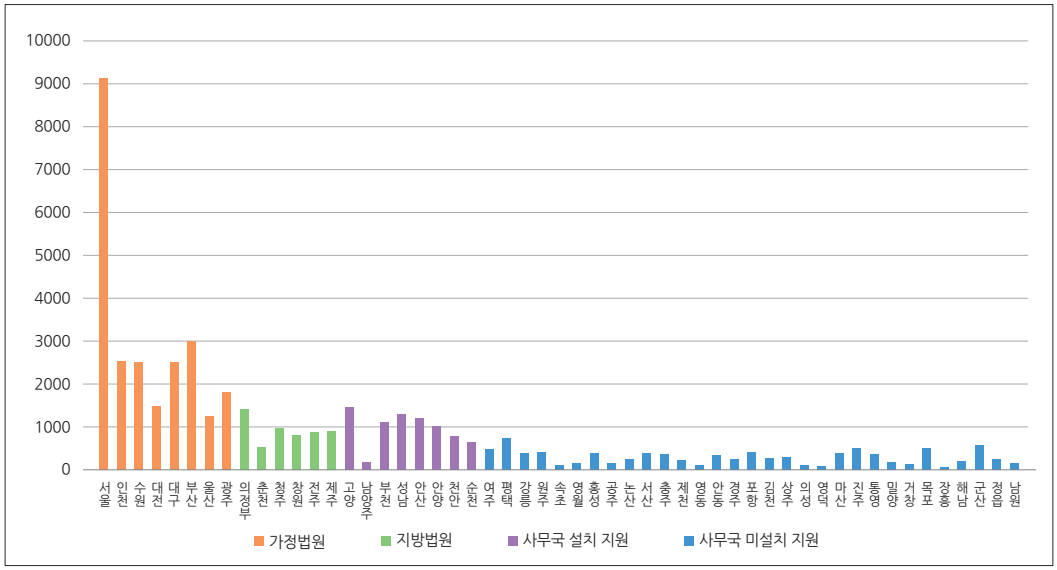

2. 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 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의 누적 개시건수와 전체 후견감독사건의 누적 개시건수를 각 법원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법원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미성년후견 감독	전체
가정 법원	서울	6,491	794	829	14	993	9,121
	인천	1,778	132	206	1	406	2,523
	수원	1,741	218	207	0	341	2,507
	대전	889	123	240	3	232	1,487
	대구	1,571	250	262	1	416	2,500
	부산	1,771	155	506	2	562	2,996
	울산	821	80	158	0	188	1,247
	광주	833	140	452	1	392	1,818

법원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미성년후견 감독	전체
지방 법원	의정부	891	155	95	0	266	1,407
	춘천	274	19	152	0	69	514
	청주	601	62	117	1	189	970
	창원	485	50	121	0	154	810
	전주	527	70	78	0	198	873
	제주	561	36	132	1	167	897
사무국 설치 지원	고양	1,149	78	43	1	185	1,456
	남양주	124	10	12	2	24	172
	부천	838	52	85	1	136	1,112
	성남	1,000	90	67	0	142	1,299
	안산	851	75	54	1	219	1,200
	안양	809	51	52	1	91	1,004
	천안	497	35	127	0	121	780
	순천	368	43	51	0	186	648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304	37	65	1	82	489
	평택	532	22	44	1	124	723
	강릉	234	15	50	0	79	378
	원주	267	20	23	1	94	405
	속초	70	0	24	0	21	115
	영월	92	6	6	0	51	155
	홍성	256	24	47	0	68	395
	공주	92	6	18	0	35	151
	논산	145	34	6	1	49	235
	서산	257	25	23	0	83	388
	충주	165	54	79	0	55	353
	제천	121	9	47	0	37	214
	영동	68	7	17	0	19	111
	안동	202	29	54	0	59	344
	경주	171	2	29	0	37	239
	포항	272	10	35	0	87	404

법원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미성년후견 감독	전체
	김천	169	25	29	0	50	273
	상주	209	16	24	0	41	290
	의성	56	7	29	0	19	111
	영덕	60	4	4	0	19	87
	마산	247	16	47	0	71	381
	진주	291	30	49	0	120	490
	통영	168	25	65	0	95	353
	밀양	99	8	27	0	30	164
	거창	79	11	7	0	33	130
	목포	228	33	131	0	117	509
	장흥	35	2	1	0	25	63
	해남	88	37	15	0	59	199
	군산	348	36	95	0	100	579
	정읍	136	17	36	1	49	239
	남원	83	4	26	0	31	144
합계		30,414	3,289	5,198	35	7,516	46,452

[그림 5]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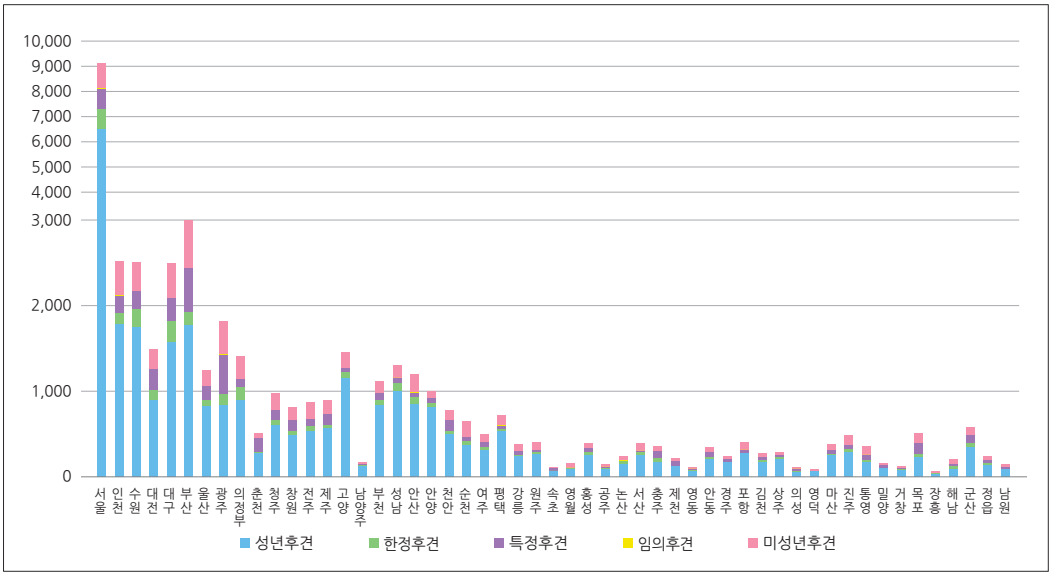

3. 연도별 후견감독 종국건수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136]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고,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누적 종국건수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표 5]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종국건수

법원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가정법원	서울	13	44	140	263	330	357	326	623	932	696	802	4,526
	인천	1	11	32	59	84	100	157	109	268	152	104	1,077
	수원	6	14	24	35	69	124	111	131	198	233	228	1,173
	대전	1	15	19	17	24	36	82	78	79	125	136	612
	대구	3	3	7	74	80	100	111	129	199	178	168	1,052
	부산	4	6	43	53	89	141	147	157	210	177	333	1,360
	울산	0	1	15	9	34	64	66	56	79	59	111	494
	광주	1	18	14	56	50	157	139	100	126	140	143	944
지방법원	의정부	0	8	28	53	23	25	75	115	148	99	108	682
	춘천	2	0	4	36	15	15	14	14	19	60	25	204
	청주	0	2	30	29	16	22	42	61	62	62	65	391
	창원	0	13	8	19	19	34	17	17	43	60	42	272
	전주	0	3	11	34	23	30	52	53	40	53	66	365
	제주	1	6	22	12	20	28	29	59	53	66	79	375
사무국 설치 지원	고양	2	11	21	63	43	66	76	84	126	103	100	695
	남양주	0	0	0	0	0	0	0	0	1	2	16	19
	부천	2	9	7	14	37	53	16	71	100	69	63	441
	성남	0	4	26	33	45	34	25	46	140	81	64	498
	안산	0	3	10	12	60	41	49	75	78	86	68	482
	안양	0	4	6	26	32	22	51	77	86	71	80	455
	천안	0	1	8	18	9	45	21	38	45	89	75	349
	순천	2	2	14	17	38	20	29	23	28	89	43	305

136) 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 사건 종국건수를 합한 수치이다.

법원		2014 하반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0	0	0	3	27	2	21	10	62	19	34	178
	평택	0	0	6	4	3	47	29	66	2	3	14	174
	강릉	0	0	0	1	8	6	40	20	20	37	33	165
	원주	0	4	7	7	3	2	48	16	27	43	31	188
	속초	0	0	0	1	7	6	0	3	3	8	7	35
	영월	0	0	0	1	0	25	9	2	6	4	8	55
	홍성	1	4	6	10	12	20	9	14	18	19	21	134
	공주	0	1	2	0	8	1	5	1	19	21	10	68
	논산	0	0	0	0	0	2	12	4	17	24	29	88
	서산	0	0	2	14	4	7	3	7	15	98	17	167
	충주	0	1	5	1	8	7	5	4	43	21	54	149
	제천	0	0	3	2	6	9	0	2	0	1	20	43
	영동	0	0	4	2	6	7	7	3	4	11	12	56
	안동	0	1	2	5	4	9	3	35	17	49	23	148
	경주	0	3	1	0	2	8	0	1	41	16	15	87
	포항	0	0	4	6	22	6	28	16	13	11	23	129
	김천	0	0	5	20	12	5	5	7	32	11	7	104
	상주	0	2	2	8	5	5	6	3	13	8	19	71
	의성	1	2	1	1	5	0	2	7	5	4	19	47
	영덕	0	0	0	1	1	2	7	3	6	1	0	21
	마산	0	3	10	2	8	5	35	7	5	8	7	90
	진주	0	3	0	4	2	5	23	46	71	60	29	243
	통영	0	2	1	1	0	0	24	34	8	42	42	154
	밀양	0	0	3	4	6	1	8	6	6	9	14	57
	거창	0	1	2	0	1	0	4	5	10	6	4	33
	목포	1	5	7	13	16	27	37	36	42	45	46	275
	장흥	1	0	1	6	4	4	0	3	4	2	2	27
	해남	0	2	0	0	1	2	28	4	0	2	34	73
	군산	0	1	2	2	1	7	11	0	6	3	103	136
	정읍	0	1	0	2	4	0	9	26	15	19	27	103
	남원	0	1	0	0	1	10	1	2	3	5	9	32
합계		42	215	565	1,053	1,327	1,751	2,054	2,509	3,593	3,360	3,632	20,101

[그림 6] 각 법원 후견감독사건 누적종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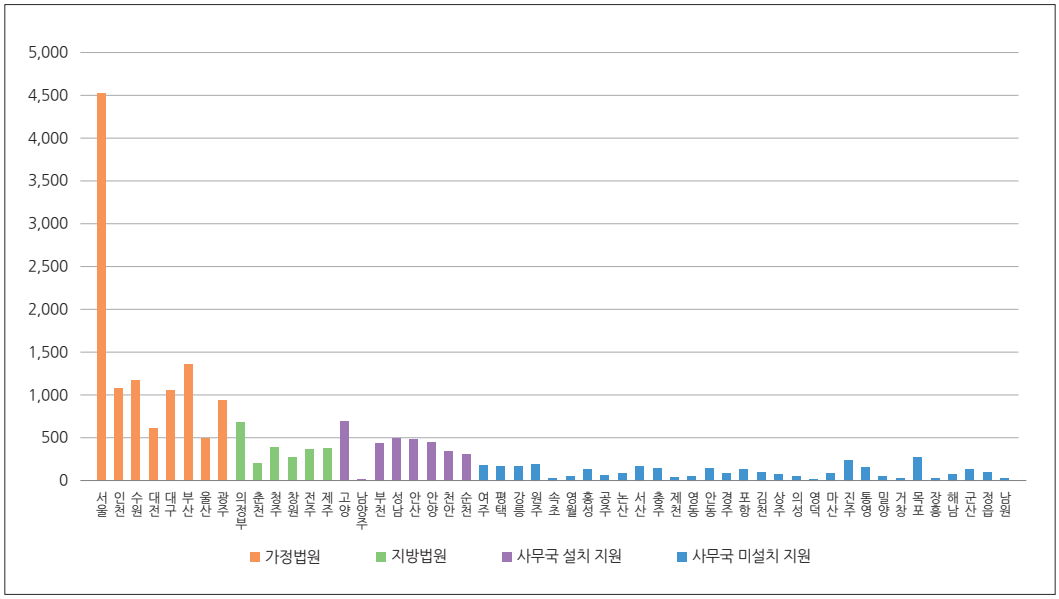

4. 진행 중인 사건 수

후견감독사건은 종국될 때까지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법원의 업무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후견감독사건 개시건수 및 종국건수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2014. 7. 1.부터 2024. 12. 31.까지의 누적 개시건수에서 누적 종국건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대략적인 사건 수는 다음 표 및 그래프와 같다.

[표 6]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수

법원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미성년후견 감독	전체
가정법원	서울	3,276	592	330	9	388	4,595
	인천	1,035	101	115	1	194	1,446
	수원	938	174	77	0	145	1,334
	대전	521	105	142	1	106	875
	대구	927	196	149	1	175	1,448
	부산	1,013	125	298	0	200	1,636
	울산	495	63	107	0	88	753
	광주	489	107	154	1	123	874
지방법원	의정부	459	117	42	0	107	725
	춘천	165	15	85	0	45	310
	청주	376	54	55	0	94	579
	창원	328	44	93	0	73	538
	전주	313	54	43	0	98	508
	제주	349	27	66	0	80	522
사무국 설치 지원	고양	635	49	13	1	63	761
	남양주	109	9	12	2	21	153
	부천	512	40	37	0	82	671
	성남	624	73	40	0	64	801
	안산	529	60	24	0	105	718
	안양	453	41	25	1	29	549
	천안	301	28	58	0	44	431
	순천	210	35	23	0	75	343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201	31	25	0	54	311
	평택	446	18	17	0	68	549
	강릉	135	11	28	0	39	213
	원주	149	14	12	0	42	217
	속초	53	0	15	0	12	80
	영월	69	4	5	0	22	100
	홍성	179	24	29	0	29	261

법원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미성년후견 감독	전체
	공주	53	3	11	0	16	83
	논산	89	23	3	1	31	147
	서산	153	20	9	0	39	221
	충주	106	39	34	0	25	204
	제천	102	6	29	0	34	171
	영동	35	7	8	0	5	55
	안동	117	20	35	0	24	196
	경주	115	2	17	0	18	152
	포항	187	8	25	0	55	275
	김천	104	23	17	0	25	169
	상주	169	15	16	0	19	219
	의성	30	7	16	0	11	64
	영덕	50	2	3	0	11	66
	마산	191	15	42	0	43	291
	진주	151	25	23	0	48	247
	통영	106	23	34	0	36	199
	밀양	69	7	16	0	15	107
	거창	61	10	6	0	20	97
	목포	119	21	45	0	49	234
	장흥	28	1	1	0	6	36
	해남	61	29	9	0	27	126
	군산	290	34	63	0	56	443
	정읍	77	12	21	0	26	136
	남원	68	4	21	0	19	112
합계		17,820	2,567	2,623	18	3,323	26,351

[그림 7]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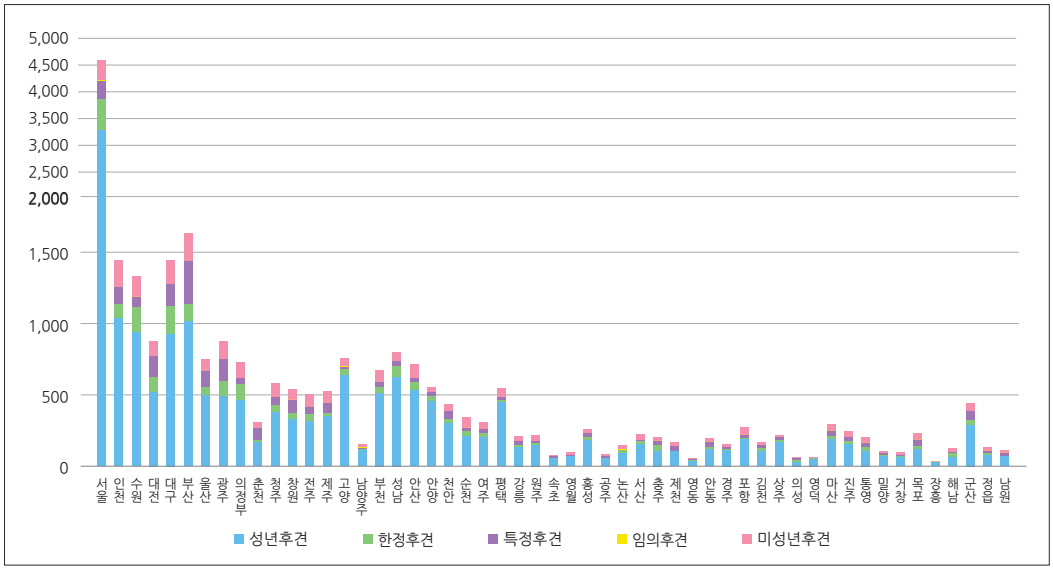

III. 각 법원의 인적 현황[137]

1.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2024. 9. 기준으로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법원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조사관(조사사무관 포함)의 수는 다음 표와 같고, 각 법원별 업무담당자의 총 인원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다만, 여기에 나타난 인원은 담당자의 겸임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담당 인원수만을 나타낸 수치이다. 아래 2. 가.항에서 보다시피 법관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후견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138]를 겸임하고 있고,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일부 법원[139]을 제외하고 많은 법원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

137) 이하 III.항에서 VI.항까지 각 법원의 현황은 2024. 9.경 이루어진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에 대한 서면 및 유선조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138) 법원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다른 가사비송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다른 가사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가사 및 민사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가사 및 영장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등 겸임사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139)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의 사무관 및 행정관(참여관)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관 및 행정관(참여관) 중 1명(사무관 1명), 광주가정법원 사무관 및 행정관(참여관) 중 1명(사무관 1명)은 후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원과 지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겸임사무의 종류도 가사비송재판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으며, 조사사무직렬의 경우에도 일부 법원[140]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사사건의 조사업무를 겸임하거나, 일부 지원의 경우 순회조사관으로 다른 법원 또는 지원의 업무와 겸임하고 있으므로, 업무 담당 인원이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질 인원은 1명 미만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7]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법원		법관	법원사무직		조사사무직 (조사사무관, 조사관)
			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가정 법원	서울	3	13	0	5
	인천	1	1	1	1
	수원	1	1	0	4
	대전	1	2	0	2
	대구	1	1	0	3
	부산	2	3	2	3
	울산	1	1	0	1
	광주	1	2	1	1
지방 법원	의정부	3	3	0	2
	춘천	1	1	0	1
	청주	1	1	0	0
	창원	1	1	1	0
	전주	1	1	0	0
	제주	1	2	1	0
사무국 설치 지원	고양	1	1	1	1
	남양주	2	1	0	0
	부천	1	1	1	3
	성남	1	1	1	4
	안산	1	1	0	4
	안양	1	1	0	2
	천안	1	1	0	0
	순천	1	1	0	2

가사재판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서무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민사신청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140)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관	법원사무직		조사사무직 (조사사무관, 조사관)
			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1	2	1	1
	평택	1	0	1	2
	강릉	1	1	0	1
	원주	1	1	1	1
	속초	1	0	1	1
	영월	1	1	1	1
	홍성	1	1	0	0
	공주	1	1	1	1
	논산	1	1	0	1
	서산	1	1	1	0
	충주	1	1	1	1
	제천	1	1	1	0
	영동	1	0	1	1
	안동	1	0	1	1
	경주	1	1	1	1
	포항	1	1	1	1
	김천	1	1	1	1
	상주	1	1	1	1
	의성	1	1	1	1
	영덕	1	2	1	1
	마산	1	1	1	1
	진주	1	1	0	0
	통영	1	1	0	0
	밀양	1	1	0	1
	거창	1	0	0	1
	목포	1	0	0	1
	장흥	1	1	1	1
	해남	1	1	0	1
	군산	2	1	0	1
	정읍	1	1	1	2
	남원	1	1	0	1

[그림 8]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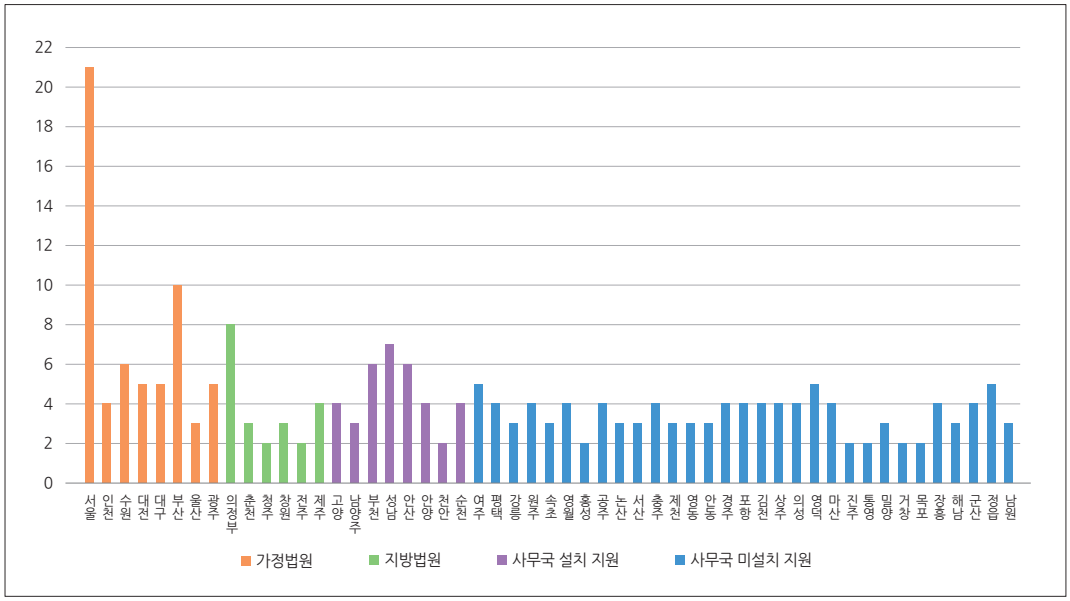

2. 업무담당자 사무분담 형태

가. 후견업무 전담 여부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담당자의 후견업무 전담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법관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후견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경우 가사비송 내지 가사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가사, 민사, 형사 등 여러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의 담당자와 인천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의 담당자 중 일부는 후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원과 지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법원의 규모에 따라 성격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기도 한다. 조사사무직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담당자는 후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원과 지원의 경우 다른 조사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일부 지원에서는 순회조사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8] 각 법원 후견업무담당자의 업무분담 형태

법원		법관	법원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 (조사사무관, 조사관)
			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가정 법원	서울	겸임	전담	–	전담
	인천	겸임	전담	겸임	전담
	수원	겸임	전담	–	겸임
	대전	겸임	전담	–	전담
	대구	겸임	전담	–	전담
	부산	겸임	겸임	겸임	전담
	울산	겸임	겸임	–	겸임
	광주	겸임	겸임	겸임	전담
지방 법원	의정부	겸임	겸임	–	전담
	춘천	겸임	겸임	–	겸임
	청주	겸임	겸임	–	–
	창원	겸임	전담	겸임	–
	전주	겸임	전담	–	–
	제주	겸임	겸임	겸임	–
사무국 설치 지원	고양	겸임	겸임	겸임	겸임
	남양주	겸임	겸임	–	–
	부천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성남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안산	겸임	전담	–	겸임
	안양	겸임	전담	–	겸임
	천안	겸임	겸임	–	–
	순천	겸임	겸임	–	겸임
사무국 미설치 지원	여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평택	겸임	–	겸임	겸임
	강릉	겸임	겸임	–	겸임
	원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속초	겸임	–	겸임	겸임
	영월	겸임	겸임	겸임	겸임
	홍성	겸임	겸임	–	–

법원		법관	법원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 (조사사무관, 조사관)
			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공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논산	겸임	겸임	–	겸임
	서산	겸임	겸임	겸임	–
	충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제천	겸임	겸임	겸임	–
	영동	겸임	–	겸임	겸임
	안동	겸임	–	겸임	–
	경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포항	겸임	겸임	겸임	겸임
	김천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상주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의성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영덕	겸임	겸임	겸임	겸임
	마산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진주	겸임	겸임	–	–
	통영	겸임	겸임	–	–
	밀양	겸임	겸임	–	겸임
	거창	겸임	–	–	겸임
	목포	겸임	–	–	겸임
	장흥	겸임	겸임	겸임	겸임
	해남	겸임	겸임	–	겸임
	군산	겸임	겸임	–	겸임
	정읍	겸임	겸임	겸임	겸임
	남원	겸임	겸임	–	겸임

[그림 9] 법원유형별[141] 후견업무담당자 업무분담 형태[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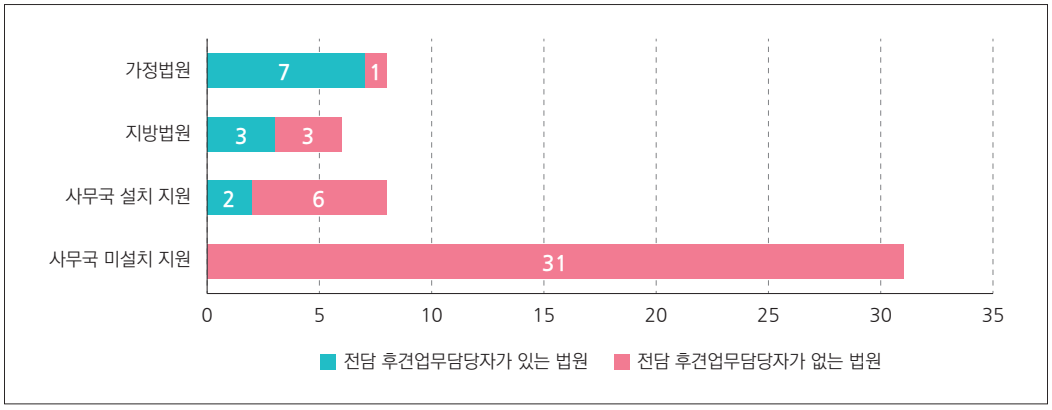

나. 업무분장

각 법원에서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직렬 공무원과 조사사무직렬 공무원 사이의 업무분장 범위는 각 법원의 인력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이 후견감독 조사명령 시행, 보고서 관리, 재판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후견감독 조사명령이 이루어진 사건에 한하여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은 성년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미성년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법원사무직렬 공무원과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이 후견감독사건을 균등 배당받아 후견감독을 실시하는 법원,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또는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이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법원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원도 있다. 법원유형별로 후견감독업무분장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141)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하 같다.
142) 막대그래프의 숫자는 해당 유형의 법원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그림 10] 후견감독업무분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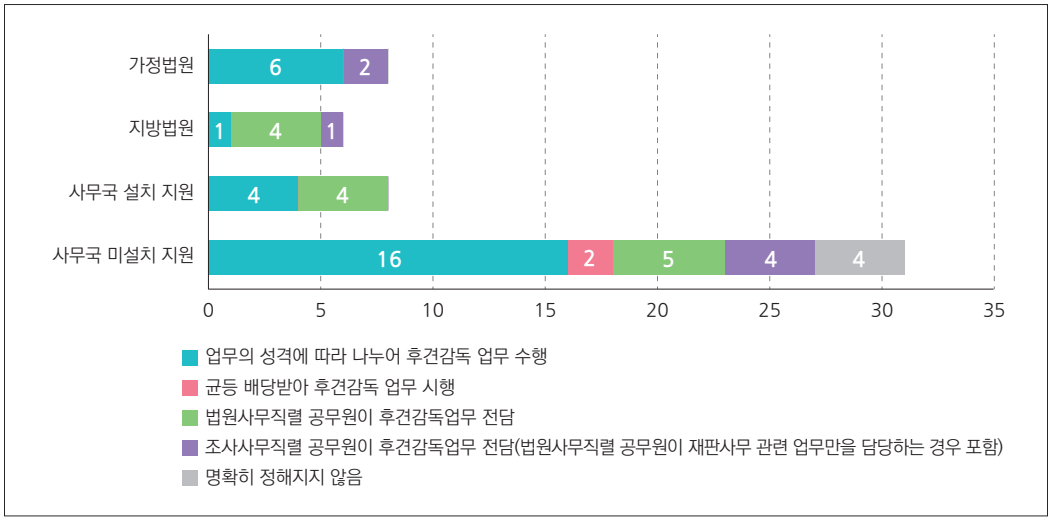

3. 보직기간

각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후견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을 법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다.[143]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1년마다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나, 6개월인 법원도 있다. 조사사무직렬의 경우 가정법원과 같이 조사관이 여러 명 근무하는 법원에서는 후견업무 보직으로 보직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 가사사건의 조사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원의 근무기간 동안 후견업무를 담당하거나 후견사건 중 조사명령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43) 법원사무직렬 후견업무담당자의 경우 사무관, 행정관(참여관), 주무관 중 보직기간이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담당자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

[그림 11] 법원사무직렬 보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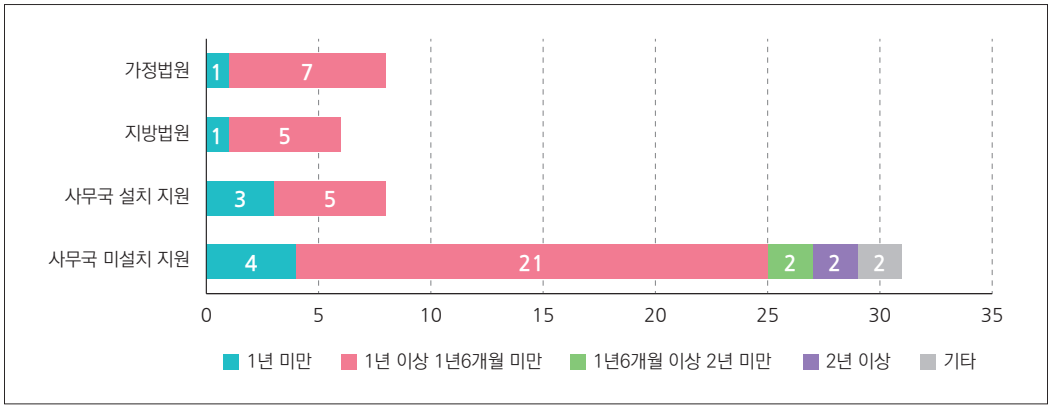

[그림 12] 조사사무직렬 보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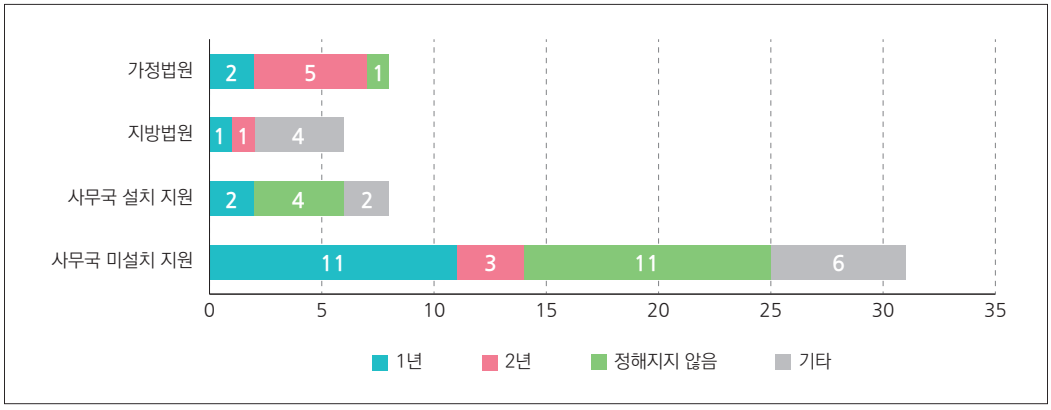

IV. 후견감독업무 처리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감독은 일반적으로 '후견감독사건 직권개시 → 후견인 교육 → 재산목록 제출 → 재산목록에 대한 초기후견감독 →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후견감독(필요한 경우 심층후견감독) → 후견감독 종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별 후견감독업무 처리 절차는 각 법원의 인력과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계별로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실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건 분류 및 관리 방식

가. 미성년후견감독 사건과 성년후견감독 사건의 구분 여부

단계별 후견감독업무 실무를 검토하기 전에 후견감독사건의 분류 및 관리방식을 살펴본다. 우선 미성년후견감독 사건과 성년후견감독 사건의 관리와 관련하여,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의 경우 신상관리나 양육의 측면에서 성년후견감독 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어 미성년자의 복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감독사항을 달리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상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같은 조정조치를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원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사건을 성년후견감독사건과 구분하여 배당하거나, 감독주기, 감독기준, 조사방법 등을 달리하여 감독 · 관리하기도 한다. 이를 법원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13] 미성년후견감독 사건과 성년후견감독 사건 구분 관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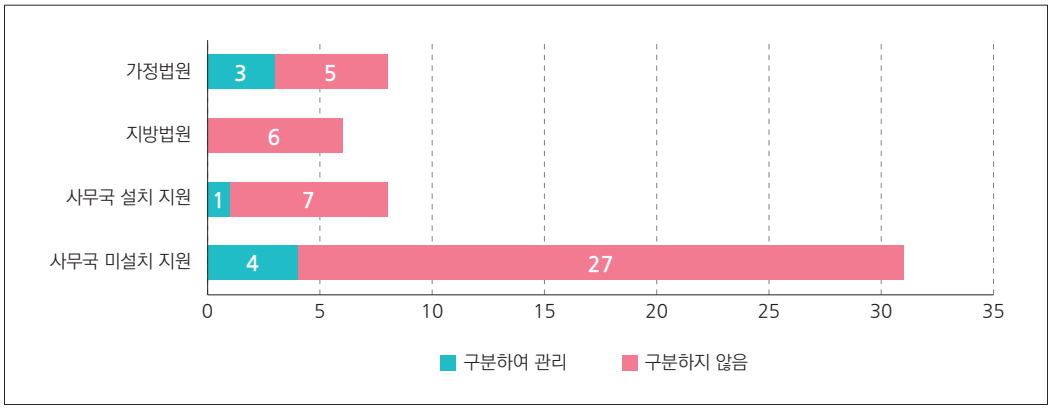

나. 성년후견감독 사건 차등 관리 여부

법원에 따라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간이감독사건과 일반감독사건 내지 특별감독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성년후견감독사건을 분류하여 차등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대체로 재산규모를 기준으로 간이감독사건과 일반감독사건을 구분하여 간이감독사건의 경우 일반감독사건에 비해 감독주기를 길게 하여 감독을 실시하거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등 감독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간이감독사건의 감독보고서 양식을 일반감독사건 감독보고서와 달리 하여 보다 간이한 보

고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예컨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반사건의 정기감독보고서는 재산목록표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감독관 의견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사건의 정기감독보고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4] 이러한 분류 및 차등관리는 후견감독사건 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작은 규모 법원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림 14] 성년후견감독사건 차등 관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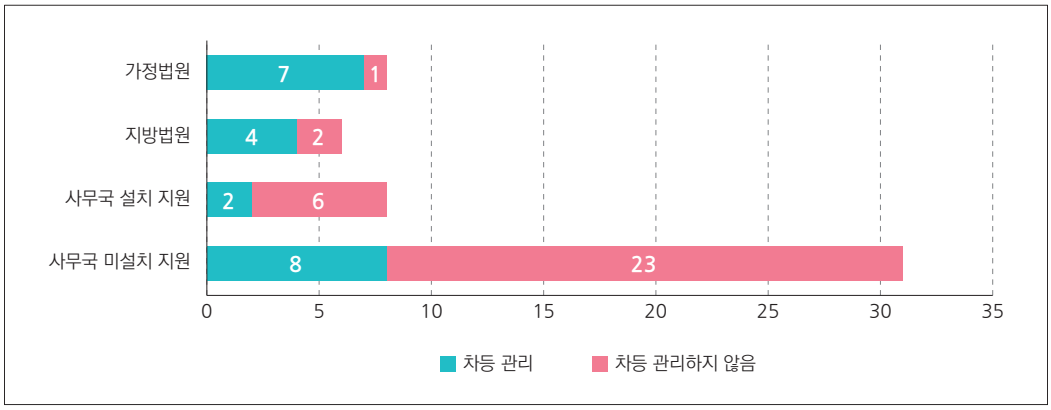

2. 후견인 교육

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후견인에 대한 지원도 후견감독의 중요 내용 중 하나로, 후견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후견사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2011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면서 제정된 구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2014. 4. 10. 제정되어 2016. 9. 23. 재판예규 제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6조[145]에서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및 그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144) 별첨1 중 1. 서울가정법원 나. 정기감독 1)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일반사건) 및 2)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간이사건) 참조.

145) 구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재판예규 제1467호)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인 등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후견인 등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였다. 이후 위 예규가 개정[146]되어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에 따라 후견개시심판 이전에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사전교육의 내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후견제도 소개, 후견사건 진행 절차, 후견인의 역할, 권한 및 의무, 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147]에는 성년후견사건 후견인 후보자를 위한 사전교육 영상(후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148]이 게재되어 있고, 위 영상을 시청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에 대한 교육은 후견제도와 후견감독절차 안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과 제출 방법, 일반적인 후견사무 수행 방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과 청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149] 가사조사관이 대면교육을 실시하거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의 후견인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는 성년후견사건 친족후견인 교육 영상 4편('성년후견 개시', '재산목록보고서 작성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 '성년후견의 종료')[150]과 미성년후견인 교육 영상 4편('미성년후견제도의 이해', '법원의 후견감독', '재산목록보고서 작성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151]이 게재되어 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에 대한 교육의 실시여부와

---

146)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47) https://youtube.com/@scourtkorea.

148) https://www.youtube.com/watch?v=kwCZgm8oTJ0.

14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355.

150) https://www.youtube.com/watch?v=Ihfry1eP5Pk&list=PLwMuVovqHwyB2poN4nzybprYuHRaMR2ut.

151) https://www.youtube.com/watch?v=mwzNw7tbqGY&list=PLwMuVovqHwyBdpWjuW6Ths6Bt2gqAZ8RT.

실시방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15]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 교육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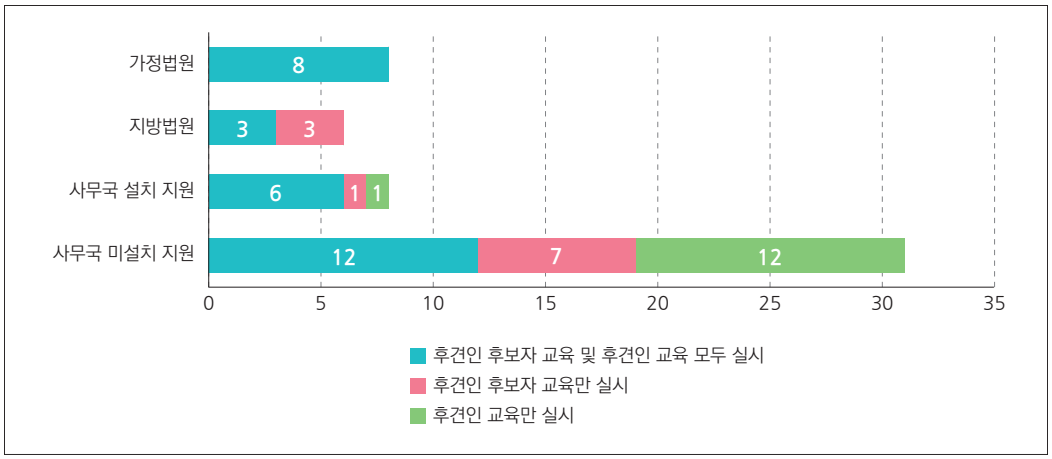

[그림 16]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 교육 실시 방법[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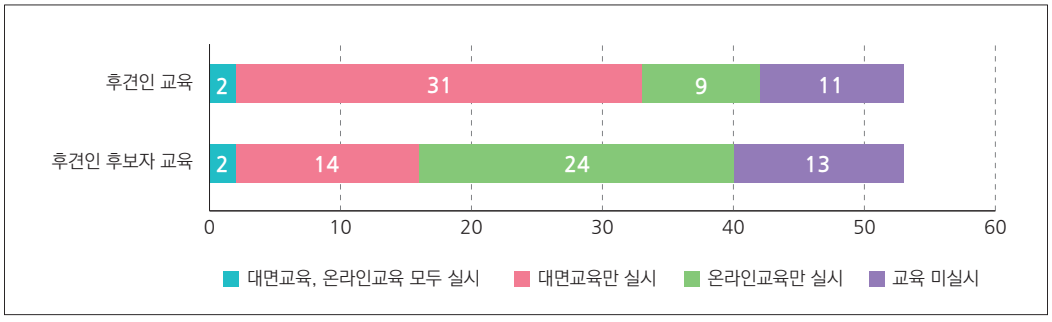

한편,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의 관점에서 성년후견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상당수의 법원에서 교육내용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양육기술에 대한 이해 등[153]을 추가하여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성년후견인교육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분 실시 여부에 관한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152) 전체 법원 대상. 후견인 교육 미실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만을 실시하고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법원이고, 후견인 후보자 교육 미실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 교육만을 실시하는 법원이다.

15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1355.

[그림 17] 미성년후견인교육과 성년후견인교육 구분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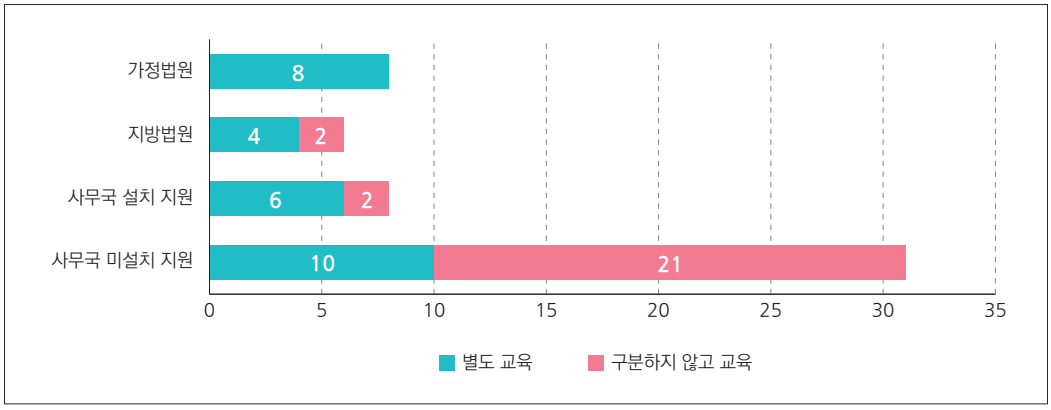

3. 초기후견감독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개시가 이루어지면 후견개시심판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후견인이 제출하는 재산목록보고서와 이에 관한 소명자료에 따라 이후 감독방향을 정하게 된다. 법관은 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에게 후견인의 재산목록 제출 여부 및 작성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후견감독 조사명령을 하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검토하여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한다.

초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및 초기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후견인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확인, 재산목록보고서와 증빙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에 관한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154)]

154) 초기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미발령, 미작성,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8] 초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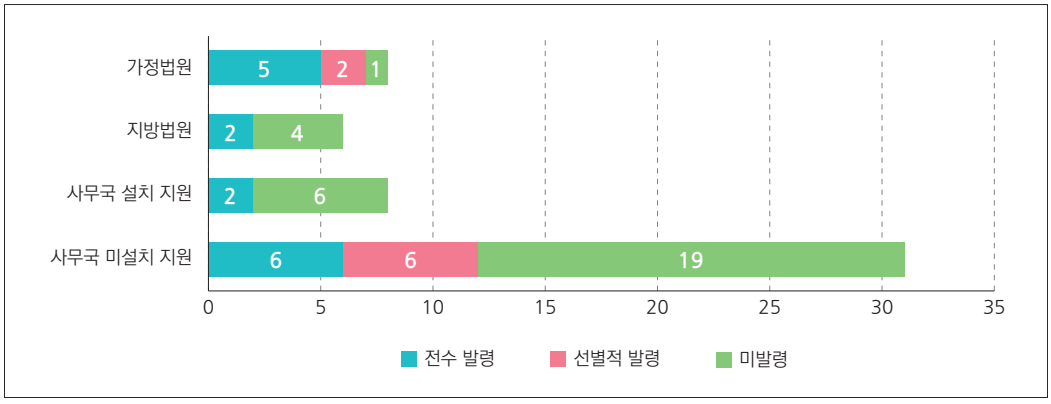

[그림 19] 초기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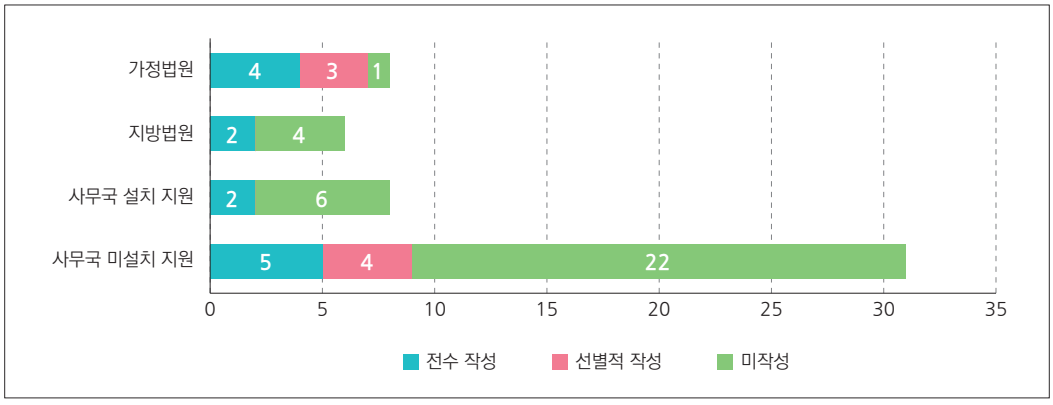

[그림 20] 후견인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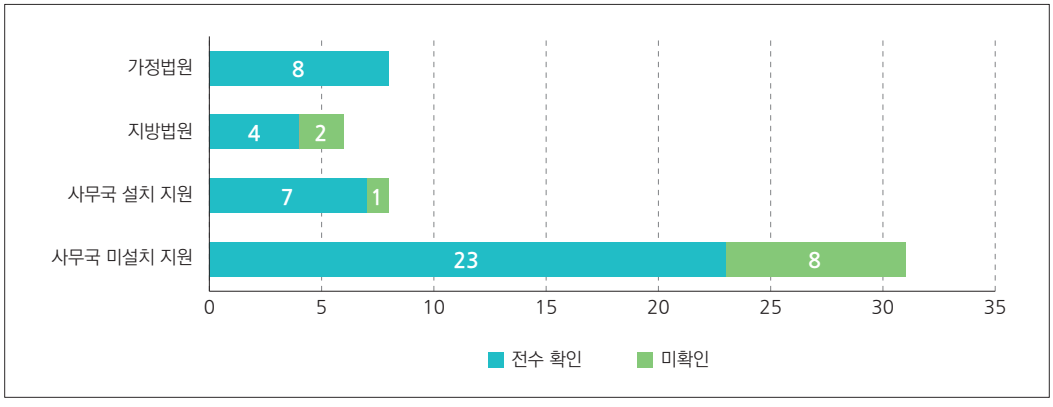

[그림 21] 재산목록보고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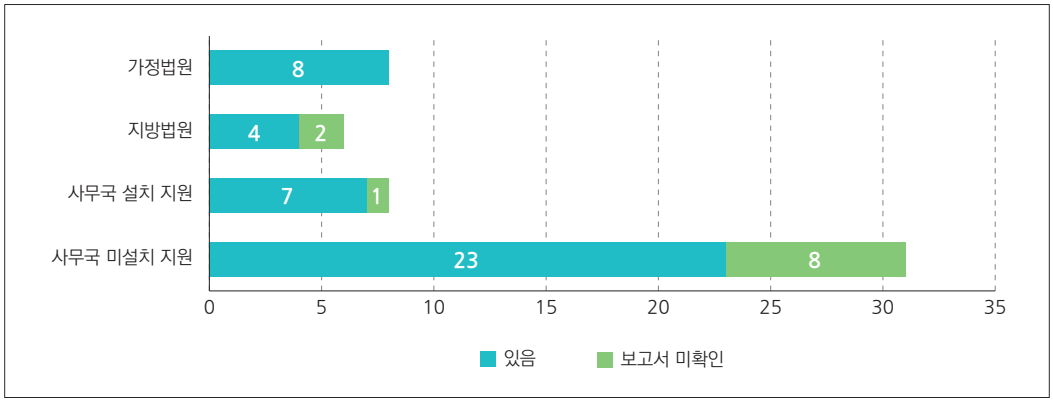

[그림 22] 재산목록보고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내용[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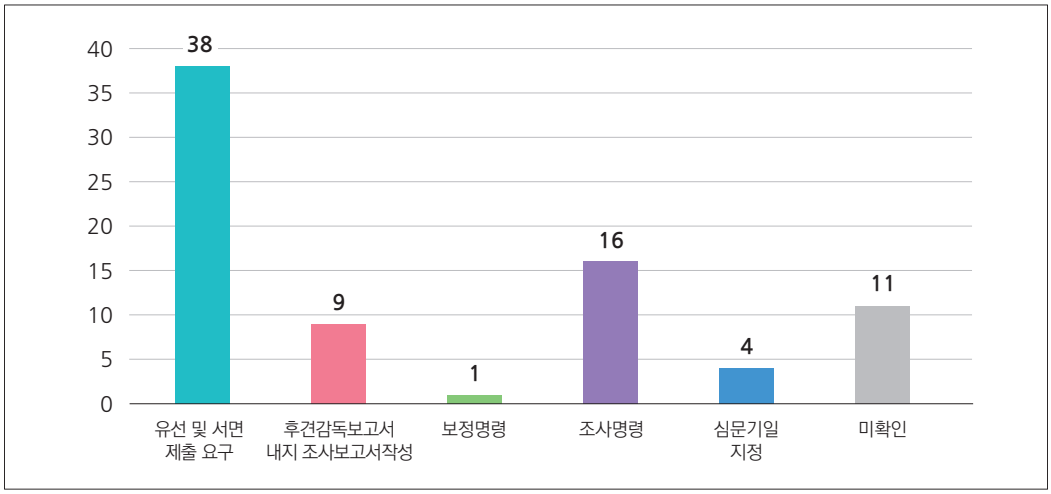

4. 정기후견감독

통상적으로 후견개시심판에서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기후견감독은 후견사무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후견사무보고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며, 사안에 따라

155) 전체 법원 대상(복수응답 가능).

후견인에 대한 유선 또는 소환 조사, 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여부, 정기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정기 후견감독조사방법에 관한 각 법원의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156]

[그림 23] 정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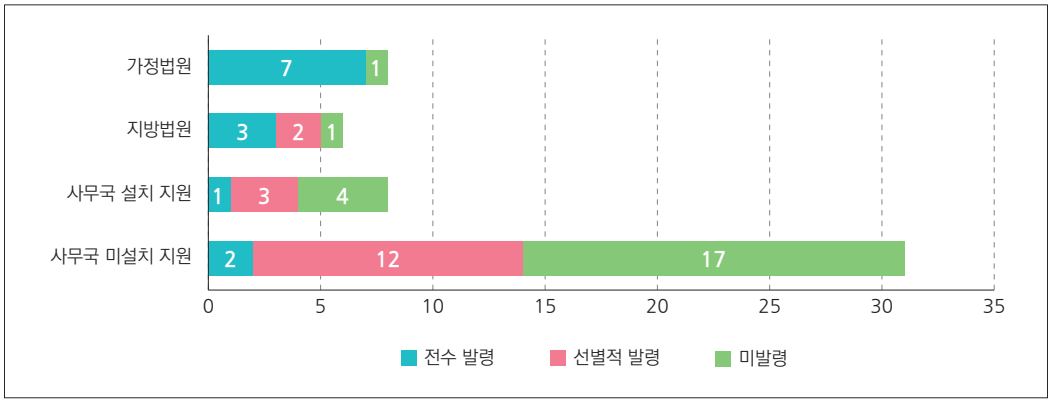

[그림 24] 정기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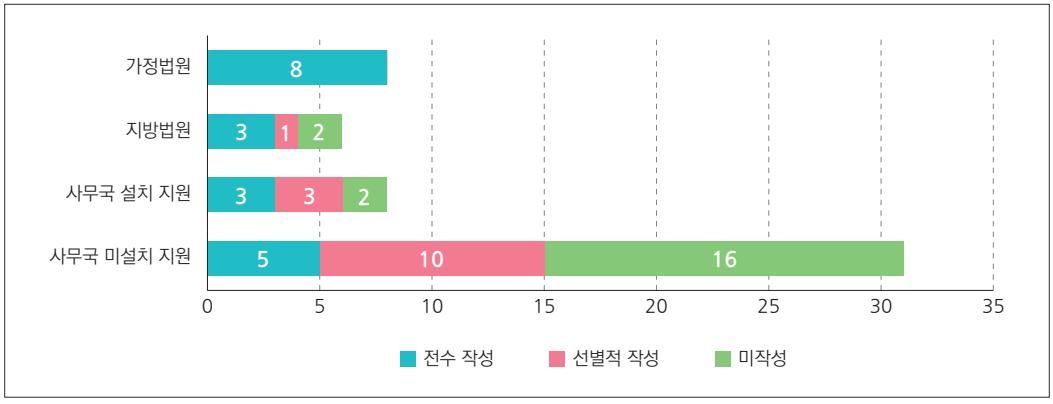

156) 정기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미발령, 미작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5] 정기 후견감독 조사방법[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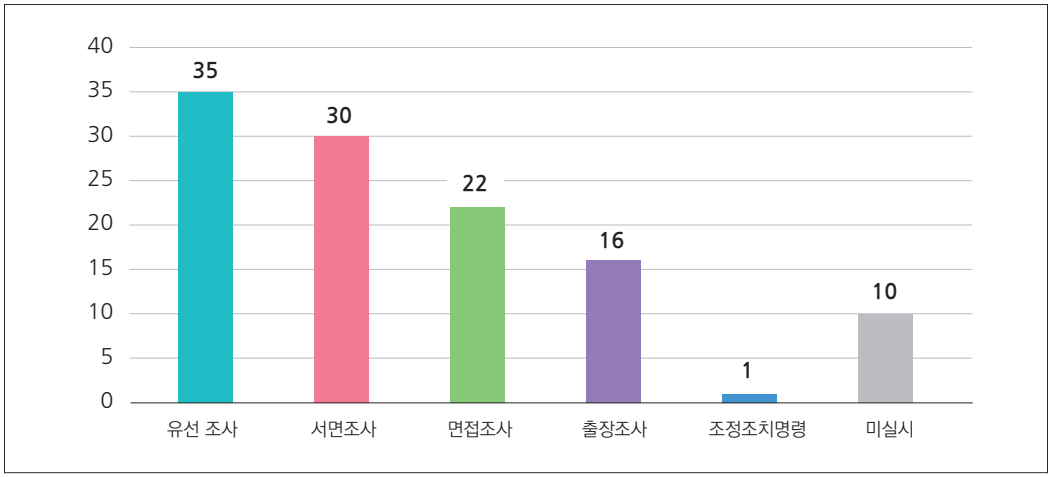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 무렵 사전 제출요구서를 발송하는지 여부, 모든 후견감독 사건에 대하여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후속조치의 내용에 관한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158)]

[그림 26] 후견사무보고서 사전 제출요구서 발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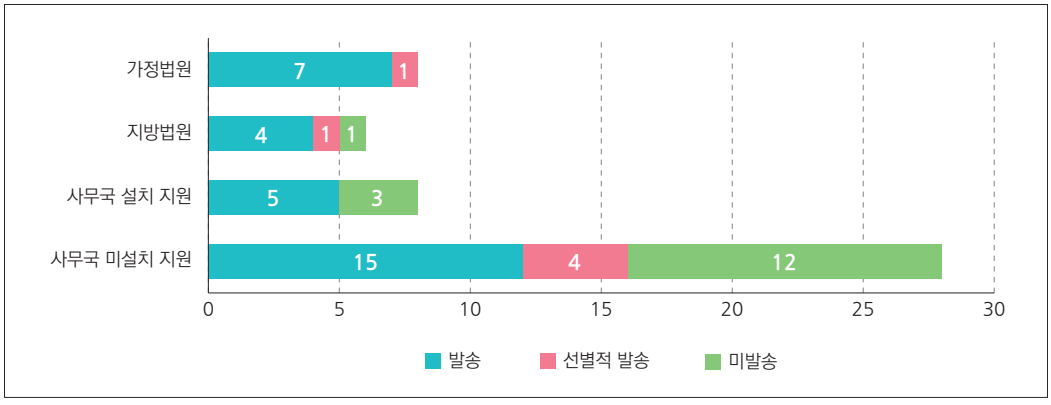

157) 전체 법원 대상(복수응답 가능).
158) 정기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미발송,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7] 후견사무보고서 및 증빙서류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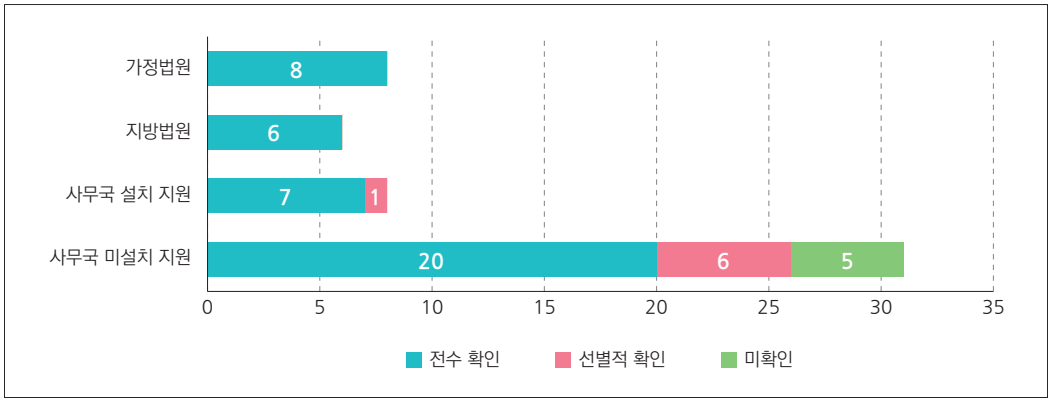

[그림 28]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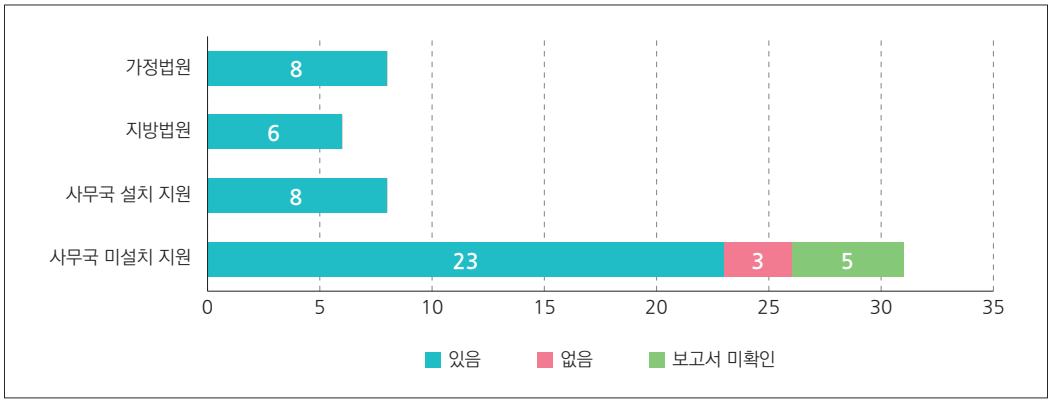

[그림 29]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내용[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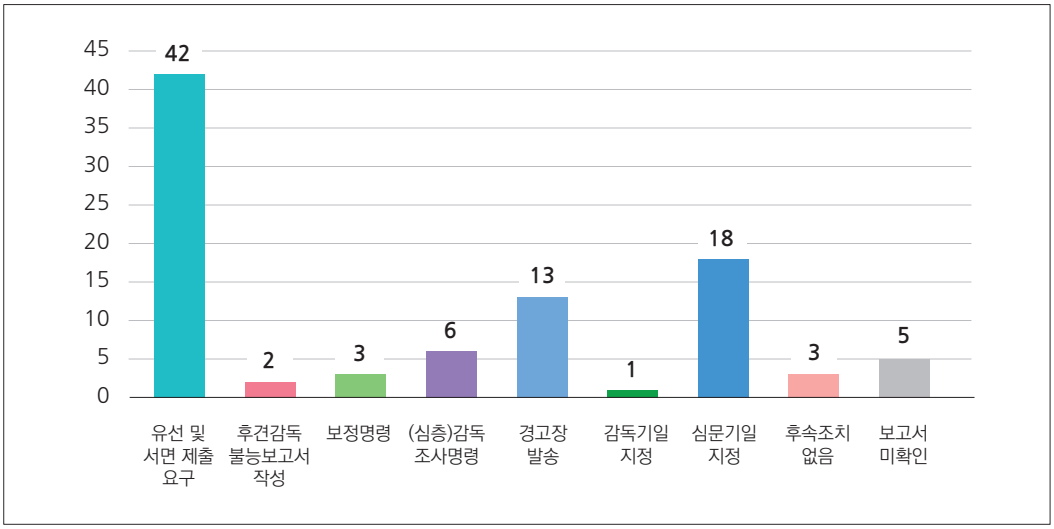

5. 심층후견감독

초기후견감독 및 정기후견감독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60)] 심층후견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회계사, 세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감독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전문후견감독위원에게 조사의뢰를 하여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제출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이 심층후견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심층후견감독 실시 여부, 기준 및 형태는 법원에 따라 다르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규모가 작을수록 심층후견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59) 전체 법원 대상(복수응답 가능).

160) 신상 및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대, 방임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미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 변경 또는 양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후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그림 30] 심층후견감독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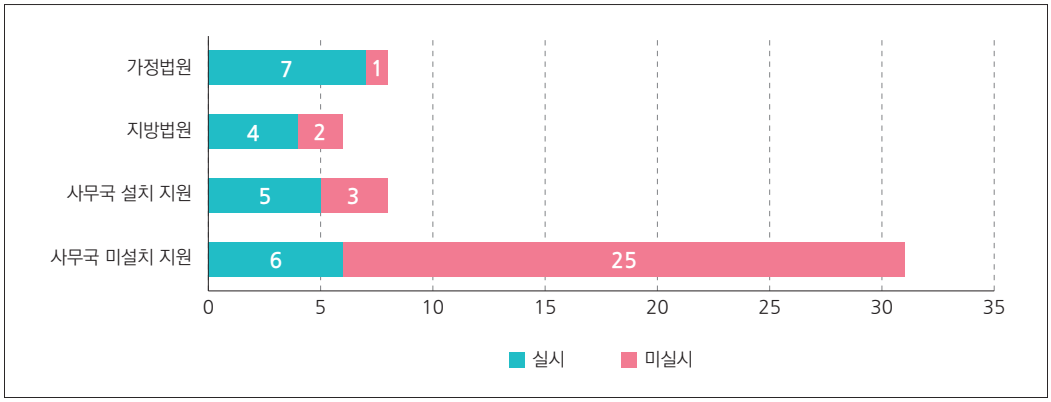

[그림 31] 심층후견감독 형태[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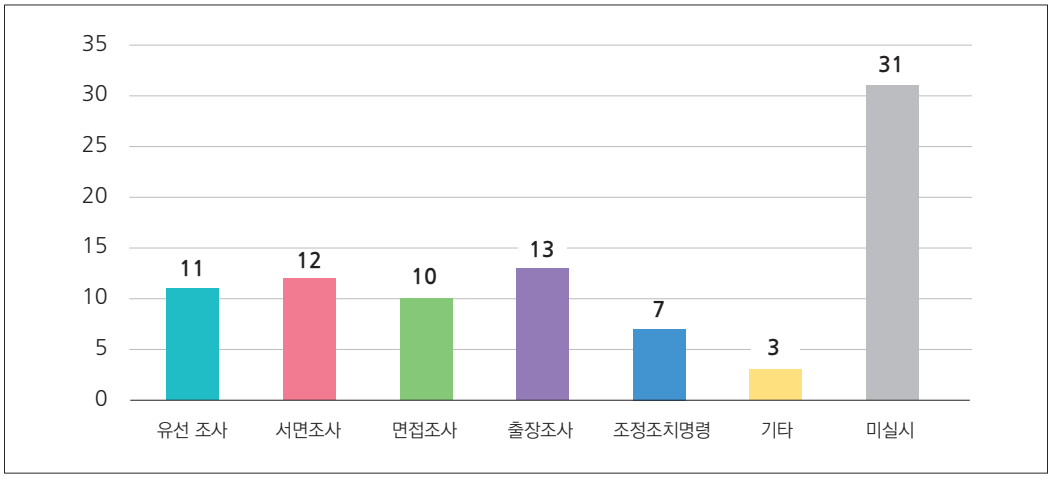

6. 후견감독 종료

후견종료심판이 확정되거나 피후견인의 사망, 미성년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등의 후견종료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후견감독사건을 종국하게 된다. 후견감독 종료 단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최종 재산계산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161) 전체 법원 대상(복수응답 가능).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속조치 시행 여부, 종료감독보고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무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2]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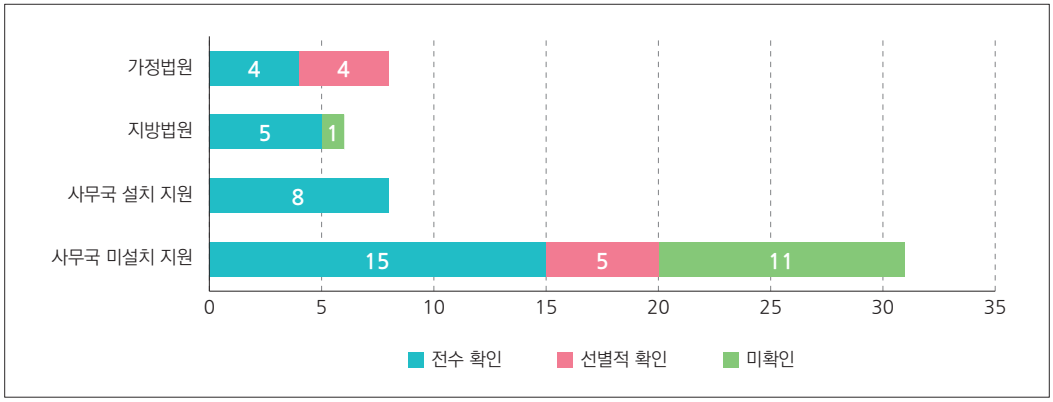

[그림 33]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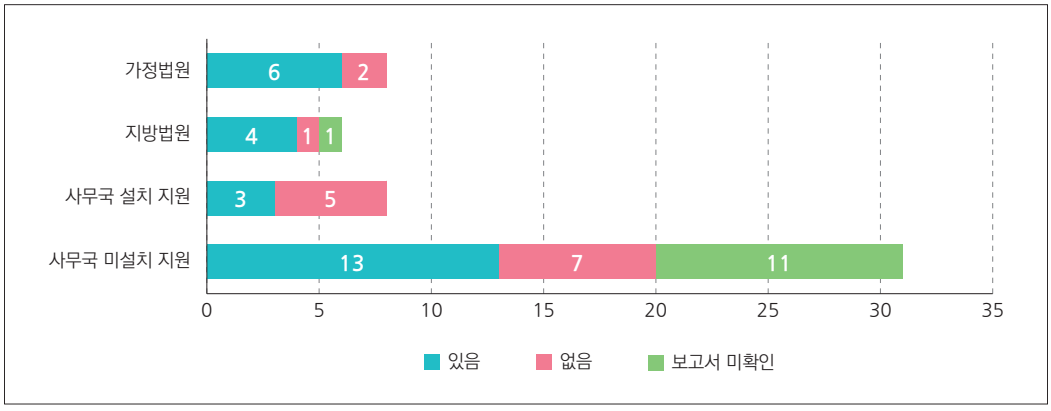

[그림 34]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후속조치의 내용[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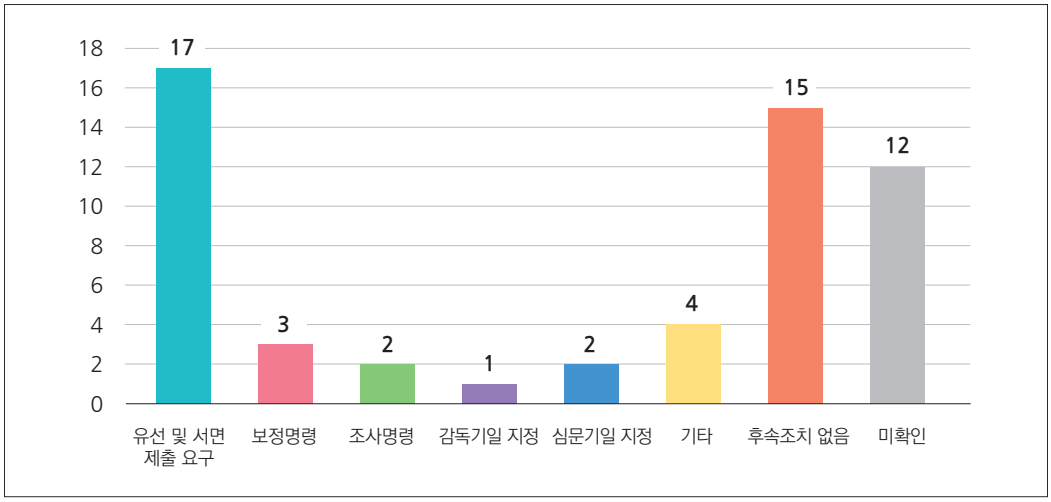

[그림 35] 종료감독보고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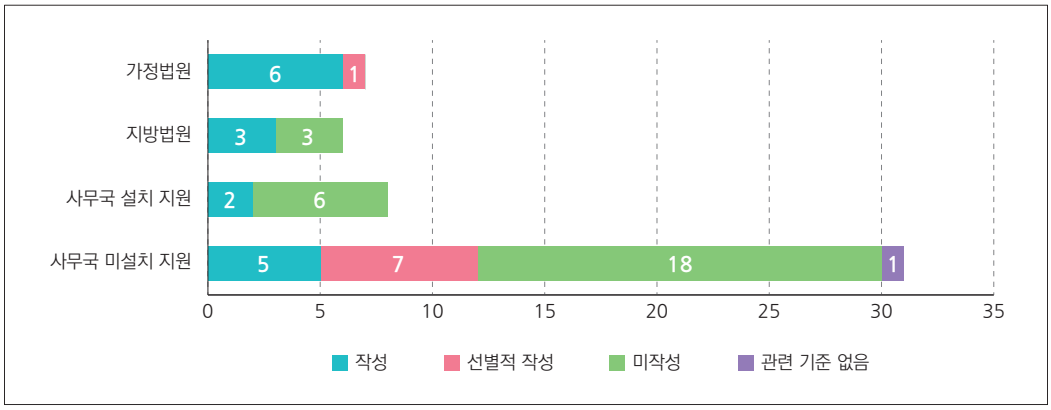

한편, 후견종료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후견종료등기가 이루어지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견종료등기신청 안내 여부에 관한 실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162) 전체 법원 대상(복수응답 가능).

[그림 36] 후견종료등기신청 안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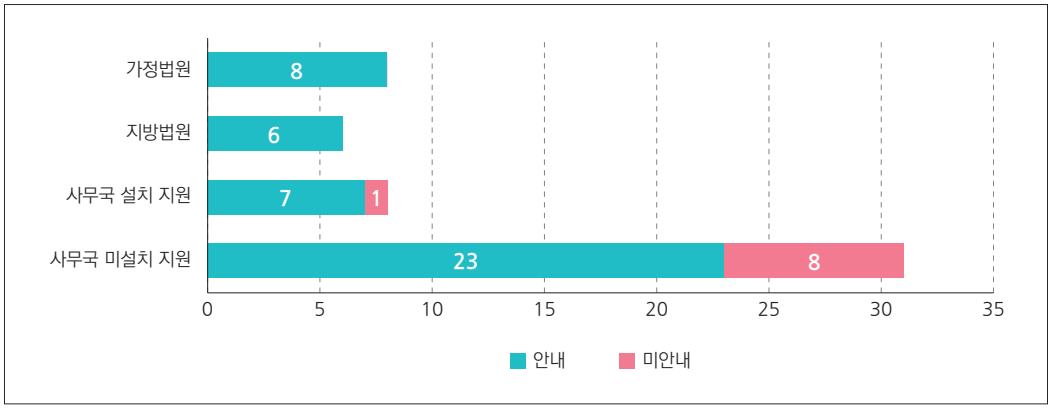

V. 각 법원의 업무지침 및 양식

1. 각 법원의 업무지침

각 법원 내부적으로 각 법원의 사정에 맞는 업무지침(이른바, 업무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가정법원의 경우 내부 업무매뉴얼이 존재하는 법원이 상당수 있고, 그중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관련 사항을 책자 형태로 발간하기도 하였다.[163] 대부분의 지방법원과 지원에는 내부 업무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타법원의 업무매뉴얼, 특히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위 책자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후견사건 처리 실무[164]를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6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 (202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7);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24);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 (2025) 참조.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은 후견센터 후견사건 담당자와 법관의 업무 내용과 업무처리절차, 보고서 검토와 작성, 결재 등과 관련한 전산작업 수행 방법, 유의사항 등 후견사건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내용을 사건단계별로 담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은 2019년 발간한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의 개정판으로 후견인 교육, 후견개시조사, 후견감독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부수사건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은 후견개시사건과 후견감독사건, 후견감독부수사건의 업무처리절차와 조사과정에서의 실무처리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담고 있다.

164)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처리 실무 (2015).

[그림 37] 업무지침 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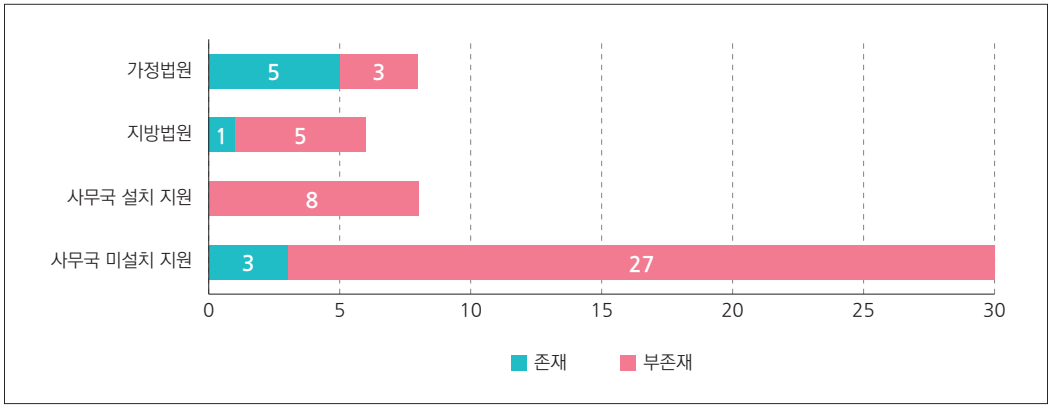

2. 각 법원의 보고서 양식

후견감독보고서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내부적으로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타법원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65]

[그림 38] 후견감독보고서 양식 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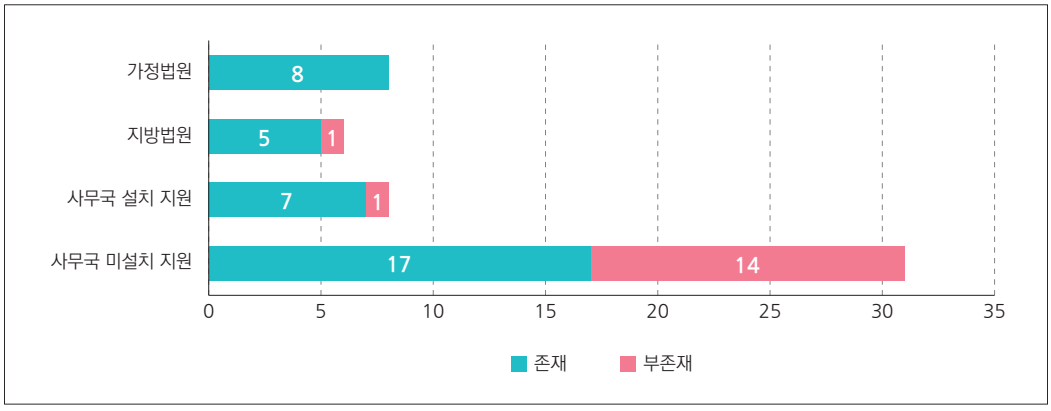

내부적으로 보고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별로 양식의 세부 내용은 다르게

165)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의 보고서 양식은 별첨1 참조[현황 조사 시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보고서 양식도 회신받았으나, 위 가정법원의 양식 중 하나의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루어져 있다. 별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감독과 정기감독 및 심층감독, 성년 · 한정후견 사건과 미성년후견 사건 및 특정후견 사건, 일반감독과 간이감독을 나누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두고, 그 외에도 종료사건, 불능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집행조사보고서, 조정조치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는 법원[166]이 있는 반면, 성년후견사건과 미성년후견사건을 나누지 않고 초기감독과 정기감독, 일반감독과 간이감독을 나누고 종료사건 후견감독보고서 양식을 두는 법원,[167] 초기감독과 정기감독만을 나누어 후견감독보고서 양식을 두는 법원[168]이 있고,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 양식과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두는 법원,[169] 후견감독조사보고서 기본 양식만을 두고 있는 법원[170]도 있다.[171]

별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후견감독보고서는 대체로 사건의 개요에 관한 부분, 신상 관련 상황에 관한 부분, 재산 관련 상황에 관한 부분, 감독의견 및 향후 감독방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재산 관련 상황에 관한 부분은 재산관리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 사건유형 및 감독유형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그중 일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거나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형된 양식의 보고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VI. 후견감독업무 지원체계 관련 현황

1. 외부 전문가 위원의 위촉 및 운영

후견감독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개입하는 것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

166) 서울가정법원은 조기감독단계에서 성년 · 한정후견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 종료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미성년 조기후견감독보고서 양식, 정기감독단계에서 성년후견 일반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성년후견 간이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성년후견 불능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미성년후견 일반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미성년후견 간이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미성년후견 불능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집행조사보고서, 조정조치보고서,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신상),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재산), 종료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 특정후견 집행조사보고서, 특정후견 종료사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두고 있다.

167) 대구가정법원.

168) 부산가정법원.

169) 울산가정법원.

170) 수원가정법원.

171) 그밖에 광주가정법원은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을 나누어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두고 있으나, 항목에 있어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고, 특정후견 사건의 후견감독집행조사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에 부합하는 적절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여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후견감독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법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친족후견인의 경우 후견인교육을 받았더라도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견사무상담위원을 두어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감독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전문후견감독위원이나 심층후견감독위원으로 위촉하여 법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도 하고,[172]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하여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분야 전문가를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법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도 한다.[173]

이러한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의 위촉 여부는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위촉 여부에 관한 현황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9] 후견사무상담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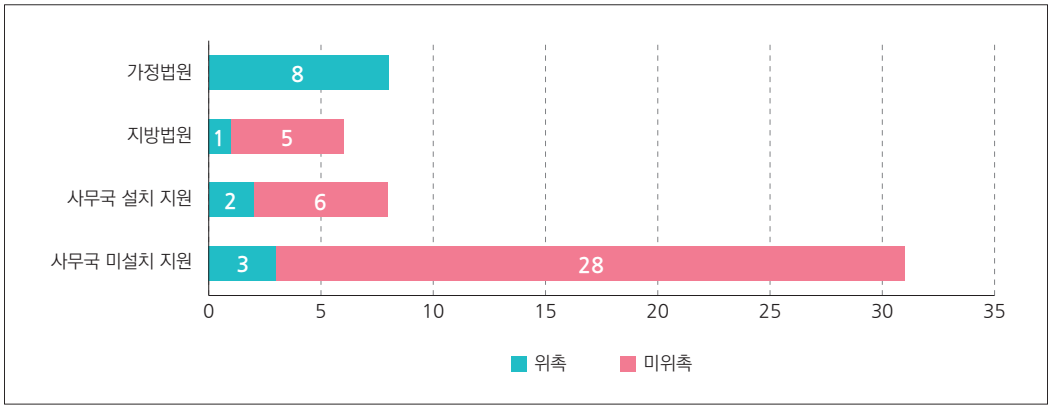

172) 법원이 후견감독심층조사 시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에게 후견감독재산조사의뢰 또는 후견감독신상조사의뢰를 하여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으로 하여금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73) 후견인, 미성년 사건본인 등에 대한 조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면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에게 대상자의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 실시 후 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40]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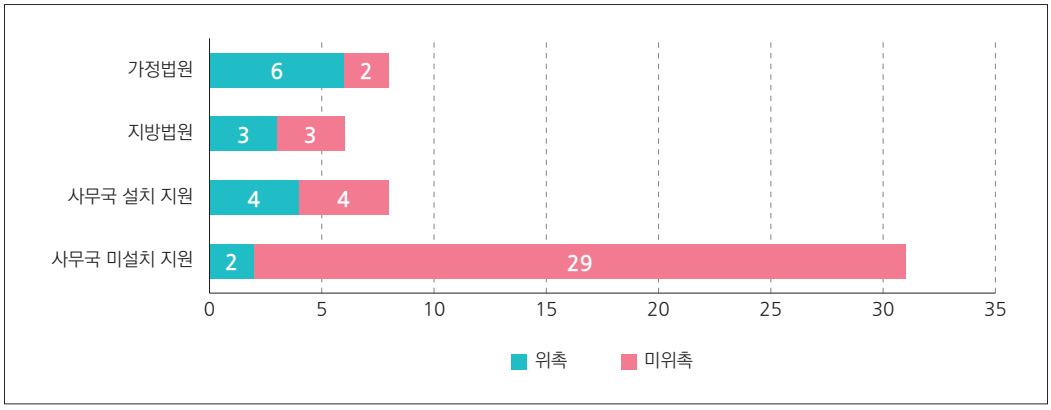

[그림 41] 심층후견감독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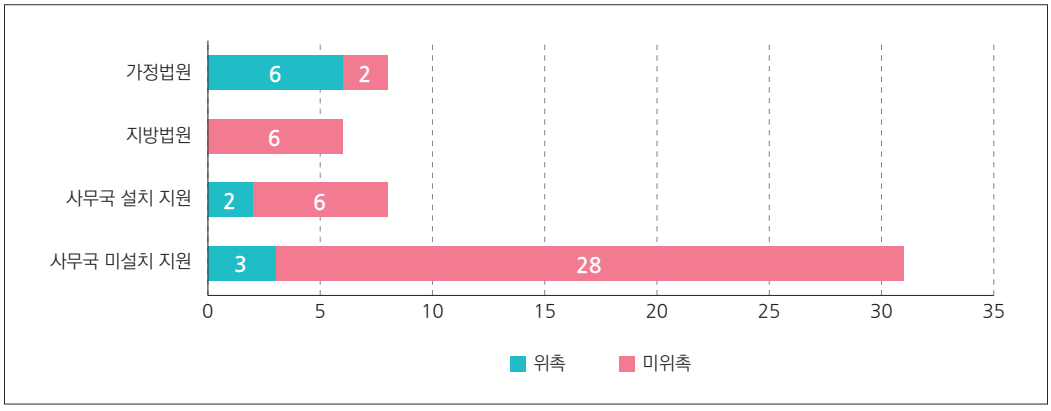

[그림 42]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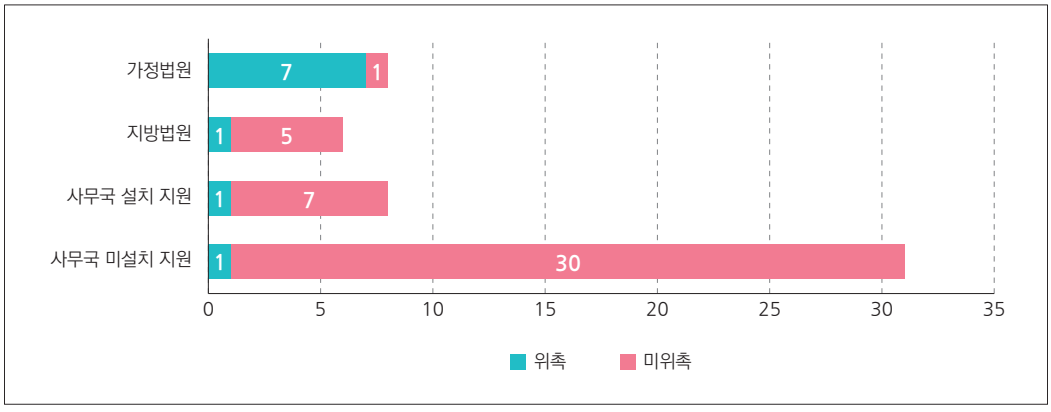

2.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현재 후견인은 대부분 친족 중에서 선임되고 있는데, 친족후견인이 후견감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나 후견사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이때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74]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은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국선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돌보아 줄 친족이 없거나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는 피후견인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법원은 후견인 감독에 관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실무상 국선후견인 제도[175]는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후견사무를 담당할 마땅한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이거나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친족에게 후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적정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시행한 '후견인 보수 절차구조에 관한 시범실시 계획(안)'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2018. 5.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176]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에 16건의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66건의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였고, 아래 표[177]와 같이 2024년까지의 누적 선임건수는 237건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가운데 국선후견(감독)인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있다.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성년후견의 경우 국선후견인 선임 비율이, 미성년후견의 경우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비율이 높고, 성년후견은 감독 과정에서 후견인 변경이나 추가 선임, 후견감독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후견은 개시 초기에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174) 민법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175) 친족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사안에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절차구조를 통해 국고에서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176) 이하 서울가정법원의 국선후견인 제도 운영 현황은 박종국, "국선후견사건 현황 및 후견감독 과제",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35-40; 박정기, "전문가 후견인 현황 및 충실화 방안",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88-90 및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후견감독담당관에 대한 인터뷰(2025. 12. 3.) 내용 참조.

177) 박정기, "전문가 후견인 현황 및 충실화 방안",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89.

경우가 많다.[178] 국선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후견감독사건 1건에서 피후견인 1인 기준으로 월 20만 원이고, 동일한 후견감독사건에서 피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인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인이 증가함에 따라 10만 원씩 증액하고 있다.

[그림 43] 서울가정법원 연도별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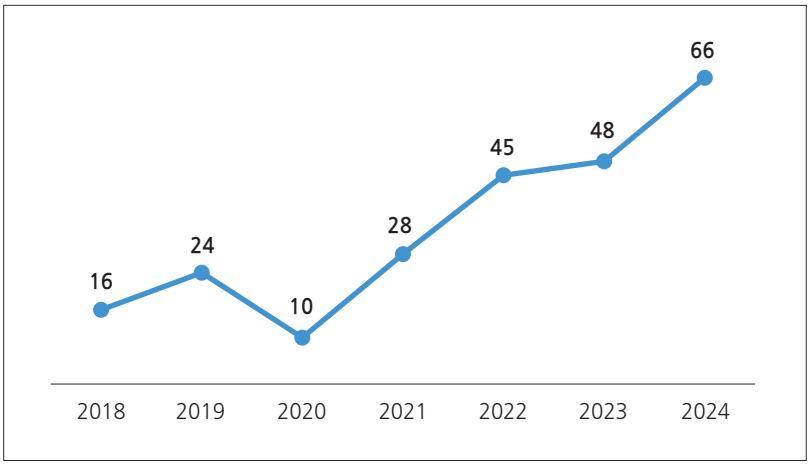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건수	16	40	50	78	123	171	237

서울가정법원에서 2018년부터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일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국선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근거 규정 및 예산의 부재로 국선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179]

178) 국선후견(감독)인을 후견 개시 초기에 선임하는 경우는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 후견인의 후견 사무 지원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고, 후견 감독 과정에서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이나 사망, 건강 문제 등 후견인의 사정으로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나 마땅한 친족 등 후보자가 없는 경우, 횡령이나 친족간 심한 분쟁, 감독에 비협조, 자진 사임 등의 사유로 기존 후견인이 적당하지 않아 직권으로 후견인 변경이나 추가 선임, 감독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박정기, "전문가 후견인 현황 및 충실화 방안",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89].

179) 2024. 9. 기준으로 국선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다.

[그림 44] 국선후견인제도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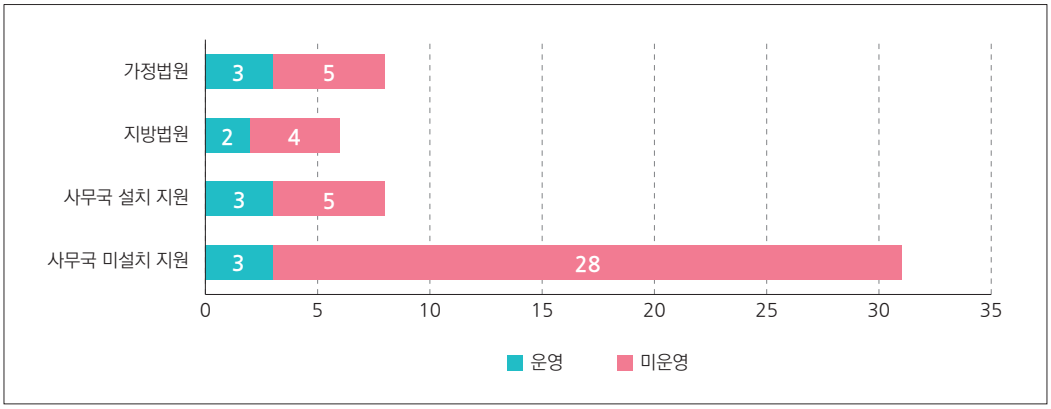

3. 후견감독담당자 연수 및 교육

가.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사법연수원에서는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사재판실무 법관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가사재판실무 법관연수 과정 중 '후견사건 처리실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에 개설된 연수에서는 후견사건 실무 강의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개관, 후견사건의 심리 절차 및 업무 처리 방법, 후견인의 후견사무, 후견감독 절차 및 내용, 부수사건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180]

나. 법원공무원교육원 성년후견과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은 5, 6, 7급 법원(등기)사무직렬과 조사사무직렬(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과정(5, 6, 7급)과 8, 9급 법원(등기)사무직렬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과정(8, 9급)을 개설 중이다.[181] 아래에서 보는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가 실무적 연수 중심인 반면, 성년후견과정은 후견과 관련한 이론적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25년 성년후견과정(5, 6, 7급)의 교육은 가사비송실무(총론), 성년후견실무, 민법(상속법), 후견재판 및 성년후견개시의 이해, 미성년후견감독과 국선후견의 이해, 성년후

180) 사법연수원, "후견사건 실무", 2025년 가사재판실무 연수일정표 및 연수자료 (코트넷 2025. 4. 9. 게시).
181)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연간 교육일정 내 교육세부계획 자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담당 사무관과의 인터뷰 (2024. 9. 12. 및 2026. 1. 6.)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견감독(기본 · 심층)과 후견사무 지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실무(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강의가 이루어졌고, 성년후견과정(8, 9급) 교육은 가사비송실무(총론), 성년후견실무, 가족관계등록실무(등록사항별 증명서), 미성년후견실무, 성년후견개시의 이해 및 질의, 성년후견감독의 이해 및 질의 등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후견에 관한 교육 수요의 증가로 2026년도에는 성년후견과정(5, 6, 7급)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설할 예정이다.

다.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

법원행정처[182]는 2020년부터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후견감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183] 후견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론적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과정과 달리,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후견감독업무에 대한 실무 위주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도 연수 과정은 후견제도의 이해, 기본 · 심층후견감독 실무, 미성년후견감독 실무와 국선후견제도의 이해, 후견등기실무, 부수사건 감독 실무 및 후견감독 담당자의 후견사무 지도와 유의사항, 후견감독 시 제반절차의 활용(친족후견인교육, 조정조치, 후견감독위원), 전국 법원 후견감독 실무현황과 과제, 전산시스템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6년도에는 후견감독 담당자 양성을 위한 '후견감독 준비과정' 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VII. 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4년 이후 후견감독사건(후감)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거

182) 연수운영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연수지원을 하다가 2025년부터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이관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183)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 내용은 연수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관과의 인터뷰 (2024. 9. 12. 및 2026. 1. 6.) 내용과 연수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법원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법원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통해서 법원 코트넷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방식의 설문조사를 2025. 12. 3.부터 2025. 12. 12.까지 10일간 진행하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 검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4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집계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항별 응답 내용을 확인하여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184]에 해당하는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총 293개의 응답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고, 일부 문항의 응답을 누락한 경우는 미응답으로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초정보

가. 후견감독업무 담당 시기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시기[185]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인 응답자가 6.8%,[186]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인 응답자가 20.8%,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인 응답자가 26.6%,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이인 응답자가 45.7%를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45.7%가 최근 3년 사이에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의 실무 현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응답 결과와 최근 3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84) 문항 4의 응답값이 문항 5의 응답값보다 작은 경우 및 문항 7에서 항목1과 다른 항목을 함께 선택한 경우.
185)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담당한 마지막 연도가 속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86) 항목별 비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것으로, 합계가 99.5~100.4 이내의 범위에 속하며 별도 수정 없이 표기하였다. 이하 같다.

[표 9] 후견감독업무 담당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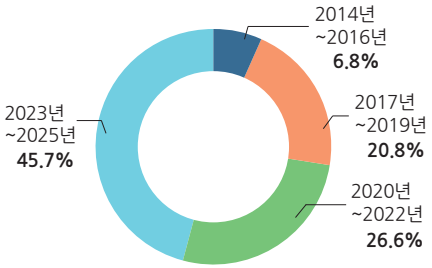

후견감독업무 담당 시기	숫자 (비율)
2014년 ~ 2016년	20 (6.8%)
2017년 ~ 2019년	61 (20.8%)
2020년 ~ 2022년	78 (26.6%)
2023년 ~ 2025년	134 (45.7%)

나. 근무 법원 유형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근무한 법원의 유형[187]이 가정법원 본원인 응답자가 38.6%,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지방법원 본원인 응답자가 15.0%,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사무국 설치 지원[188]인 응답자가 18.1%,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인 응답자가 28.3%를 구성하였다.

[표 10] 근무 법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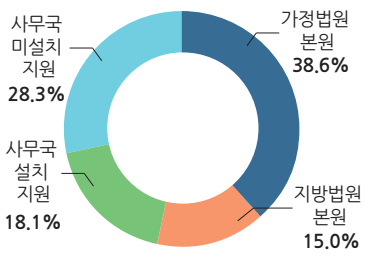

근무 법원 유형	숫자 (비율)
가정법원 본원	113 (38.6%)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지방법원 본원	44 (15.0%)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사무국 설치 지원)	53 (18.1%)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83 (28.3%)

187) 중복되는 경우 설문 응답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근무한 법원을 택하고, 해당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였다.

188) 지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사무국 설치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무국 설치 지원과 사무국 미설치 지원을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 직렬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의 직렬이 법원사무직렬인 응답자는 80.5%, 조사사무직렬인 응답자는 19.5%에 해당하였다.

[표 11] 업무담당 당시 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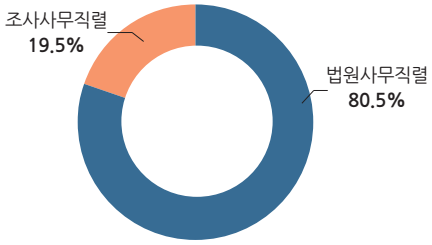

직렬	숫자 (비율)
법원사무직렬	236 (80.5%)
조사사무직렬	57 (19.5%)

3. 업무의 비중

가. 후견업무

응답자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담당한 전체 업무의 업무량 중 후견 업무, 즉 후견개시사건, 후견감독사건, 후견부수사건 업무의 업무량이 차지한 비중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이를 최근 3년 사이에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응답자의 경우로 한정하여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189]

189) 후견감독사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후견감독 시행 초기의 업무형태와 최근의 업무형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3년 사이에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응답자의 답변을 별도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표 12]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전체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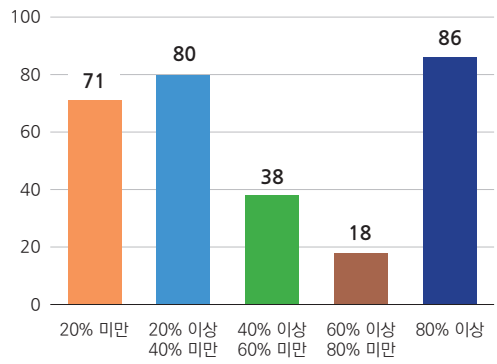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	숫자 (비율)
20% 미만	71 (24.2%)
20% 이상 40% 미만	80 (27.3%)
40% 이상 60% 미만	38 (13.0%)
60% 이상 80% 미만	18 (6.1%)
80% 이상	86 (29.4%)

[표 13]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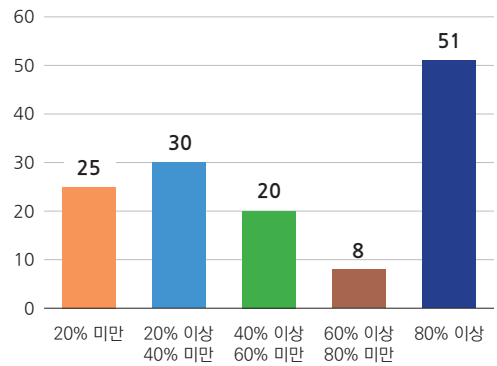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	숫자 (비율)
20% 미만	25 (18.7%)
20% 이상 40% 미만	30 (22.4%)
40% 이상 60% 미만	20 (14.9%)
60% 이상 80% 미만	8 (6.0%)
80% 이상	51 (38.1%)

법원유형별 응답분포를 보면, 가정법원 본원에서는 후견업무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무국 미설치 지원에서는 20% 미만 또는 20% 이상 40% 미만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가정법원 본원에서는 후견 업무가 비교적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지원에서는 후견 업무가 겸임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원보다 지원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보다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사무국 설치 지원보다 사무국 미설치 지원의 경우 겸직 사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14]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20% 미만	9 (8.0%)	11 (25.0%)	15 (28.3%)	36 (43.4%)
20%이상 40% 미만	17 (15.0%)	14 (31.8%)	17 (32.1%)	32 (38.6%)
40% 이상 60% 미만	12 (10.6%)	7 (15.9%)	10 (18.9%)	9 (10.8%)
60% 이상 80% 미만	11 (9.7%)	1 (2.3%)	3 (5.7%)	3 (3.6%)
80% 이상	64 (56.6%)	11 (25.0%)	8 (15.1%)	3 (3.6%)

[표 15]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20% 미만	2 (3.7%)	2 (11.8%)	6 (27.3%)	15 (36.6%)
20%이상 40% 미만	6 (11.1%)	3 (17.6%)	5 (22.7%)	16 (39.0%)
40% 이상 60% 미만	6 (11.1%)	4 (23.5%)	4 (18.2%)	6 (14.6%)
60% 이상 80% 미만	5 (9.3%)	0 (0.0%)	1 (4.5%)	2 (4.9%)
80% 이상	35 (64.8%)	8 (47.1%)	6 (27.3%)	2 (4.9%)

이 문항의 응답분포는 직렬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겸직업무의 비중이 조사사무직렬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표 16]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직렬별)

[법원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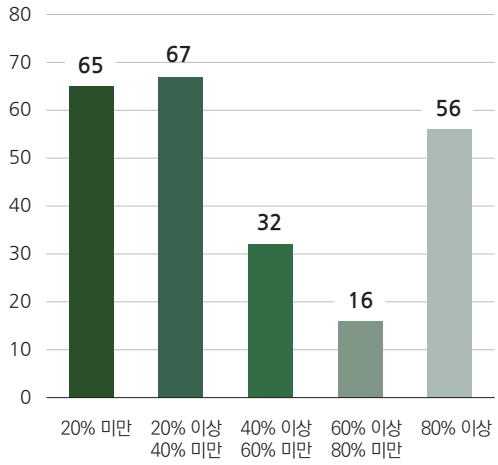

법원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65 (27.5%)
20% 이상 40% 미만	67 (28.4%)
40% 이상 60% 미만	32 (13.6%)
60% 이상 80% 미만	16 (6.8%)
80% 이상	56 (23.7%)

[조사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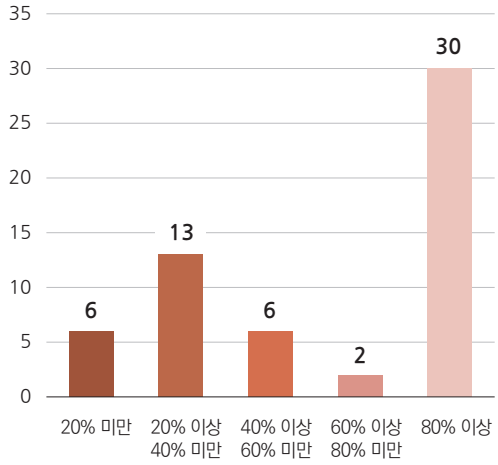

조사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6 (10.5%)
20% 이상 40% 미만	13 (22.8%)
40% 이상 60% 미만	6 (10.5%)
60% 이상 80% 미만	2 (3.5%)
80% 이상	30 (52.6%)

[표 17] 전체 업무량 중 후견 업무량 비중(직렬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법원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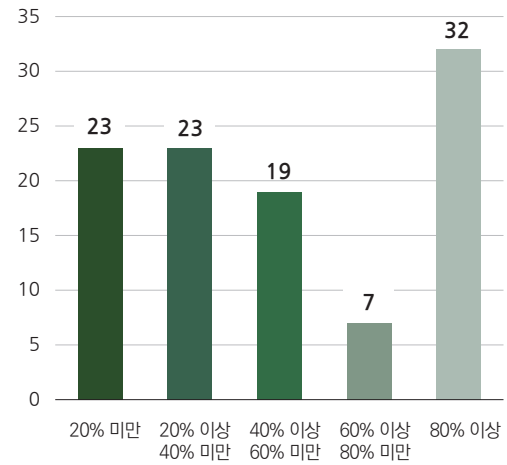

법원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23 (22.1%)
20% 이상 40% 미만	23 (22.1%)
40% 이상 60% 미만	19 (18.3%)
60% 이상 80% 미만	7 (6.7%)
80% 이상	32 (30.8%)

[조사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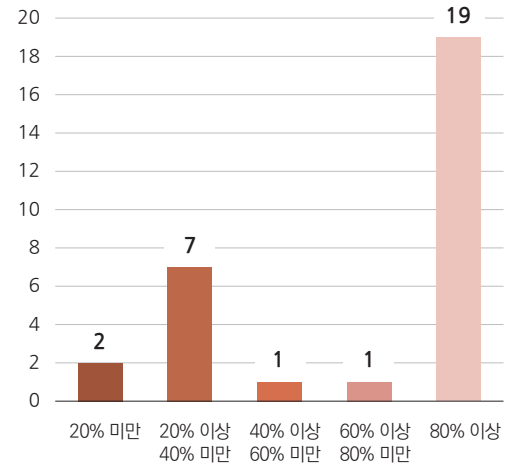

조사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2 (6.7%)
20% 이상 40% 미만	7 (23.3%)
40% 이상 60% 미만	1 (3.3%)
60% 이상 80% 미만	1 (3.3%)
80% 이상	19 (63.3%)

나. 후견감독업무

응답자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담당한 전체 업무의 업무량 중 후견감독사건 업무의 업무량이 차지한 비중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이를 최근 3년 사이에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응답자의 경우로 한정하여 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8]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전체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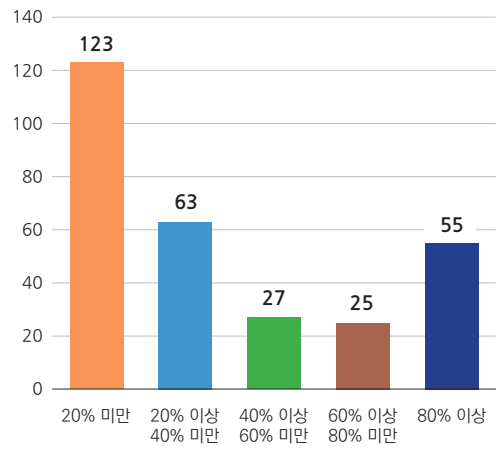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	숫자 (비율)
20% 미만	123 (42.0%)
20% 이상 40% 미만	63 (21.5%)
40% 이상 60% 미만	27 (9.2%)
60% 이상 80% 미만	25 (8.5%)
80% 이상	55 (18.8%)

[표 19]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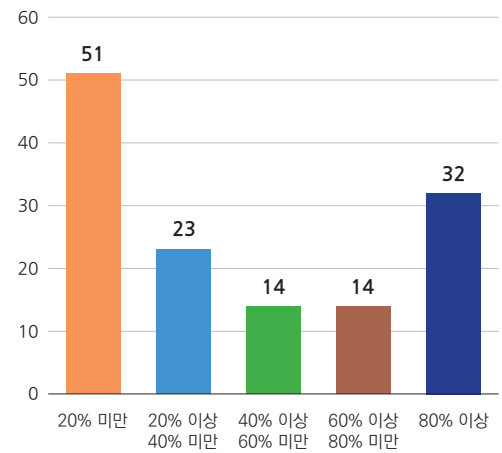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	숫자 (비율)
20% 미만	51 (38.1%)
20% 이상 40% 미만	23 (17.2%)
40% 이상 60% 미만	14 (10.4%)
60% 이상 80% 미만	14 (10.4%)
80% 이상	32 (23.9%)

이 문항의 응답은 법원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법원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20, 21과 같다. 가정법원 본원의 경우 후견감독업무 비중이 60% 이상 80% 미만 또는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무국 미설치 지원의 경우 후견감독업무 비중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20]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20% 미만	24 (21.2%)	19 (43.2%)	26 (49.1%)	54 (65.1%)
20%이상 40% 미만	15 (13.3%)	11 (25.0%)	17 (32.1%)	20 (24.1%)
40% 이상 60% 미만	9 (8.0%)	3 (6.8%)	8 (15.1%)	7 (8.4%)
60% 이상 80% 미만	20 (17.7%)	2 (4.5%)	1 (1.9%)	2 (2.4%)
80% 이상	45 (39.8%)	9 (20.5%)	1 (1.9%)	0 (0.0%)

[표 21]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법원유형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20% 미만	9 (16.7%)	5 (29.4%)	11 (50.0%)	26 (63.4%)
20%이상 40% 미만	5 (9.3%)	3 (17.6%)	7 (31.8%)	8 (19.5%)
40% 이상 60% 미만	4 (7.4%)	1 (5.9%)	4 (18.2%)	5 (12.2%)
60% 이상 80% 미만	11 (20.4%)	1 (5.9%)	0 (0.0%)	2 (4.9%)
80% 이상	25 (46.3%)	7 (41.2%)	0 (0.0%)	0 (0.0%)

이 문항의 응답 분포는 직렬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겸직 업무의 비중이 조사사무직렬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표 22]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직렬별)

[법원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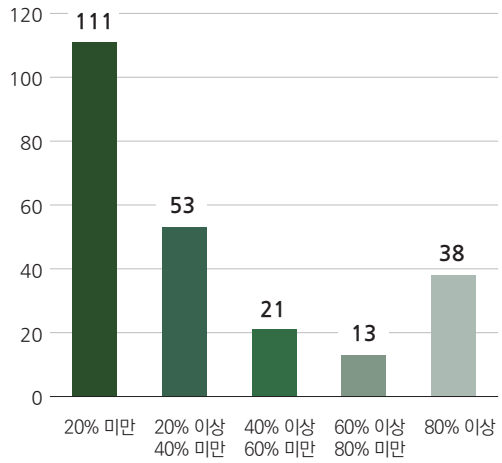

법원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111 (47.0%)
20% 이상 40% 미만	53 (22.5%)
40% 이상 60% 미만	21 (8.9%)
60% 이상 80% 미만	13 (5.5%)
80% 이상	38 (16.1%)

[조사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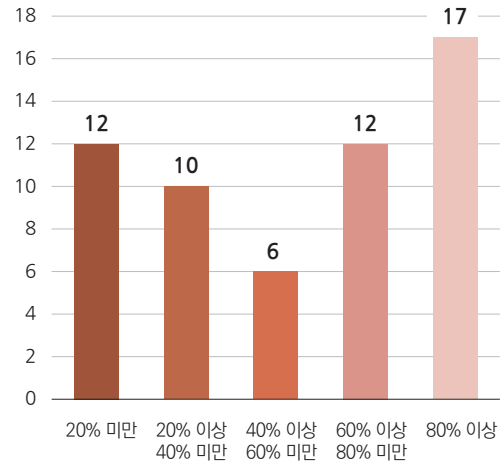

조사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12 (21.1%)
20% 이상 40% 미만	10 (17.5%)
40% 이상 60% 미만	6 (10.5%)
60% 이상 80% 미만	12 (21.1%)
80% 이상	17 (29.8%)

[표 23] 전체 업무량 중 후견감독 업무량 비중(직렬별 최근 3년 업무담당자 대상)

[법원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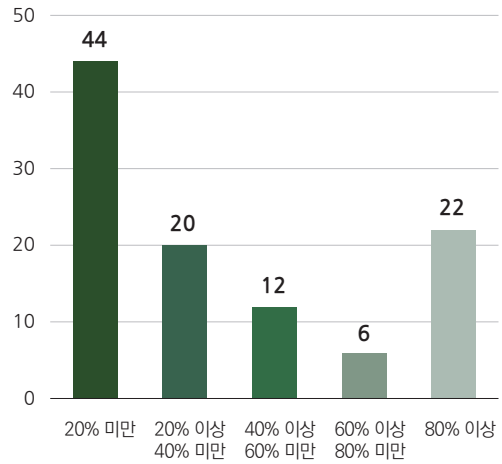

법원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44 (42.3%)
20% 이상 40% 미만	20 (19.2%)
40% 이상 60% 미만	12 (11.5%)
60% 이상 80% 미만	6 (5.8%)
80% 이상	22 (21.2%)

[조사사무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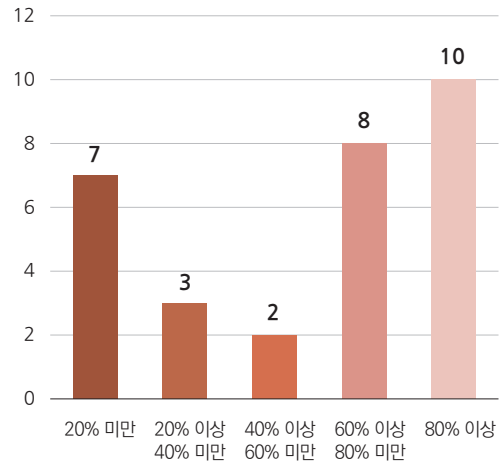

조사사무직렬	숫자 (비율)
20% 미만	7 (23.3%)
20% 이상 40% 미만	3 (10.0%)
40% 이상 60% 미만	2 (6.7%)
60% 이상 80% 미만	8 (26.7%)
80% 이상	10 (33.3%)

4. 업무량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보직에서 수행한 전체적인 업무량을 다른 보직 담당자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비교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4, 25와 같다.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 업무량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로, 후견감독업무 담당자 다수가 해당 보직의 업무부담을 평균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시기별 응답 분포를 검토하면 최근 담당자일수록 '다소 많다' 또는 '매우 많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사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4] 업무량 비교(전체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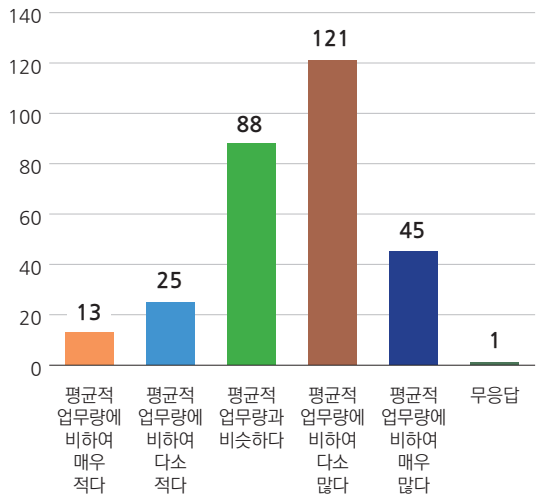

업무량 비교	숫자 (비율)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매우 적다	13 (4.4%)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다소 적다	25 (8.5%)
평균적 업무량과 비슷하다	88 (30.0%)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다소 많다	121 (41.3%)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매우 많다	45 (15.4%)
무응답	1

[표 25] 업무량 비교(업무담당시기별)

	2014~2016년	2017~2019년	2020~2022년	2023~2025년
매우 적다	2 (10.0%)	3 (4.9%)	4 (5.1%)	4 (3.0%)
다소 적다	4 (20.0%)	8 (13.1%)	5 (6.4%)	8 (6.0%)
비슷하다	6 (30.0%)	21 (34.4%)	23 (29.5%)	38 (28.4%)
다소 많다	5 (25.0%)	18 (29.5%)	34 (43.6%)	64 (47.8%)
매우 많다	3 (15.0%)	11 (18.0%)	11 (14.1%)	20 (14.9%)
무응답	0	0	1	0

다른 보직 담당자의 평균적인 업무량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190]에 관한 조사결과, 업무량이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44.6%는 '겸임 업무의 과중'을, 44.0%는 '담당 후견감독사건 수의 과다'를, 54.2%는 '누적된 미감독 사건 수의 과다'를, 36.1%는 '후견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를, 49.4%는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후견사무 안내, 민원 응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를 그 이유로 들었다.[191]

[표 26]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전체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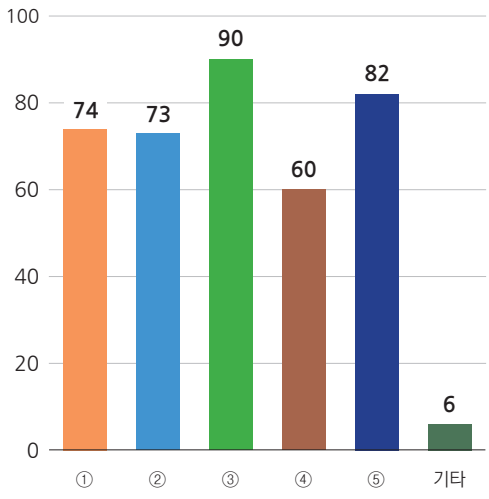

업무량 비교	숫자 (비율)
① 겸임 업무의 과중	74 (44.6%)
② 담당 후견감독사건 수의 과다	73 (44.0%)
③ 누적된 미감독 사건 수의 과다	90 (54.2%)
④ 후견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	60 (36.1%)
⑤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후견사무 안내, 민원 응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	82 (49.4%)
기타	6 (3.6%)
무응답	1

190)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1) '기타' 항목에 표시한 응답자는 기타 이유로 '고령자들이 많음', '근무 당시 한정승인, 상속포기(가사비송업무) + 후견업무(후견개시, 부수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후견감독은 주무관이 처리하였음) + 가정보호 참여까지 업무가 매우 많아 7월 인사이동 시 업무분장을 하였음', '총 사건 수, 누적된 미감독 사건 수에 비하여 담당자 인원이 너무 적음', '후견 진행 업무와 같이 후견감독 업무 진행', '후견 감독 업무에 대한 민원 응대 전화가 일반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와 달리 설명 등이 많아 필요한 전화가 많아 겸임하고 있는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 별도로 후견감독만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낌', '특이사건의 경우 다른 업무들에 비해 해결이 어려웠음'을 들었다.

[표 27]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업무담당시기별)

	2014~2016년	2017~2019년	2020~2022년	2023~2025년
①	6 (75.0%)	16 (55.2%)	18 (40.0%)	34 (40.5%)
②	2 (25.0%)	9 (31.0%)	16 (35.6%)	46 (54.8%)
③	4 (50.0%)	17 (58.6%)	29 (64.4%)	40 (47.6%)
④	3 (37.5%)	11 (37.9%)	20 (44.4%)	26 (31.0%)
⑤	3 (37.5%)	14 (48.3%)	20 (44.4%)	45 (53.6%)
기타	0 (0.0%)	1 (3.4%)	1 (2.2%)	4 (4.8%)
무응답	0	0	1	0

[표 28]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이유(법원유형별)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①	15 (22.1%)	3 (17.6%)	21 (61.8%)	35 (74.5%)
②	37 (54.4%)	5 (29.4%)	18 (52.9%)	13 (27.7%)
③	33 (48.5%)	15 (88.2%)	18 (52.9%)	24 (51.1%)
④	22 (32.4%)	9 (52.9%)	11 (32.4%)	18 (38.3%)
⑤	36 (52.9%)	10 (58.8%)	17 (50.0%)	19 (40.4%)
⑥	2 (2.9%)	0 (0.0%)	3 (8.8%)	1 (2.1%)
무응답	0	0	1	0

5. 업무 수행의 어려움

후견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192]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에 해당하였고, '후견감독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가 48.1%, '후견감독사건의 전문성 요구로 인한 업무파악의 어려움'이 42.0%,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가 44.4%, '누적된 미감독 사건의 처리'가 48.8%, '후견인 사무수행에 관한 안내

192)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및 민원 응대'가 42.7%,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후속조치'가 60.1%에 해당하였다.[193] 다수의 응답자는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려움을 나타냈고, '누적된 미감독 사건의 처리', '후견감독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 또한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후견감독업무의 어려움이 단순히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미감독 사건의 누적, 업무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실효적 대응수단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193) '기타' 항목에 표시한 응답자는 기타 이유로 '총체적으로 어려움. 특히 작은 단위 법원은 인원도 부족하고 인수인계도 부족하고 민원인도 잘 모르기에 전반적으로 어려움.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때 전산사이클을 입력해놓지 않아 그 당시 후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들도 많고, 인원문제로 진행이 안 된 적도 있음', '피후견인 및 후견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송달의 어려움과 감독보고서의 불완전한 제출 등(이를 제재할 방법의 부재)', '큰 사고가 안 터지는 업무다 보니 타 보직자들의 업무이해도가 낮아 일이 없다고 생각함', '후견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민원인에게도 불편하고, 관리를 하는 직원들도 불편함. 3개월 이상 오래 걸리더라도 개명 정도의 절차 정도만 진행되더라도 좋겠고, 특히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후견감독인', '고령자들이 많음', '조기감독재판부의 경우, 재산목록감독과 후견감독부수사건의 신건검토, 민원응대, 문건분류, 각종 후견행사업무의 도움 등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있음. 더구나 재산목록보고서는 후견인이 되어 처음 제출하는 보고서여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업무분장이 어렵다면 문건분류업무라도 감독관이 아닌 곳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지원의 경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업무를 미루고, 조사관에게 모두 넘기려는 분위기가 있었음. 겸임조사관으로 2개 법원의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으로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음', '감독관들마다 감독의 기준이 다름', '후견인들이 노령이거나 생계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힘들어 하므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 서류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웠음', '다른 사건과 겸임하므로 후견감독 업무를 전념할 수 없음', '인력 부족', '후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전문성 부재 또는 관심도 차이에 따른 감독방향 불일치', '후견사무보고서 및 재산목록보고서 분석 및 파악, 평가에 드는 물리적 시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구체적인 지침 필요함)', '수년 전이라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유선문의로 특히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함. 명확히 심판문의 별지에 나와 있는 행위라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행위가 종종 있어서 곤란했던 기억이 남아있음', '미제출하겠다는 후견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을 들었다.

[표 29]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전체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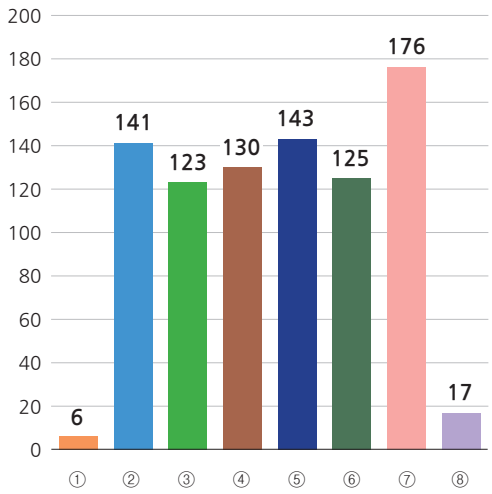

업무 수행의 어려움	숫자 (비율)
① 어려움이 없음	6 (2.0%)
② 후견감독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	141 (48.1%)
③ 후견감독사건의 전문성 요구로 인한 업무파악의 어려움	123 (42.0%)
④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	130 (44.4%)
⑤ 누적된 미감독 사건의 처리	143 (48.8%)
⑥ 후견인 사무수행에 관한 안내 및 민원 응대	125 (42.7%)
⑦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176 (60.1%)
⑧ 기타	17 (5.8%)
무응답	1

[표 30]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업무담당시기별)

	2014~2016년	2017~2019년	2020~2022년	2023~2025년
①	2 (10.0%)	1 (1.6%)	2 (2.6%)	1 (0.7%)
②	9 (45.0%)	30 (49.2%)	37 (47.4%)	65 (48.5%)
③	11 (55.0%)	24 (39.3%)	35 (44.9%)	53 (39.6%)
④	10 (50.0%)	32 (52.5%)	32 (41.0%)	56 (41.8%)
⑤	5 (25.0%)	34 (55.7%)	39 (50.0%)	65 (48.5%)
⑥	6 (30.0%)	21 (34.4%)	35 (44.9%)	63 (47.0%)
⑦	7 (35.0%)	38 (62.3%)	42 (53.8%)	89 (66.4%)
⑧	0 (0.0%)	5 (8.2%)	4 (5.1%)	8 (6.0%)
무응답	0	0	0	1

[표 31]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법원유형별)

	가정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사무국 설치 지원	사무국 미설치 지원
①	4 (3.5%)	1 (2.3%)	1 (1.9%)	0 (0.0%)
②	63 (55.8%)	15 (34.1%)	30 (56.6%)	33 (39.8%)
③	26 (23.0%)	21 (47.7%)	27 (50.9%)	49 (59.0%)
④	32 (28.3%)	23 (52.3%)	28 (52.8%)	47 (56.6%)
⑤	52 (46.0%)	19 (43.2%)	30 (56.6%)	42 (50.6%)
⑥	50 (44.2%)	15 (34.1%)	20 (37.7%)	40 (48.2%)
⑦	73 (64.6%)	25 (56.8%)	26 (49.1%)	52 (62.7%)
⑧	7 (6.2%)	1 (2.3%)	5 (9.4%)	4 (4.8%)
무응답	1	0	0	0

6. 적정 보직기간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의 적정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응답도 28.0%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약 79.5%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보직기간을 적정하다고 보았다. 반면, '1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이는 후견감독업무가 일정한 업무 파악과 경험 축적을 필요로 하며 감독의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짧은 보직 순환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2] 적정 보직기간(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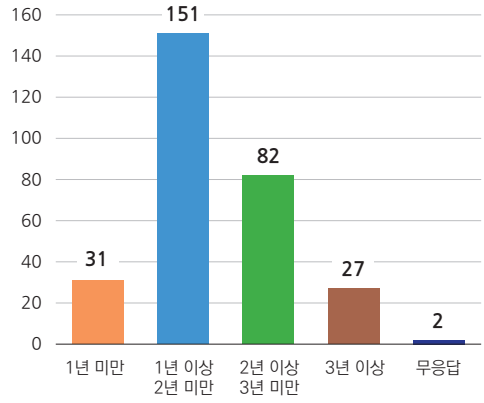

적정 보직기간	숫자 (비율)
1년 미만	31 (10.6%)
1년 이상 2년 미만	151 (51.5%)
2년 이상 3년 미만	82 (28.0%)
3년 이상	27 (9.2%)
무응답	2

7.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후견감독업무가 겸임 업무로는 제대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현장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전반적 인식은 전담 인력 배치, 업무분장 기준 정비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표 33]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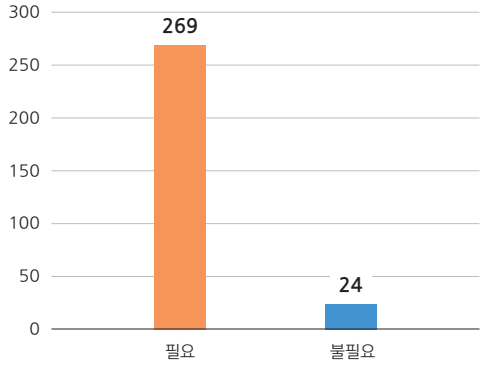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숫자 (비율)
필요하다	269 (91.8%)
필요하지 않다	24 (8.2%)

8.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견업무 및 후견감독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원 유형과 직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정법원 본원에서는 후견업무 또는 후견감독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지원에서는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직렬별로도 후견업무 및 후견감독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후견감독업무가 모든 법원에서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규모, 사건 수, 인력 배치 및 사무분담 구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견감독업무의 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사건 수 자체뿐 아니라 해당 업무가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수행되는지, 다른 업무와 겸임하여 수행되는지,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역량을 후견감독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무량에 관한 응답에서는 후견감독업무가 포함된 보직의 전체 업무량이 다른 보직의 평균적인 업무량보다 많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후견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관하여는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누적된 미감독 사건의 처리', '후견감독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 등이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이는 후견감독업무의 부담이 사건 수의 증가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실한 보고에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거치거나 후속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적정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다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보직기간을 적정하다고 보았고, 1년 미만을 적정하다고 본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후견감독업무가 일정한 업무 파악과 경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짧은 보직 순환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후견감독업무가 일반적인 겸임 방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는 후견감독업무가 사건의 계속적 관리, 후견인에 대한 지원, 후견사무보고서의 점검, 필요한 조치의 검토와 실시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또한 그 수행 여건은 법원 유형과 인력 구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후견감독실무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사건 수의 증가뿐 아니라 업무분담 형태와 보직기간, 업무수행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VIII. 서울가정법원 실무 운영 체계

1. 개관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법원 중 후견감독사건 수가 가장 많은 법원으로 현재 후견과를 설치하여 후견사건을 전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후견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현행 체계는 몇 차례 개선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 후견감독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운영 체계와 그 경위를 살펴보면, 실무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후견센터 설치와 초기 운영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후견개시사건이 2013년에 비해 286% 증가하고 2017년 후견감독사건이 2015년보다 287%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후견감독 사건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후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후견사건을 처리하고자 후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7. 7. 1.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에 후견개시 사건의 접수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및 말소등기까지 후견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조직인 후견센터를 개소하였다.[194)]

후견센터는 후견인의 신상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거나 재산유용이나 비위행위는 없는지 감시하는 정기적 관찰 및 감독에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에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적시에 개입하고 후견인의 후견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에 대한 상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후견제도의 이념인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견개시 및 감독 사건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센터를 설치하면서 후견감독참여관과 후견감독조사관의 이원적 감독 구조를 후견감독담당관 책임제로 변경하고, 선별적 조사 방식을 전수 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후견센터 설치 이전에는 후견감독참여관이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견감독일이 도래한 사건을 확인하고, 재산목록과 후견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후견감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게 보고하여 후견감독 조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법관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후견감독조사관이 후견인의 후견사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후견센터 개소 이후에는 후견감독담당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후견감독이 개시되면 후견감독사건을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감독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체계를 정비하

194)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 (2023), 3., 이하 후견센터의 설치 경위와 목적, 운영방식 등은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 2018년 후견감독실무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18. 7. 20.), 3-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였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감독조사명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시 초기부터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감독이 이루어지고, 조기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후견감독담당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감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감독을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사례회의를 개최하고 후견감독담당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후견감독담당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견감독담당관 사이에 균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견인 사무상담제도의 확대 실시, 국선후견인제도 시범 실시 등 후견복지시스템을 정비하였다.

3.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 개선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는 미감독사건이 누적됨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 후견감독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 7. 1.경부터 새로운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195]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관리절차의 핵심은 후견센터의 인력 재배치, 사건처리절차 정비, 후견감독 관련 통계양식 마련이다.

가. 후견센터의 인력 재배치

우선, 후견센터의 조직을 개편하여 조기감독팀을 신설하고 정기감독 인력을 재배치하였다. 성년 · 한정후견감독 사건에 대한 조기감독[196]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감독담당관을 각 후견재판부별로 1인씩 3인을 배치하여 후견사건의 재판참여를 겸임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시한 성년 · 한정후견감독사건의 초기 감독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기감독담당관은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후 향후 관리등급을 일반감독과 간이감독으로 구분하여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감독팀의 인력을 후견의 유형에 따라 재배치하여 정기감독 1, 2팀에서

195) 이하 2021. 7. 1.부터 시행한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의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내부보고서 및 전현덕,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온율 엮음),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나남 (2022), 368-372, 381-390 참조.

196) 초기 감독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기 감독으로 부른다.

는 조기감독을 완료한 성년 · 한정후견감독 사건의 정기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정기감독 3팀은 미성년후견감독 사건과 국선후견인을 선임한 후견감독사건, 임의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기감독 1, 2팀에서는 성년 · 한정후견인이 제출하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일반감독과 간이감독으로 구분한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며, 후견감독부수사건 심판의 이행결과와 이행의 적정 여부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기감독 3팀에서는 성년후견과 감독방식이 상이한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대하여 조기감독과 정기감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신상심층후견감독을 병행하여 미성년자의 신상보호 및 양육 현황을 확인하고 후견인의 사무지도, 심리적 조정조치 등의 후속조치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선후견인을 선임한 사건은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없고 후견인을 맡을 친족이 없거나 후견감독 과정에서 후견인의 복리 침해가 확인되거나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복리에 관한 후견감독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에 국선후견인을 선임한 사건은 정기감독 3팀에서 별도로 정기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기감독 3팀에서도 정기감독 1, 2팀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후견감독부수사건의 이행결과와 이행의 적정 여부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특정후견감독 사건의 경우 전담자를 두어 관리하는데, 특정후견인이 제출하는 후견사무보고서와 특정후견감독인[197]이 제출하는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전수 조사하고 특정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197)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통해 특정후견이 개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45]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인력 재배치[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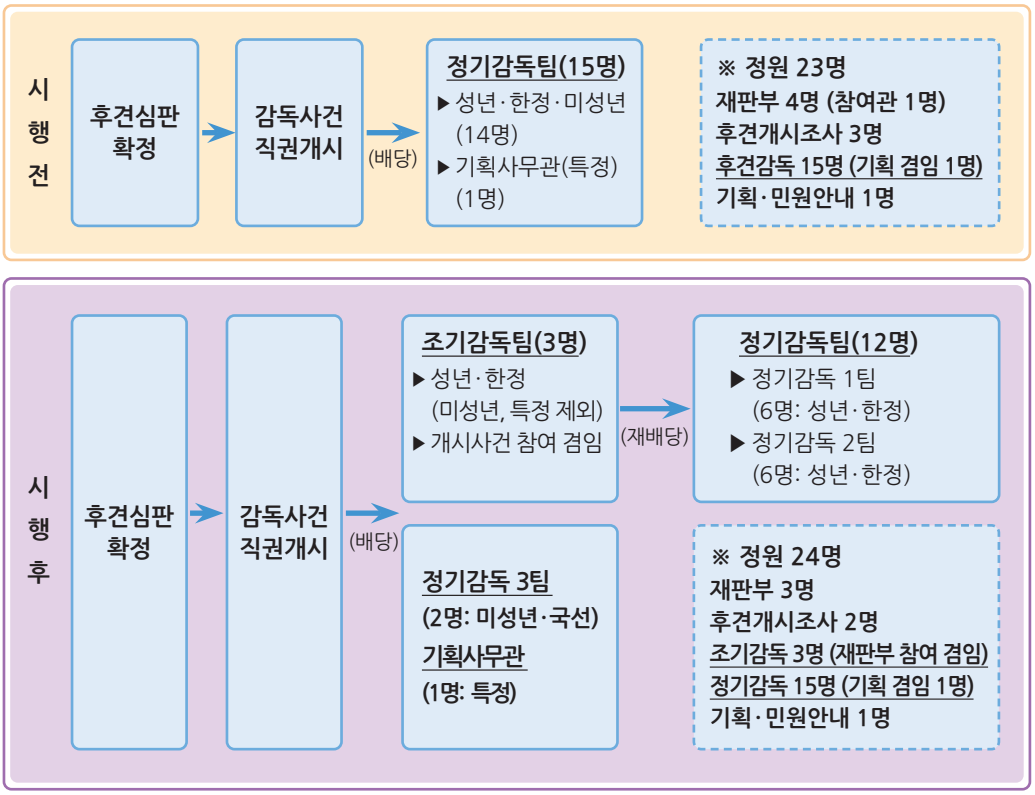

나. 사건처리절차 정비

후견감독 인력을 재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이사건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조기감독 및 정기감독의 업무절차를 정비하는 등 사건처리절차를 정비하였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이거나 사건본인의 순재산이 합계 5,000만 원 미만인 사건(다만, 사건본인에게 '기초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재판장이 간이감독사건으로 지정하는 사건은 간이감독사건으로 분류하여 후견감독사건의 사건관리 등급을 구분하였다. 간이감독사건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수입이 적어 재산감독의 필요성이 적고 후견감독보고서 작성보다는 신상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간이사건 감독보고

198) 서울가정법원 내부보고서 및 전현덕,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온율 엮음),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나남 (2022), 368-372, 381-390.

서[199]는 재산목록표 및 수입 · 지출내역 등의 별지 작성을 생략하고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사무보고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신상심층조사를 하는 경우 특이사항이 있는 때에만 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상심층위원의 보고서에 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기감독담당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친족후견인 교육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시, 기간 내 재산목록보고서 등 서류 제출 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당사자 사망 등 종료사유 발생 시 등 조기감독담당관의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기감독 후견감독보고서 양식[200]을 개정하여 조기감독 업무절차를 정비하였다.

정기감독담당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건관리부 작성 시, 기간 내 후견사무보고서 등 서류 제출 시, 제출예정일 도과 시, 제출요구서 송달불능 시, 당사자 사망 등 종료사유 발생 시 등 정기감독담당관의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감독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일반사건, 간이사건, 불능사건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등 정기감독 업무절차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비된 정기감독 업무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월 단위 정기감독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월 단위로 후견감독예정일[201]이 도래하는 사건을 모두 특정하여 예정일 전달에 제출요구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요구서를 재발송하여 제출을 독촉하며, 제출된 후견사무보고서를 토대로 예정일 익월에 전수 후견감독조사를 실시하고 후견감독조사보고서[202]를 작성한 후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 후견감독 관련 통계양식 마련

그리고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후견감독관별 사건 현황, 조기감독 및 정기감독 사건처리 현황과 관련된 통계양식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를 운영한 결과, 전체 후견감독사건 중 미감독사건[203]의 비율이 2021. 7. 1. 기준 55.12%(전체 후견감독사건 4,029건 중 미감

199) 별첨1. 1. 나. 2)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간이사건) 참조.
200) 별첨1. 1. 가. 1)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성년후견, 한정후견) 참조.
201) 후견개시심판에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날을 의미한다.
202) 별첨1. 1. 나. 1)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일반사건) 참조.

독사건 2,221건)에서 2022. 6. 30. 기준 9.04%(전체 후견감독사건 4,114건 중 미감독사건 372건)로 감소하는 등 장기간 누적되었던 미감독사건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4. 후견과 설치

서울가정법원은 2024. 1. 1. 사무국에 후견과를 독자적인 과로 신설하였다.[204)205)] 인구의 고령화 및 장애인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후견 개시, 감독 및 부수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후견인 교육, 외부기관 연계 등 후견 관련 업무와 후견행정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후견과에서는 후견 개시, 후견감독, 후견부수 사건의 재판사무, 사건본인의 의사청취, 후견유형 및 후견인 선임을 위한 가사조사, 후견인 감독 및 교육,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후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며,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

203) 후견감독예정일이 지났으나 후견감독담당관의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이 마쳐지지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

20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5의1, 별표 5의2를 개정(2023. 11. 29. 대법원규칙 제3114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하여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를 설치하고, 후견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후견과, 조사과, 가족관계등록과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비고
후견과	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 후견감독, 후견등기,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	후견과를 두지 않은 가정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한다.

205) 이하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설치에 관한 내용은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11-15 참조.

제2절 현행 후견감독실무의 문제점

I.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문제

1. 인력 수의 부족

후견감독사건은 후견종료심판이 있거나 피후견인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으므로 매년 법원의 후견감독사건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법원의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원공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206]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 12. 31. 대략적인 후견감독사건 수[207]는 4,595건이고, 18명의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명이 약 255건의 후견감독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화하여 위 사건들에 대하여 매년 정기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1명이 매월 약 21~22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가정법원의 경우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예컨대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4명의 법원공무원이 1,448건의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계산하면 1명이 매월 약 30~31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후견사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울산가정법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2명의 법원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753건의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계산하면 1명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매월 약 31~32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감독 절차와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외부 전문가 위원, 국선후견인 등 후견감독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의 경우 1명의 법원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206) 각 법원에서 담당자는 대부분 후견감독업무를 다른 비송업무, 가사업무, 민사·형사 업무 등과 겸임하고 있다. 겸임사무의 내용과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담당자의 수만으로 인력 사정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몇 군데 예시를 통해 인력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7)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1. 이후의 누적 개시건수 및 종국건수를 기초로 산정한 대략적인 수치이다. 이하 같다.

261건의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단순화하여 계산하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매월 약 21~22건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경우 2명[208]의 법원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443건의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단순화하여 계산하면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매월 약 18~19건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원의 경우는 성격이 다른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견, 특히 후견감독 업무는 그중 일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위 수치보다 인력사정이 더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A, B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209]
A지원에서 근무하면서 B지원의 경우 주 1회 순회조사를 나가고 있다. 두 지원 모두 조사명령이 내려온 사안에 대하여만 감독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B지원의 경우 순회조사를 나가는 1명의 조사관이 다른 조사업무와 겸임하면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후견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 **C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후견감독사건 담당 법관과 조사관 모두 순회 근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 담당이 어렵다.

2. 사무분담 관련 문제

가. 사무분담 겸임

대부분의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 담당자는 후견감독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법관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후견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법원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겸임업무는 다른 가사비송 또는 가사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민사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영장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 등 겸임사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일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후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원과 지원에서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법원의 규모에 따라

208) 참여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참여관은 재판 참여 및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조사관은 조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9) 이하 본 절의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의 의견은 서면, 유선, 대면 인터뷰 및 각 법원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에 대한 서면조사 시 제시한 의견과 설문조사 10항(자유의견 기재)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와 겸임하기도 한다.

현재 인력 상황상 후견감독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인력구성을 하기 어려운 법원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후견감독업무는 대체적으로 처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고, 후견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후견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후견감독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 특히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와 후견감독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여러 겸임 업무 중 후견감독업무가 더 소홀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어 특유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

○ D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행정관

지급명령 사건 접수 및 진행, 가사비송 사건 접수 및 보존, 협의이혼의사 신청 사건 접수,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후견감독업무는 시급한 다른 업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급명령 사건 접수 및 진행, 비송과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는 자리에 후견감독 업무를 분담시켜 놓은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후견감독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아쉽다.

○ E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전담 인력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F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참여관

F지원은 참여관 1인이 후견개시, 감독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감독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관 중 전임으로 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고 관리를 해야 방치되는 사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조사관이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 전임으로 감독을 하기 어렵다.

○ G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조사관

후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가사조사관뿐만 아니라 후견감독 담당자를 두었지만 참여 업무를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후견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 후견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후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H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주무관

후견감독 사건은 대개 종국이 되기 어렵고 계속 누적되므로 관리해야 하는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는 혼자서 계속 담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의 경우 사실상 거의 감독이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업무분장 형태

후견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사이의 업무분담 범위는 법원마다 다르다. 일반 가사 사건의 경우 참여관이 재판 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관은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후견감독 업무는 사건 관리와 감독 조사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감독의 방식 또한 법원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법원마다 담당자 사이의 업무분장이 상이하다. 담당자별로 후견감독사건을 배당받아 후견감독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건 관리를 하는 법원도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견감독 조사명령 시행, 보고서 관리, 재판 참여 등의 업무를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후견감독 조사명령이 이루어진 사건에 한하여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이 담당하는 법원도 있다. 그런데 사건 관리와 조사가 분리되는 경우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적시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소홀해지게 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정기후견감독 조사명령을 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발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더 어렵다.

○ I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후견감독에 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후견감독 관련 업무분담이 부재한다.

○ J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후견감독사건 담당 참여관은 실질적으로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주무관이 후견인에게 후견 감독에 대한 문건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문건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관은 조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3. 보직기간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짧은 것도 후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다. 법원사무직렬 법원공무원의 경우 보직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 보직기간인 1년으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후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부족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 후견감독사건은 일반 민 ·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기존의 가사사건과도 다른 사건유형이므로, 후견감독사무 담당자들이 후견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숙지하여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기 후견감독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마다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보직이 1년마다 바뀌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K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참여관

보직이 1년마다 바뀌므로 사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면경고를 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1년이라는 보직기간은 짧다.

○ L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주무관

후견업무를 처음 접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와 상황이 해가 거듭됨에 따라 식견과 이해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후견사건은 특성상 단기적,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후견사건담당자는 후견사건을 오랜 기간 전담하여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M가정법원 주무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해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미감독되고 방치된 채 누적되는 감독사건 수가 증가하였다. 일이 없다고 생각해 서무에서는 보조업무를 주어 보조업무에 치여 주된 후견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때도 있다. 후견업무는 어느 정도의 업무 이해도와 그에 따른 융통성,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누구보다 성실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보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

○ N가정법원 주무관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과 꾸준함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인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단절과 사건 방치가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O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참여관
인구 190만의 후견사무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주무관 1인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업무를 처리한다. 기피보직으로 업무를 배울 시간도 없고 익숙해지면 떠나는 구조이다.

II. 법원별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 정도의 상이

각 법원의 감독 단계별 후견감독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의 정도는 법원별로 상이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기 및 정기 후견감독 조사명령 발령과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후견인이 제출한 사무보고서의 확인 여부, 미제출 시 후속조치, 심층후견감독의 실시 여부는 법원별로 다르다. 후견감독 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업무담당자는 후견인이 제출한 사무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감독결과에 대해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게 되고, 후견감독조사보고서가 누적되면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후견감독 조사명령의 발령과 후견감독조사보고서의 작성은 기본적인 후견감독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규모가 작은 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정기후견감독 조사명령의 발령과 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항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의 제출요구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법원과 지원의 경우 단순히 업무 수행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지원체계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층후견감독 또한 규모가 작은 법원과 지원에서는 대부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 및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후견인의 후견사무수행에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감독 사건을 성년후견감독 사건과 구분하여 감독 주기나 기준, 조사방법 등을 달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성년후견감독 사건의 경우 재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감독 주기, 감독 방법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 등 후견감독 사건의 분류 및 사건별 감독의 정도,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 교육의

실시 여부와 방법 또한 법원별로 다르다.

이처럼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파악 및 충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업무담당자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감독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후견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게 된다. 여기에 보직기간도 단기인 경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P지원(사무국 설치 지원) 조사관

P지원에서는 참여관이 후견감독을 하고 있고, 6개월마다 보직이 바뀐다.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후견감독 사건에 대하여 후견감독 조사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참여관이 접수된 문건을 체크하는 정도로 감독을 하고 있다. 후견인이 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요구서를 송달하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는다고 해서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제출요구서만 여러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 Q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Q지원은 성년후견감독은 참여관이, 미성년후견감독은 조사관이 담당하고 있고, 조사명령이 발령될 경우에만 감독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은 조사명령이 내려질 경우 확인하게 된다.

○ R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조사관

일부 사건에 대하여만 후견감독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후견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의 경우 후견감독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기 어렵다.

○ S가정법원 참여관

전국 법원에 표준화된 감독지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분기별로 이를 공유하는 비대면 회의가 있었으면 한다.

III. 통일적 업무지침 및 지원체계 부재

1. 업무지침

민법과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 제954조)'거나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4)', '가정법원은 후견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등과 같이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그리고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후견감독에 관하여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감독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의 제출요구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제7조 제6항)'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가정법원의 경우 내부 업무매뉴얼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법원과 지원에서는 내부 업무매뉴얼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원의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210]과 부산가정법원,[211] 대구가정법원[212]에서 실무편람 또는 업무지침이 발간되어 배포되었고, 많은 법원에서 위 실무편람 및 업무지침을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마다 규모나 인적 여건이 달라 위 실무편람 및 업무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후견감독업무는 기존 재판업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산관리의 적정성, 피후견인의 복리 보호,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심층감독 필요성 판단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보완하고 법원별 실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규모와 인력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통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210)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7);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 (202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 업무지침 (2025).
211)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9);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24).
212) 대구가정법원, 2025년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 (2025).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법원 간 감독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후견감독보고서의 양식도 법원마다 다르다. 법원마다 사건 구성이나 인력 사정, 지역적 특성이 달라 후견인에게 요구되는 기재 항목과 제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별로 후견감독보고서 양식이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한 최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담당자의 검토 범위와 강도가 법원마다 달라져 감독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 **T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행정관**
후견감독업무에 대한 업무인계인수나 매뉴얼 등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 자체를 파악할 기회가 부족하다.

2. 지원체계 부족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의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의 보조를 받아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 외부 전문가 위원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인에 대한 후견사무수행 안내 및 지원, 전문적인 심층감독 시행, 조정조치 및 상담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후견 지원 및 감독이 가능하고, 후견감독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감경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과 지원에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고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후견감독위원이나 심층후견감독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은 규모의 법원에서는 인력 및 전문성의 제약으로 인해 심층후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법원에서 심층후견감독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일반적 · 표면적 점검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후견인의 위법 · 부적정한 사무 처리에 대한 조기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고, 피후견인의 재산보호 · 신상보호를 위한 실질적 감독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의 위촉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후견감독 사건에서 상담의뢰 등 조정조치 활용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의 지방법원과 지원에서는 전문상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담 등을 통한 심층적 지원 및 감독 ·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후견사건에서도 법원에 따라 접근방식이나 감독 ·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선후견인의 경우도 이를 통해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사무 수행 및 법원의 감독 부담 경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국선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 및 예산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법원에서 국선후견인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실무는 가사소송법 제37조의2[213]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214]를 근거로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보수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유사하게 재판비용으로 보아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절차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선후견인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후견개시 심판문에 '국선후견인'임이 명시되지 않고, 국선후견인이 별도의 보수수여심판청구를 하여야 절차구조 결정 및 국선후견사건으로 확정되는 구조로 국선사건의 분류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선후견인 선임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선후견인 보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성년후견제도 지원 항목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전국 법원에서 집행하기에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215]

213)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214)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⑤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15)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후견감독담당관 (2025. 12. 3.) 및 대전가정법원 법관 (2025. 11. 18.) 인터뷰.

제5장

후견감독실무 개선방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

I.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개선

1. 후견감독사건 전담 인력 배치

후견감독업무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른 사건과 달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관리 · 감독을 전제로 한다. 또한 다른 재판사무와는 달리 후견적 입장에서의 적극적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에서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사건 수에 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 담당자는 다른 재판업무나 행정업무, 조사업무 등을 겸임하고 있고, 현행 구조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여 연속성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견감독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법원에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후견감독담당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후견감독담당관은 후견감독사건을 배당받아 감독사건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사건을 관리하면서 감독을 수행한다. 후견인이 제출한 사무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감독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법관에게 보고하며 감독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전문위원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심층감독, 조정조치 등을 수행하고, 나아가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후견감독담당관을 각 법원마다 배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후견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고 법원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후견감독담당관의 역할은 현재도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자가 다른 사무와 겸임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독업무가 소홀해지기 쉽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다. 또한 참여관과 조사관 등 담당자 사이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감독이 소홀해지기도 한다. 가사사건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가사조사관을 각 법원에 배치하는 것과 유사하게 후견감독업무만을 전담하는 후견감독담당관을 배치하여 감독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후견감독담당관은 법원 규모와 후견감독사건 수에 따라 차등 배치하여 법원에 따라 적정수의 후견감독담당관이 배치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규모가 큰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사건 수를 고려하여 후견감독담당관을 여러 명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는 후견감독담당관을 1명 이상 배치하며, 후견감독담당관을 1명 이상 배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원의 경우 순회근무의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후견감독사건 수가 증가되면 이를 감안하여 인력을 재배치하여 후견감독담당관 제도를 점차 확대 운영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활용 확대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1년의 보직기간으로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사무직렬 법원공무원의 경우 다른 사무의 일반적 보직기간과 같이 보직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고, 조사사무직렬 법원공무원의 경우 그보다 길기도 하나 다른 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원 근무기간 동안 담당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1년의 보직기간으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후견감독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속성 있는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후견감독을 위하여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후견업무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법원사무직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16]

2023년 법원행정처 전문직위운영위원회에서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가 개정(2023. 4. 25. 행정예규 제1341호로 개정되어 2023. 4. 25. 시행)되어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가 신설되었다. 이는 성년후견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감독업무의 전문성 요구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후견감독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단기 순환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후견감독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216)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과정 직무토의”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22).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2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3. "전문직위 전문관"이란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고 선발절차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4. "직무수행요건"이란 경력 · 교육훈련 · 전문지식 · 자격증 등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의 신설 · 지정 · 해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한다.

217)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제4항은 2024. 11. 6. 행정예규 제1407호로 개정되었다.

제9조 (필수보직기간 등) ①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6항의 직무성과 평가결과 및 소속기관 인사수급 상황, 전문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1년 마다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 관련)

■ 업무수행경력은 주사보 이상의 경력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 담당	각급 법원	5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공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가족관계 등록감독 사무	각급 법원	5~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후견감독 사무	각급 법원	5~7	- 후견감독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성년후견과정, 후견감독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후견감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2023. 7. 1. 3명, 2024. 7. 1. 추가로 3명의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여 6명의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이 후견감독담당관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후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운영은 서울가정법원 외의 여러 법원으로도 확대되어, 2025. 12. 25. 기준 서울가정법원 6명,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각 1명의 후견감독 전문직위 전문관이 배치되어 있다.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면 단기 보직기간 및 순환근무제도의 약점이 해소되고, 감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며, 전문성 제고와 실무경험 축적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218] 또한 전문화 · 체계화된 후견감독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일관된 법령 규정 해석과 후견사무지도 및 후속조치가 가능해져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장점도 있다.[219] 현재 서울가정법원 외에도 여러 법원에 전문관이 배치됨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단위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관을 두는 단기적 과제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전국적인 후견감독사무의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법원에 배치된 전문관의 인력을 해당 관할의 사건 수와 업무 규모에 맞게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전문관 배치를 더욱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확대를 통해 장기간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전문화 · 체계화된 전국 단위의 후견감독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후견사건 담당 조직 개편

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과 설치

법원조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에 둘 국과 과, 그리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후견사건을 가사과[220][221]나 민사과 또는 민형과[222]에서 후견사무를

218)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운영 후 업무처리에 있어 개선된 점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후견감독담당관에 대한 인터뷰(2025. 12. 3.)에 의하면, 전문직위 운영으로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각 후견감독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장기간 실무경험 축적으로 전문화된 후견감독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219)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은 한정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격월), 친족 성년후견인 교육(매월) 등 후견인후보자와 후견인에 대한 후견 사무 안내, 전입직원 및 업무유관자 직무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후견제도 강의 등 후견감독사무 업무처리 절차 전수, 한국후견대회 주제발표, 한국후견협회 후견관련 강의, 후견관련 매체 요청에 따른 기고, 유관기관과의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등 후견제도 관련 타 기관과의 의견 교환 및 정보 교류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20) 가정법원과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3. 11. 29. 대법원규칙 제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1, 4의2, 5의1, 5의2, 6의1, 6의2 참조].

221)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 조사과를 가사과와 별도의 과로 두고 있어 종합민원실에서 후견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견사건의 경우 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개시 재판 외에도 후견감독, 후견등기, 부수사건이 존재하여 기존 가사,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과 다른 특성이 있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후견 감독 및 교육, 외부기관 연계 등 관련 업무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독자적으로 후견과를 설치하여 사건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23] 이에 대법원은 후견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3. 11. 29. 대법원규칙 제3114호로 개정)하여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를 두고, 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 후견감독, 후견등기,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은 후견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224]

2024. 1. 1. 신설된 서울가정법원 후견과는 후견 개시, 감독, 부수 사건의 재판사무, 후견 개시를 위한 가사조사,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교육,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후견감독실무연구회, 직무연수, 외부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225]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가사과에서 후견 사건의 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 ·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조사과에서 후견 사건의 조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3. 11. 29. 대법원규칙 제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의1, 5의2 참조].

222) 가정지원과 관할구역 내에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 지원.

223)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11-15.

2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제5호의1, 2 및 대법원규칙 제3114호 개정이유 참조.

225)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15-17.

[그림 46] 서울가정법원 후견과 인력배치 현황[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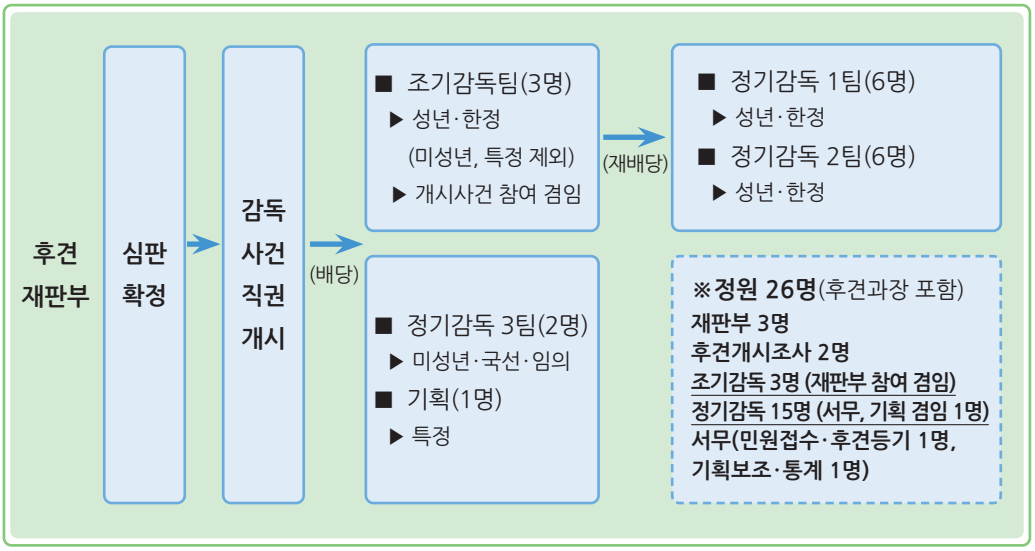

나. 후견조사과 신설안

서울가정법원은 후견과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후견사건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경우 인적 · 물적 사정이 다르므로 현행 제도 내에서 서울가정법원과 같이 후견과를 각 법원에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후견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 균질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모든 법원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모든 법원에 후견과를 설치하는 방안 대신 우선 가정법원 본원 사무국에 후견과와 유사하게 후견조사과를 설치하고 후견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여 후견사건을 집중 관리하고 후견사건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법원 간 인적 · 물적 차이로 인한 업무 편차를 줄이고 피후견인에게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227] 후견사건의 경우 법원사무직과 조사사무직이 혼용 근무하고 있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법원에 후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사무직 정원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혼용 근무가 가능한 담당부서인 후

226)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16.
227)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18-21.

견조사과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가정법원 내에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면서 각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사건 및 후견감독사건의 수를 바탕으로 최소 후견사건 전담 인력을 산정하여 후견조사과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과 그 외의 법원 사이에 인적 · 물적 편차가 큰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가정법원 본원을 중심으로 후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후견사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적 · 인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 및 전국 법원의 인적 · 물적 현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II. 통일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 마련

인력 증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후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1년도에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전체 후견감독사건 중 후견감독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2021. 7. 1. 기준 55.12%에서 2022. 6. 30. 기준 9.04%로 감소하였다. 현재 법원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관리 방식을 체계화하여 통일적이고 균질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법원별 업무편차가 줄어들 수 있고, 향후 필요 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량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법원에서 후견감독을 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법원에서 균질한 후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통일적 업무지침 마련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통일적 업무지침 마련

가. 현황 및 통일적 업무지침 마련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감독업무처리에 관하여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의 정도가 상이하고,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파악

하고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일부 가정법원의 경우 내부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원은 다른 법원의 업무매뉴얼을 각자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조사보고서 양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후견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업무편람을 만들고 감독조사보고서의 양식을 통일하여 감독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고 법원별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2025년),[228] 부산가정법원(2024년),[229] 대구가정법원(2025년)[230]이 후견사건 또는 후견감독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또는 실무편람을 발간하였는데, 위 각 업무지침 또는 실무편람 중 후견감독과 관련한 대략적인 내용을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업무편람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서울가정법원 후견 업무지침(2025)

서울가정법원 후견 업무지침은 후견센터의 실무와 성과를 정리하여 2023. 4. 발간한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231]을 이후 신설된 후견과의 실무와 개정된 규정 및 개편된 재판사무시스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후견과' 편과 '법관'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가사조사관의 업무를 다룬 '후견과' 편은 후견과 개요(I.), 기획(II.), 후견개시조사(III.), 참여업무 및 조기감독(IV.), 정기감독(성년 · 한정)(V.), 정기감독(미성년, 국선)(VI.), 정기감독(특정)(VII.), 후견등기(VIII.)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후견과]

IV. 참여업무 및 조기감독

6. 조기감독 업무처리 절차

1) 후견인 교육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3) 재산목록보고서 첨부서류

228)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 업무지침 (2025).
229)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24).
230)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 (2025).
231)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 (2023).

4)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5) 재산목록이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제출요구
6)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종결처리

V. 정기감독(성년 · 한정)

1. 정기감독 목표
1) 정기감독의 필요성
2) 후견인에 대한 견제
3) 후견인에 대한 지원

2. 정기감독 업무처리 절차
별지1 사건관리부 작성 및 감독사건 확인
별지2 제출요구서 발송
별지3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확인
별지4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 절차
1. 미감독사건(후견감독예정일 도과사건)의 경우
2. 불능보고서
별지5 후견감독사건 기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1. 신상에 관한 사항 검토
2. 재산에 관한 사항 검토
3. 관련 기록 검토
별지6 감독방향 확정
1. 일반사건
2. 특별관리사건
3. 간이사건
4. 종료보고
5. 신상심층후견감독
6. 재산심층후견감독 시행
7. 조정조치(후견인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8. 보정명령
9. 경고문
별지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일반사건) 작성

1. 보고서 상단: 사건 정보
2. 정기감독 결과
3. 사건분류
4. 향후 감독방향
5. [별지1] 재산목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
6. 유의사항

별지8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등록

별지9 결재 후 필요조치 실행

1. 감독 기일 및 결과 전산입력
2. 후견감독 종료
3. 유의사항

Ⅵ. 정기감독(미성년, 국선)

1. 미성년후견감독의 특성
2. 미성년후견감독 업무처리 절차
3. 미성년후견감독 유의사항
4. 국선후견감독의 특성
5. 국선후견감독 업무처리 절차
6. 국선후견감독 유의사항

Ⅶ. 정기감독(특정)

1. 특정후견감독 업무처리 절차
2. 특정후견감독 유의사항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기감독, 성년후견 · 한정후견 정기감독, 미성년후견 · 국선후견 정기감독, 특정후견 정기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업무처리 절차와 내용 및 유의사항, 사건관리 방법, 사건기록 및 재산목록보고서 · 후견사무보고서 검토사항, 사건유형별 감독방향, 심층후견감독 · 조정조치 시행 요건 및 절차, 후견감독 보고서 작성 요령 및 결재 절차,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절차, 후견감독 종료 시 처리 절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2024)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은 2019년에 그간의 실무 운영을 반영하여 발간한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을 개정한 것으로, 후견사건 개요(제1장), 후견인 교육(제2장), 후견개시조사(제3장), 후견감독(제4장), 후견감독 부수사건(제5장), 후견감독 관련업무(제6장), 자주하는 질문(제7장), 후견사건 관련 법률 등(제8장), 보고서 양식 등 별첨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인 제4장과 제6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4장 후견감독

1. 후견감독사건 관련 재판부 업무
 가. 직권개시된 후견감독사건
 나. 후견감독예정일이 도래된 후견감독사건
 다. 피후견인이 사망한 후견감독사건
2. 사건배당
3. 조기감독
 가. 시행과정
 나. 조기감독 목적
 다. 조기감독 절차 및 방법
 라.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마. 조사종료
4. 정기감독
 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1) 정기감독 목적
  2) 우선처리 감독 사건
  3) 정기감독 절차 및 방법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작성
  5) 조사 종료
  6)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
 나. 미성년후견
  1) 정기감독 목적

2) 우선처리 감독 사건
3) 정기감독 절차와 방법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작성
5) 조사 종료

다. 특정후견
1) 정기감독 목적
2) 정기감독 절차 및 방법
3) 특정후견감독의 특징

5. 심층후견감독
가. 심층후견감독의 대상과 분류
나. 심층후견감독조사 절차

6. 후견감독 중 조정조치
가. 조정조치 대상 및 목표
나. 조정조치 절차

7. 후견종료
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1) 후견종료 심판
2) 피후견인의 사망
3) 최종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안내
4) 종료 절차 및 방법

나. 미성년후견
1) 친권자 지정 또는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2) 미성년자의 성년 도래
3) 종료절차 및 방법

다. 특정후견
1) 특정후견기간의 만료
2) 종료절차 및 방법

제6장 후견감독 관련업무

1. 후견감독 관련 전체업무
2. 후견지원실

가. 필요성
나. 운영방법
4. 후견사건 관련 위원 위촉
가. 필요성
나. 운영방법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후견감독사건 관련 재판부 업무와 사건배당절차 소개, 조기감독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정기감독, 미성년후견 정기감독, 특정후견 정기감독의 목적과 방향, 사건기록과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방법, 감독조사 방법 및 감독보고서 작성 방법, 조사 종료 시 처리 절차,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의 대상과 업무처리 절차, 후견종료 사유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은 후견인 교육, 후견감독사무상담위원이 있는 후견지원실 운영방법 및 절차, 후견사건 관련 위원의 위촉과 내규,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3)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2025)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은 참여관과 주무관의 세부 업무 처리와 조사관의 조사 및 감독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후견사건 업무처리 절차(제1장), 조사과정(제2장),[232] 친족 후견인 교육(제3장), 기타 후견사건 관련 업무(제4장), 자주하는 질문(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후견사건 업무처리 절차
2. 후견감독사건
가. 업무처리 절차
1) 후견감독 절차안내문 송달
2)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보정명령

232) 1. 후견개시 조사, 2. 후견감독 조사, 3. 후견감독 중 조정조치, 4. 후견감독 부수사건.

3) 후견감독조사명령

4) 후견감독 예정일 입력

제2장 조사과정

2. 후견감독 조사

가. 조기감독조사

1) 필요성

2) 조기 감독 조사의 절차

3) 조기 감독 참고사항

나. 기본후견감독 조사

1) 성년 및 한정후견

가) 기본후견감독의 필요성

나) 기본후견감독 조사의 절차

다) 기본후견감독의 조사과정

라) 기본후견감독의 유의사항

2) 미성년후견

가) 미성년후견감독의 필요성

나) 미성년후견감독의 신상 조사 확인사항

다) 미성년후견감독의 재산조사 확인사항

라) 미성년후견 감독 유의사항

3) 특정후견

가) 특정후견감독의 특성

나) 특정후견감독 조사 확인사항

다) 특정후견감독 유의사항

다. 심층후견감독조사

1) 심층후견감독의 개념

2) 심층후견감독의 분류

가) 신상심층후견감독

나) 재산심층후견감독

다) 심층후견감독조사의 절차

라. 후견감독 종료

1) 후견 종료 원인
2) 후견감독사건 종료 절차
3) 재판부 인계
3. 후견감독 중 조정조치
가. 조정조치의 필요성
나. 조정조치 의뢰 절차
제4장 기타 후견사건 관련 업무
1. 후견사건 외부위원 위촉
가. 개념 및 분류
나. 외부위원 위촉절차
3. 후견실무연구회
가. 목적 및 필요성
나. 시행
제5장 자주하는 질문
1.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관련
2. 사건 진행절차 관련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후견감독사건 업무처리절차, 조기감독, 성년 및 한정후견 기본감독, 미성년후견 기본감독, 특정후견 기본감독의 단계별 유형별 감독의 필요성, 조사절차 및 조사사항, 후견감독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등 미제출 시 처리절차, 감독 시 유의사항,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의 대상과 업무처리 절차, 후견 종료 원인별 감독사건 종료 절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은 친족 후견인 교육, 후견사건 외부위원의 위촉 절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은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화하고 단계별로 조사명령문, 사건본인 면담지, 조사보고서 양식, 보정명령, 제출요구서 및 경고문 예시 등을 수록하여 업무 흐름별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 후견감독 업무편람안

위 후견사건 또는 후견감독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의 업무지침 또는 실무편람에 후견감독업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감독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법원의 사정과 업무 체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국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후견감독업무 수행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 업무지침 및 실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후견감독 업무편람에 수록할 내용과 해당 목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후견감독 업무편람 목차안

제1장 후견 및 후견감독사건 개요

1. 후견사건
   가. 후견의 의의 및 유형별 특성
   나. 진행 절차
2. 후견감독사건
   가. 후견감독의 의의 및 목적
   나. 진행 절차
   다. 업무담당자

제2장 후견인 교육

1. 개요 및 필요성
2. 후견인 후보자 교육
   가. 교육 안내
   나. 교육 절차
   다. 교육 내용
3. 후견인 교육
   가. 교육 안내
   나. 교육 절차
   다. 교육 내용
      1) 성년후견인
      2) 미성년후견인

* 후견인 교육 보정명령 기재례

* 교육참석확인서 양식

제3장 초기후견감독

1. 의의와 목적
2. 감독절차
3. 감독방법
   가. 기록 및 재산목록보고서 검토
   나. 감독조사사항
   다. 감독조사보고서 작성
   라. 재산목록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 절차
   마. 조사 종료 절차
   바. 민원안내

* 초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

제4장 정기후견감독

1. 성년후견 · 한정후견감독
   가. 의의와 목적
   나. 감독절차
   다. 감독방법
      1) 기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2) 감독조사사항
         가) 신상에 관한 사항
         나) 재산에 관한 사항
      3) 감독조사보고서 작성
      4)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 절차
      5) 조사 종료 절차
   라. 간이사건감독
      1) 간이사건 대상
      2) 감독방향 및 유의사항
2. 미성년후견감독
   가. 의의와 목적
   나. 감독절차

다. 감독방법
1) 기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2) 감독조사사항
가) 신상에 관한 사항
나) 재산에 관한 사항
3) 감독조사보고서 작성
4)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 절차
5) 조사 종료 절차
3. 특정후견감독
가. 의의와 목적
나. 감독절차 및 방법
다. 유의사항
4. 국선후견
가. 의의와 목적
나. 감독절차 및 방법
다. 유의사항
* 사건유형별 정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
제5장 심층후견감독 및 조정조치
1. 심층후견감독
가. 의의와 대상
나. 감독절차 및 방법
1) 심층후견감독조사 의뢰 및 시행
2) 심층후견감독조사사항
3)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 작성
다. 유의사항
* 감독조사의뢰서,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
2. 조정조치
가. 의의와 대상
나. 조정조치 절차 및 방법
1) 상담 의뢰

2) 조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다. 유의사항
* 심리상담지원의뢰서, 조정조치보고서 양식
제6장 후견감독 종료
1. 종료원인
2. 종료 절차 및 방법
제7장 후견감독 관련 업무
1. 외부위원 위촉 및 관련 업무
2.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후견 및 후견감독사건 개요(제1장)'에서는 후견사건의 의의와 후견유형별 특성을 소개하고, 후견사건 진행 절차를 후견개시사건 접수에서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본다. 또한 후견감독의 의의와 목적 및 필요성을 살펴본 후 후견감독사건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고, 감독업무담당자 및 담당자별 역할에 대해 개괄한다.

'후견인 교육(제2장)'에서는 후견인 교육의 의의와 실시의 필요성, 근거 법규를 살펴보고,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 후견인 교육의 안내 및 교육 절차, 교육 내용에 관하여 다룬다. 교육 내용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의 경우 후견제도 소개, 후견사건 진행 절차,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및 의무, 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후견인 교육은 후견제도와 후견감독절차 안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방법, 후견사무 수행 방법,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청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교육내용에서는 후견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후견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와 양육의 측면에서 후견의 목적과 사무가 성년후견과 다르므로, 성년후견과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다룬다. 후견인 후보자 교육 · 후견인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 기재례와 교육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교육참석 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초기후견감독(제3장)'에서는 초기후견감독의 의의와 목적, 감독절차를 살펴보고, 기록 및 재산목록보고서 검토사항, 감독조사사항, 감독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재산목록 미제출 시 처리 절차, 조사 종료 절차 등에 관하여 다룬다. 재판사무시스템 업무처리 방법을 함께 다루고, 초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233]을 첨부한다. 후견개시심판이 이

루어지고 후견감독이 시작되는 단계에 재산목록작성 방법이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법원의 허가 필요여부 등에 관한 후견인의 문의가 많으므로,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민원 안내에 참고하도록 한다.

'정기후견감독(제4장)'에서는 후견유형별로 감독의 의의와 목적, 감독절차를 살펴보고, 기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검토사항, 감독조사사항, 감독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처리 절차, 조사 종료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은 그 목적과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고, 특정후견, 국선후견의 경우의 감독절차와 방법, 유의사항을 별도로 살펴본다. 정기후견감독의 경우 사건특성에 따라 감독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간이사건의 대상과 감독방향 및 유의사항도 함께 다룬다. 재판사무시스템 업무처리 방법을 함께 다루고, 후견사건유형별 정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감독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한다.

'심층후견감독 및 조정조치(제5장)'에서는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의 의의와 대상,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의 경우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절차와 의뢰사항, 조사사항 및 조사방법을 살펴보고,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분류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감독조사의뢰서, 심층후견감독조사보고서, 심리상담지원의뢰서, 조정조치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한다.

'후견감독 종료(제6장)'에서는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원인과 종료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후견감독 종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최종 재산계산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및 후속조치, 종료감독보고서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마다 업무처리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검토한다.

'후견감독 관련 업무(제7장)'에서는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 외부위원의 위촉 및 운영 절차, 수당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33) 업무편람에 사건유형별, 감독유형별 감독조사보고서 기재례를 두어 감독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관리가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가. 예규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중 후견감독에 관한 부분은 제6 내지 8조이고, 그중 후견감독의 구체적 방식에 관한 부분은 제7조 제6항인데 이는 포괄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처리에 있어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성을 기하며 각 법원에서 업무분장 시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6조의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추가하고, 미성년후견의 경우 성년후견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그리고 후견감독의 구체적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규는 제7조 제6항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의 제출요구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하여 감독의 근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을 뿐 감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후견감독 단계별로 감독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후견감독, 정기후견감독 단계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른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재산목록,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사건, 일반사건 및 특별관리사건으로 사건을 분류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심층후견감독 조사명령 및 조정조치명령의 발령 근거와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한 의뢰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심층후견감독과 조정조치를 활용하도록 하고, 후견감독 종료 시 종료감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감독 종료 시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도 마련한다.

나. 예규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34]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신 설)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인 등 후보자에 대하여 후견인 등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 내지 3항의 교육은 후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 ---------. 1. 후견제도와 후견감독절차 2.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방법 3. 후견사무 수행 방법 4.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청구 방법 6. 미성년후견의 경우 미성년자의 심리적·정서적 특징을 고려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양육기술에 대한 이해
제7조 (후견감독) ① ~ ⑤ (생 략)	제7조 (후견감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전산양식 C2603]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전산양식 C2604], 후견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5]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6]의 제출요구[전산양식 C2607]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 (초기후견감독) ①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담당 판사는 후견감독 조사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②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제출요구, 면담, 심문 등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 (정기후견감독)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인 등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기간마다 제출한 후견(감독)사무보고서와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② 후견인 등이 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제출요구, 면담, 심문 등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판부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감독절차나 방법, 감독주기 등을 달리하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 (심층후견감독 및 조정조치) ① 담당 판사는 후견감독 계속 중에 심층적인 조사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층후견감독 조사명령, 조정조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또는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에게 후견감독신상·재산조사업무 또는 심리상담업무를 의뢰하고 조사보고서 또는 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5 (후견감독 종료)** ① 후견종료심판이 확정되거나 후견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재판부는 후견인 등에게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최종 재산계산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후견인 등이 제출한 최종 재산계산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종료감독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한다. ③ 재판부는 최종 재산계산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종국한다. 필요한 경우 심층후견감독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① ---------- 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	② ----------

현 행	개 정 안
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다.

III. 감독업무 지원 전문가 활용 방안

1.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

후견 감독 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감독의 실질화를 위해 요구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후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하면서 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견사무상담위원은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지원과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후견인의 재산목록,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등 기본적 후견사무 보고업무를 돕고, 절차적 사항에 대한 민원 상담 등을 통해 후견감독업무 담당자가 실체적 감독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문후견감독위원은 회계, 세무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산관계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재산관리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심층후견감독위원은 사회복지, 회계, 세무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후견인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후견감독심층조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은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에게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신상보호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운영 방안

후견사무 및 후견감독사무를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법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는 방안은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감독의 실질화·전문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법원에 따라 후견감독 사건 수와 성격, 인력 구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우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을 모두 위촉하여 사건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 상담 및 절차적 지원은 후견사무상담위원을 활용하고, 재산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건 등은 전문후견감독위원 또는 심층후견감독위원을 활용하며, 미성년자와 같이 피후견인 등에게 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는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을 활용하여 역할 분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을 모두 위촉하기 어려운 중간 규모의 지원에서는 후견사무상담위원과 전문후견감독위원을, 후견감독사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지원의 경우는 후견사무상담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기본적인 감독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재산관리 감독이나 심층적 감독, 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위촉된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을 함께 활용하거나 순회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규모별로 차등화된 운영 모델을 도입하여 각 법원의 인적·물적 사정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후견감독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후견감독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법원별 후견감독 수준의 편차를 줄이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3.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과 같이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 인력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와 활용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원별 운영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후견감독실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가사소송규칙에 다음과 같이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의 자격과 위촉, 임무, 수당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234]

[표 35] 감독업무 보조 전문인력 활용 관련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7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의 자격과 임무 및 수당) ①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이하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후견사무상담위원: 법률, 회계,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후견사무에 대한 이해

234)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 인력의 활용은 법원의 감독권을 전제로 하는 보조적 제도 개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의 개정까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적 운영,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개정안]
제○조 (후견사무상담위원등)
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은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이하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의 자격, 임무, 수당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도가 높은 사람 2.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법률, 회계, 세무,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학, 청소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담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법원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② 후견사무상담위원은 후견인의 재산목록,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등 후견사무 보고업무를 돕고,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지원과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후견감독위원은 후견감독심층조사 명령에 따라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하 “후견감독사건 담당자”라 한다)이 의뢰한 후견감독신상·재산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심층후견감독위원은 후견감독심층조사 명령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담당자가 의뢰한 후견감독신상·재산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⑤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은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담당자가 의뢰한 심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⑥ 후견사무상담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현 행	개 정 안
	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⑦ 후견사무상담위원등의 수당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무의 난이, 직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IV. 국선후견인 제도 정비

1.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국선후견인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배정된 예산이 적어 많은 법원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절차구조 규정을 적용하여 국선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관리와 업무처리 방식,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선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선후견인 선임과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법에는 국선후견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다만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구조 규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이 있어,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보수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절차구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를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55조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이 아닌 국고에서 후견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관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2025년 개정안'이라 한다)은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5][236]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에 국선후견인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사건 분류 및 관리,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국선후견인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36] 국선후견인 선임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237]	제45조의8 (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후견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

235) 제84조 (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하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이라 한다)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36) 서영교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211325 (2025. 7. 7.) [계류 중], 6, 51.

현 행	개 정 안
	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하 “국선후견인등”이라 한다)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국선후견인등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표 37] 국선후견인 선임 관련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7 (국선후견인등의 자격, 선임 및 취소) ① 국선후견인등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의 신상과 재산상황 및 관리의 필요성, 후견사무의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국선후견인등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국선후견인등이 다음 각 호

237)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제45조의9는 제45조의10으로 이동.

현 행	개 정 안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선후견인등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선후견인등이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선후견인등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되는 상황에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국선후견인등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38조의8 (국선후견인등의 보수 및 비용) ① 국선후견인등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 수행에 관하여 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선후견인등은 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무수행 기간, 수행한 사무의 내용, 청구하는 보수 및 비용의 액수 및 산정근거를 기재한 보수 및 비용 신청서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선후견인등에 대한 보수는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의 범위, 난이, 수행기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국선후견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의 지급 기준과 상한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2. 국선후견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현행 실무상 국선후견인 제도는 2018년도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성년후견제도 지원 항목으로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당시 후견인에게 지급할 적정 보수 수준은 2017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공공후견인에 대한 매월 활동비가 15만 원이고, 소년 · 가정 · 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기본 보수가 매건 20만 원인 점, 후견감독 보조인 1회기 당 수당이 10만 원이며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출장 여부 등에 따라 1일 20만 원 한도로 증액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예상하였다.[238] 이후 2022년도에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절차구조 활성화 항목으로 7,200만 원, 저소득층 후견감독인 등 보수지원 항목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239]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의 연도별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건수 및 월 보수액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예산 규모는 이를 전국 법원에서 확대하여 집행할 경우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의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2021. 12. 31. 기준 서울가정법원의 국선후견인 선임사건은 총 76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억 8,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240] 이는 서울가정법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국 법원에 국선후견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기존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제도의 운영이 곤란할 것이 예상된다.

참고로 2025년 개정안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면서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활동비용 단가를 참고하여 각 월 20만 원으로 가정하고, 신규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의 경우 첫 해에는 6개월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 보수에 연간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추정 선임건수[241]를 곱하여 예상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를 산출하였다.[242]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국선후견인

238) “후견인 보수 절차구조에 관한 시범실시 계획(안)”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8. 1.), 11-12.
239) “국선후견인 운영 및 제도개선 검토(안)” (내부보고서), 서울가정법원 (2022. 1).
240) “국선후견인 운영 및 제도개선 검토(안)” (내부보고서), 서울가정법원 (2022. 1).
241) 국선후견인 선임건수는 2019~2023년 연간 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 사건 선임건수와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 선임건수에 추정빈곤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선후견감독인 선임건수는 국선후견인 선임건수에 후견사건 중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242) 국회예산정책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L5L0T4S1S0Q1R0Q2Q9M3M5K6L6K1 (2025. 12. 31. 확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 및 심판절차비용[243] 추계액은 2028년 18억 5,000만 원, 2032년 160억 9,000만 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42억 9,100만 원(연평균 88억 4,000만 원)이다.[244]

많은 법원에서 근거 규정뿐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후견사건은 그 성질상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법원별 국선후견인 선임 사건 수와 사건 유형, 평균 후견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실무의 보수액은 제도 도입 초기의 보수액과 동일하고 후견업무의 내용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보수액 산정에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선후견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수액에 관하여도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건 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현행 재판사무시스템에는 국선후견 관련 메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선후견인 선임에 대한 업무 안내를 별도로 하여야 하고, 국선후견인이 별도의 보수수여청구를 하여야만 절차구조결정이 이루어지며, 보수처리과정도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등 사건 관리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법규 개정과 함께 재판사무시스템에 국선후견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국선후견인 선임 사건을 일반 사건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지급 절차 등을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등 사건 관리와 업무처리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선후견인 사건의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243) 심판절차비용은 신규 국선후견인의 수에 1건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244) 국회예산정책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L5L0T4S1S0Q1R0Q2Q9M3M5K6L6K1 (2025. 12. 31. 확인).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I. 논의의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가정법원은 후견센터나 후견과 설치, 후견사건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과 인적 기반을 정비하여 후견감독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 사건 규모와 인력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고, 전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후견사건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사건 단계별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소규모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축적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할 외부 전문가 위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법원 규모에 따른 구조적 편차는 후견감독의 처리 방식과 감독 수준의 차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원 간 감독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 법원의 내부 운영을 개선하는 방식만으로는 후견감독업무의 편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도적 정비 차원의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관할 체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본원에서 지원의 후견감독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 지원하는 방안, 본원 단위 내지 광역 단위로 후견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후견감독업무를 담당 ·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관할 규정을 개정하여 후견감독업무를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245]

245)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후견감독사무를 현행과 같이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후견감독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독일이나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처럼 후견청과 같은 별도의 관청이나 외부 기관에 후견감독기능의 일부를 이관하거나 위탁하고 법원은 재판 사항에 관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207-230 참조], 후견감독기능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후견 법제에 관한 입법적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은 가정법원을 최종 감독기관으로 상정하고 있고, 본 보고서는 현행 법제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II. 각 방안에 관한 검토

1. 본원에서 지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 · 지원하는 방안

가사소송법상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 관할로 되어 있어 지원에서 개시심판이 이루어진 후견의 감독은 지원에서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화 ·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후견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원이 많으므로, 지원에서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본원에서 지원의 감독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견해이다. 본원에서는 후견인 후보자 및 후견인 교육 실시, 후견사무 관련 기본적 상담 제공, 후견감독업무 관련 교육 및 자문, 표준화된 서식 및 업무지침 제공 등으로 지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하고, 본원에서 위촉한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을 지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후견감독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후견사무전담기구 설치 방안

본원 단위 내지 광역 단위로 후견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 이른바 후견센터를 설치하여 후견감독업무를 담당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후견감독사무는 기존 재판사무와 다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사건 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법원 및 지원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후견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후견감독업무를 담당 ·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법원 규모와 인력, 후견감독사건 수를 고려할 때 법원마다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본원 내지 광역 단위로 후견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수월해지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감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별 후견감독 업무 편차 완화와 전국적으로 균질한 감독의 질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방안은 현행 가사소송법상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고려하여 현행 법규 체계 내에서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감독과 처분을 위한

기초 조사와 분석, 전문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센터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신상 및 후견사무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을 배치하고, 위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이 법원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른 후견감독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각 법원에서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46] 특히 후견감독사건 중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 심층적인 조사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 장기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 관한 전문적 · 심층적 조사를 통해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후견인에 대한 후견사무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후견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문가후견인과 국선후견인 후보자 선정, 후견사무상담위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심층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심리상담위원 등의 위촉과 관리를 하여 각 법원에서 외부 전문 인력과 자원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후견센터에서 이들 인력을 관리하는 경우 소규모 법원과 지원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후견센터의 설치 단위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단위나 고등법원 관할 권역 단위인 광역 단위를 상정할 수 있는데, 본원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 후견인과 사건본인의 사법접근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이더라도 그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법원별로 차이가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 전담 인력과 조직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광역 단위로 후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법접근성이 떨어지고 본원 단위에 비해 재판부와의 소통과 협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성이 집중되고 업무의 표준화와 균질화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관할 집중 방안

현행 가사소송법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여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조정하여 가정법원 본원이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견해이다.[247] 장기간 누적되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 · 감

246)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견사무감독을 위한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후견센터에 감독과 처분을 위한 조사를 위탁하고 후견센터로부터 조사보고서를 받는 것은 현행 법령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하여야 하는 후견감독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규모 법원의 구조적, 인적 한계가 지속되는 한 후견감독업무에 대한 보조나 지원 방안만으로는 감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 본원으로 집중하면, 가정법원 본원이 전문화된 인력과 일정한 사건 규모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어 후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4. 검토

지원에서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본원에서 지원의 감독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관할 규정을 준수하고 피후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서 감독이 이루어져 피후견인에게 사법접근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원이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본원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원에서 지원의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후견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후견감독업무를 담당 ·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조직 차원에서 후견감독업무의 표준화와 균질화에 기여할 수 있고, 현행 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부담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감독 업무를 조사 업무와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후견인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심층감독조사나 조정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파악하여 심층감독조사와 조정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전 과정을 감독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재판부에서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판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절차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전담기구에서 감독조사를 실시하고 후견인 교육이나 전문 인력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각 법원에도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전체적인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면 후견감독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궁극적으

247) 이광우,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검토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10. 25.), 86.

로는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변경하여 가정법원 본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후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견개시 사건의 관할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므로, 후견개시 가정법원에서 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사법접근성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후견개시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의 후견감독은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 및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에서 후견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을 후견개시심판이 이루어진 가정법원 본원 관할로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접근성을 크게 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II.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1. 현행 가사소송법상 후견감독사건의 관할

가사소송법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여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항정하고 있다.[248] 이는 2017. 10. 31. 법률 제149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부터 지속적으로 후견사무를 장기간 관찰하면서 후견감독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249]

2. 기존 가사소송법 개정안

2018년 정부가 제20대 국회에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2018년 개정안'이라 한다)[250]에서는 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248)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의 2.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 ·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49) 사법지원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및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후견에 관한 사건 관할항정 · 관할변경–" (코트넷 2018. 5. 1. 게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었다.[251] 이에 따르면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은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이 된다. 2018년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2년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2022년 개정안'이라 한다)[252]을 새로 제출하였는데, 2022년 개정안에서는 2018년 개정안과 달리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현행 가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으로 정하였다.[253] 2025년 개정안 또한 현행 가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254][255]

---

250) 정부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268 (2018. 3. 2.) [임기만료폐기], 44.

251)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1조 (관할 등)
① 별표 2 가목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에 관한 사건(이하 "후견에 관한 사건"이라 한다)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결정, 특정후견의 결정, 미성년후견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본원을 말한다)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2항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본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2) 정부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118198 (2022. 11. 10.) [임기만료폐기], 47-48.

253)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0조 (관할 등)
①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가목 · 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결정, 같은 호 마목 · 바목 · 서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및 미성년후견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결정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해당 결정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을 말한다)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2.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피후견인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4)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0조 (관할 등)
①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가목 · 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결정, 같은 호 마목 · 바목 · 서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및 미성년후견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결정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해당 결정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을 말한다)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3. 가사소송법 개정안

2025년 개정안은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현행 가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 본원으로 하여 본원 단위에서 후견감독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에 관한 가사소송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38] 후견감독사건 관할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 (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 (생 략) 1의 2.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 ·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2. ~ 8. (생 략)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44조 (관할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 2. ---------- ---------- ---------- ---------- ---------- ---------- ---------- ---------- 가정법원 본원(---------- ---------- 가정법원 본원) 2. ~ 8. (현행과 같음) ② ----------

으로 제2항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2.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피후견인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5) 서영교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211325 (2025. 7. 7.) [계류 중], 48-49.

현 행	개 정 안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 ---------- ---------- ---- 가정법원 본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결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후견사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가정법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후견감독사건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원의 업무 부담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인적 · 물적 여건이 이에 상응하여 즉각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소규모 법원에서는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원별로 감독의 정도와 처리 방식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을 조사 ·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후견감독업무는 사건의 장기성, 직권 심리의 필요성,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결합된 복합적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소송 사건의 처리 방식으로는 운영하기 어렵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필요한데, 인적 운용 측면에서는 후견감독사건 수와 업무부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겸임 구조 및 단기 보직기간이 감독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차 운영 측면에서는 법원별로 초기감독 · 정기감독 · 심층감독 등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지침과 보고서 양식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 국선후견인과 같은 지원체계가 법원별로 다른 점 등이 실무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 실무 개선이 가능한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제도 내 개선방안으로는 사건 수요와 업무 특성에 상응하는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후견감독사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직위 제도가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면 담당자의 장기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 직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이루어지며 전문화된 감독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 간 감독역량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후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감독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원별 절차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업무지침과 조

사보고서 양식의 정비, 예규 개정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화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이 되며, 감독이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견감독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제도화하여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 규정과 예산 확보, 사건 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행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가정법원 본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후견감독사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현실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감독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관할과 업무 수행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 수준을 안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 간 감독의 편차를 줄여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 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편람 (2025)

대한변호사협회,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친족 2](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처리 실무 (2015)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9)

_____,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2024년 개정판) (2024)

사단법인 온율(엮),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나남 (202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1)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 (2017)

_____,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업무지침 (2023)

_____, 서울가정법원 후견 업무지침 (2025)

소은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4)

윤진수 · 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2013)

【논문】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2)

박인환,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제70권 제3호 (2021. 6.)

【보고서 및 발표문, 기타자료】

박정기, “전문가 후견인 현황 및 충실화 방안”,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박종국, “국선후견사건 현황 및 후견감독 과제”,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사법연수원, “후견사건 실무”, 2025년 가사재판실무 연수일정표 및 연수자료 (코트넷 2025. 4. 9. 게시)
사법지원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및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후견에 관한 사건 관할항정 · 관할변경–” (코트넷 2018. 5. 1. 게시)
법원행정처, “후견감독 담당자 연수과정 직무토의” (내부보고서) (2022)
_____, “후견인 보수 절차구조에 관한 시범실시 계획(안)” (2018. 1.)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 운영 및 제도개선 검토(안)” (내부보고서) (2022. 1.)
이광우,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검토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이종문, “미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후견인 감독 기관 및 방법”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8)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 2018년 후견감독실무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18. 7. 20.)
장은영, “미국의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교육양성 실태 및 후견사무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 (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
제철웅, “노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신탁기관”, 제4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5. 11. 18.)
전현덕, “후견과 신설배경과 확대방안”, 2024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서울가정법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2024. 9. 6.)

【인터넷 자료】

대법원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scourtkorea〉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2. 국외문헌

【논문】

Sally Balch Hurme & Diane Robinson, “What’s Working in Guardianship Monitoring: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72 Syracuse L. REV. 291 (2022)
東京家庭裁判所 後見センター, “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について”, 後見センターレポート 第22号 (2020)

【보고서, 발표문 및 기타자료】

Jim Berchtold, “Guardianship Data Reform”, Justice in Aging (2024)

Master Plan for Aging Council, “New York State Master Plan for Aging: Final Report”, New York State (2025)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Beyond Guardianship: Toward Alternatives That Promote Greater Self-Determination” (2018)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家庭局,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令和 6年 1月 ～ 12月―” (2025)

【인터넷 자료】

Minnesota Judicial Branch, https://mncourts.gov/help-topics/conservatorship/audit-programs (2026. 3. 20. 확인)

_____, https://mncourts.gov/help-topics/mymnconservator (2026. 3. 20. 확인)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s://www.ncsc.org/our-centers-projects/national-open-court-data-standards (2025. 12. 31. 확인)

Times Union, https://www.timesunion.com/news/article/ny-courts-move-increase-oversight-troubled-19901076.php (2025. 12. 31. 확인)

U. S.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elderjustice/guardianship-key-concepts-and-resources (2025. 12. 31. 확인)

地域後見推進プロジェクト, https://kouken-pj.org/about/current-status (2026. 1. 17. 확인)

각 법원 후견감독보고서 양식

1. 서울가정법원

가. 조기감독

1)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성년후견, 한정후견)

<table>
<tr><th colspan="6">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성년·한정후견)</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 colspan="2">50단독</td></tr>
<tr><td>작성기준일</td><td colspan="2">2021. 5. 31.</td><td>담당감독관</td><td colspan="2">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1. 8. 31.</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 colspan="2">2022. 8. 31.</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 colspan="2">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td><td colspan="2">김00 (60세, 처)
010-1234-5678</td><td colspan="2"></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5">(청구목적, 피후견인 상태, 요양현황, 친족간 갈등 유무, 부수사건 등)</td></tr>
<tr><td>재산
내역</td><td colspan="5">☐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음 ☐ 재산 없음
☐ 개시사건 재산목록 대비 재산목록보고의 중대한 변동(횡령, 은닉 등) 있음
* 변동사유:</td></tr>
<tr><td rowspan="2">사건
분류</td><td>분류
기준</td><td colspan="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사건본인의 순재산이 합계 5,000만 원 미만인 사건
(단, 사건본인에게 ‘기초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관리
의견</td><td colspan="4">☐ 간이 감독 ☐ 일반 감독</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재 산 목 록 표 (기준일자: 2021. 00. 00.)

[비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자산]

* 계좌/증권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기재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예·적금			
보험			
증권			
보증금반환채권			
현금			
대여금 등 채권			
적극재산 합계			

담보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 등			
소극재산 합계			
금융자산 총액			

[예상수입 및 지출계획]

항 목	연간금액(백만 원)	비 고
수 입 (a)		
지 출 (b)		
합 계 (a - b)		

2)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종료사건)

<table>
<tr><td colspan="5">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종료사건)</td></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종료사유
발생일</td><td colspan="2">2021. 7. 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td><td colspan="2">김00 (60세, 처)</td><td></td></tr>
<tr><td>재산관련
감독관 의견</td><td colspan="4">간이사건으로 별도의견작성 불요</td></tr>
<tr><td>종합의견</td><td colspan="4">①</td></tr>
</table>

3) 조기후견감독 보고서(미성년)

<table>
<tr><th colspan="6">조기후견감독 보고서 (미성년)</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미성년후견</td><td>재판부</td><td colspan="2">50단독</td></tr>
<tr><td>작성기준일</td><td colspan="2">2021. 5. 31.</td><td>담당감독관</td><td colspan="2">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1. 8. 31.</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 colspan="2">2022. 8. 31.</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 colspan="2">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12세)
OO초등학교 5학년</td><td colspan="2">김00 (60세, 조모)
010-1234-5678</td><td colspan="2"></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5">(청구목적, 피후견인 상태, 면접교섭 갈등 유무, 부수사건 등)</td></tr>
<tr><td rowspan="2">신상
보호</td><td>신상심층조사</td><td colspan="4">☐ 시행 (시행일:)
☐ 미시행 (사유:)</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재산
내역</td><td>☐ 관리재산 없음</td><td colspan="4">☐ 사건본인의 순재산이 합계 5,000만 원 미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td></tr>
<tr><td>☐ 관리재산 있음</td><td colspan="4">☐ 별지 재산목록표 기재와 같음
☐ 상속, 보험금 수령 등 재산 변동 예정</td></tr>
<tr><td>☐ 기타</td><td colspan="4"></td></tr>
<tr><td>관리
의견</td><td colspan="2">☐ 간이 감독(신상 위주)</td><td colspan="2">☐ 일반 감독</td><td>☐ 특별 감독(개월)</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나. 정기감독

1)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일반사건)

<table>
<tr><th colspan="4">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일반사건)</th></tr>
<tr><td>사건번호</td><td>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감독대상기간</td><td>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2021. 7. 10. (기간도과 제출)</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d>부수사건</td></tr>
<tr><td colspan="2">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td><td>김00 (60세, 처)
010-1234-5678</td><td></td><td>☐ 없음
☐ 이행보고서 제출
☐ 이행보고서 미제출
(제출요구)</td></tr>
<tr><td colspan="4">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신상보호
변동</td><td colspan="2">☐ 없음
☐ 있음 (별지 2 참조)</td></tr>
<tr><td>신상보호
적절성</td><td colspan="2">☐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별지 2 참조)</td></tr>
<tr><td rowspan="2">재산감독</td><td>재산목록
변동</td><td colspan="2">☐ 없음
☐ 있음 (별지 1 참조)</td></tr>
<tr><td>재산관리
적절성</td><td colspan="2">☐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별지 2 참조)</td></tr>
<tr><td rowspan="2">사건분류</td><td>관리 의견</td><td colspan="2">☐ 일반 감독
☐ 간이 감독 (☐ 간이보고서 ☐ 신상심층조사, 주기: 2년)</td></tr>
<tr><td>변동 사유</td><td colspan="2">간이사건 분류기준 ( )에 해당함</td></tr>
<tr><td colspan="2">향후 감독방향</td><td colspan="2">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td></tr>
</table>

[별지1] 재 산 목 록 표 (기준일자: 2021. 00. 00.)

[비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부동산			
자동차 등			

* 직전년도 비금융자산 비교	□ 변동 있음 □ 변동 없음

[금융자산]

* 계좌/증권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기재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예·적금			
보험			
증권			
보증금반환채권			
현금			
대여금 등 채권			
적극재산 합계			

담보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 등			
소극재산 합계			
**금융자산 총액			

[예상수입 및 지출계획]

항 목	연간금액(백만 원)	비 고
수 입 (a)		
지 출 (b)		
***합 계 (a - b)		

[재산관리 평가]

****직전년도 금융자산 총액		***합계 (a - b)		**금융자산 총액
	+(-)		=	

※ 평가기준: 위 **금융자산 총액이 금융자산 항목의 **금융자산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단, 직전년도 비금융자산의 변동이 없을 때)

[별지2] 감독관 의견 (상세)

신상감독	4항목 예시 (거소지변동, 건강상태, 간호적절성, 향후 후견계획)
재산감독	3항목 예시 (수입·지출 적절성, 금융자산 변동의 적절성, 부수사건)

2)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간이사건)

<table>
<tr><th colspan="5">후견감독 조사보고서 (간이사건)</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감독대상기간</td><td colspan="2">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감독방법</td><td colspan="2">☐ 보고서제출(2021. 7. 10.)
☐ 전화통화
☐ 기타(　　)</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td><td colspan="2">김00 (60세, 처)
010-1234-5678</td><td></td></tr>
<tr><td colspan="5">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신상보호
변동</td><td colspan="3">☐ 없음
☐ 있음 (사유: 거소지변동, 건강상태, 후견인상태 등)</td></tr>
<tr><td>신상보호
적절성</td><td colspan="3">☐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후견인방치·학대, 요양부실, 무관심 등)</td></tr>
<tr><td rowspan="2">재산감독</td><td>중대한
재산변동</td><td colspan="3">☐ 없음
☐ 있음 (사유: 순재산 현저히 감소, 부동산 매각 등)</td></tr>
<tr><td>재산관리
적절성</td><td colspan="3">☐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수입·지출 부적절, 재산이탈, 무관심 등)</td></tr>
<tr><td rowspan="2">사건분류</td><td>관리 의견</td><td colspan="3">☐ 간이 감독 (☐ 간이보고서　☐ 신상심층조사, 주기: 2년)
☐ 일반 감독</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3">(분류기준 미충족 사유 기재)</td></tr>
<tr><td colspan="2">향후 감독방향</td><td colspan="3">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td></tr>
</table>

3)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성년후견 불능사건)

<table>
<tr><th colspan="4">후견감독 조사보고서 (불능사건)</th></tr>
<tr><td>사건번호</td><td>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감독대상기간</td><td>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 예정일</td><td colspan="2">2021. 7. 10.</td><td>차회 감독예정일
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td><td>김00 (60세, 처)
010-1234-5678</td><td></td></tr>
<tr><td colspan="4">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불능 사유</td><td colspan="3">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제출 예정일로부터 4개월 도과)</td></tr>
<tr><td>감독 경과</td><td colspan="3">☐ 제출요구서 송부
* 1회(일반): ☐ 송달
* 2회(독촉): ☐ 송달

☐ 제출요구서 송달불능/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후속조치
* 전화 1회(날짜:): ☐ 수신
* 전화 2회(날짜:): ☐ 수신

☐ 통화불능 후속조치
* 문자안내(날짜:)

☐ 주소조회 (☐ 주소동일 ☐ 주소변경)

☐ 문자안내 무대응 후속조치
* 후견감독기일(날짜:): ☐ 불출석</td></tr>
<tr><td>감독관 의견</td><td colspan="3"></td></tr>
</table>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미성년후견 일반사건)

<table>
<tr><th colspan="5">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일반사건)</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미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감독대상기간</td><td colspan="2">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1. 7. 10. (기간도과 제출)</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d>부수사건</td></tr>
<tr><td colspan="2">김00 (12세)
OO초등학교 5학년</td><td>김00 (60세, 조모)
010-1234-5678</td><td></td><td>☐ 없음
☐ 이행보고서 제출
☐ 이행보고서
미제출
(제출요구)</td></tr>
<tr><td colspan="5">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
(별지 1 참조)</td><td>신상보호
변동</td><td colspan="3">☐ 없음
☐ 있음</td></tr>
<tr><td>신상보호
적절성</td><td colspan="3">☐ 문제 없음
☐ 문제 있음</td></tr>
<tr><td rowspan="2">재산감독
(별지 2 참조)</td><td>재산목록
변동</td><td colspan="3">☐ 없음
☐ 있음</td></tr>
<tr><td>재산관리
적절성</td><td colspan="3">☐ 문제 없음
☐ 문제 있음</td></tr>
<tr><td rowspan="2">사건분류</td><td>관리
의견</td><td colspan="3">☐ 일반 감독
☐ 간이 감독 (☐ 간이보고서 ☐ 신상심층조사, 주기: 2년)</td></tr>
<tr><td>변동
사유</td><td colspan="3">간이사건 분류기준 ( )에 해당함</td></tr>
<tr><td colspan="2">향후 감독방향</td><td colspan="3"></td></tr>
</table>

[별지1] 감독관 의견 (상세)

신상감독	4항목 예시 (거소지변동, 건강상태, 간호적절성, 향후 후견계획)
재산감독	3항목 예시 (수입 · 지출 적절성, 금융자산 변동의 적절성, 부수사건)

[별지2] 재 산 목 록 표 (기준일자: 2021. 00. 00.)

[비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부동산			
자동차 등			

* 직전년도 비금융자산 비교	□ 변동 있음 □ 변동 없음

[금융자산]

* 계좌/증권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기재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예·적금			
보험			
증권			
보증금반환채권			
현금			
대여금 등 채권			
적극재산 합계			

담보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 등			
소극재산 합계			
**금융자산 총액			

[예상수입 및 지출계획]

항 목	연간금액(백만 원)	비 고
수 입 (a)		
지 출 (b)		
***합 계 (a - b)		

[재산관리 평가]

****직전년도 금융자산 총액		***합계 (a - b)		**금융자산 총액
	+(-)		=	

※ 평가기준: 위 **금융자산 총액이 금융자산 항목의 **금융자산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단, 직전년도 비금융자산의 변동이 없을 때)

5)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미성년후견 간이사건)

<table>
<tr><th colspan="6">후견감독 조사보고서 (간이사건)</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미성년후견</td><td>재판부</td><td colspan="2">50단독</td></tr>
<tr><td>감독대상기간</td><td colspan="2">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 colspan="2">제00감독관 ○○○</td></tr>
<tr><td>감독방법</td><td colspan="2">☐ 신상심층조사
☐ 전화통화
☐ 기타(　　)</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 colspan="2">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 colspan="2">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12세)
OO초등학교 5학년</td><td colspan="2">김00 (60세, 조모)
010-1234-5678</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신상보호
변동</td><td colspan="4">☐ 없음
☐ 있음 (사유: 거소지변동, 건강상태, 후견인상태 등)</td></tr>
<tr><td>신상보호
적절성</td><td colspan="4">☐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후견인방치・학대, 요양부실, 무관심 등)</td></tr>
<tr><td rowspan="2">재산감독</td><td>중대한
재산변동</td><td colspan="4">☐ 없음
☐ 있음 (사유: 순재산 현저히 감소, 부동산 매각 등)</td></tr>
<tr><td>재산관리
적절성</td><td colspan="4">☐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수입・지출 부적절, 재산이탈, 무관심 등)</td></tr>
<tr><td rowspan="2">사건분류</td><td>관리
의견</td><td colspan="4">☐ 간이 감독 (☐ 간이보고서　☐ 신상심층조사, 주기: 2년)
☐ 일반 감독</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4">(분류기준 미충족 사유 기재)</td></tr>
<tr><td colspan="2">향후 감독방향</td><td colspan="4"></td></tr>
</table>

6)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미성년후견 불능사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불능사건)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미성년후견	재판부	50단독
감독대상기간	2021. 1. 1. ~ 2021. 12. 31.	담당감독관	제00감독관 ○○○
보고서 제출 예정일	2021. 7. 10.	차회 감독예정일	2022. 6. 30.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12세) OO초등학교 5학년	김00 (60세, 조모) 010-1234-5678	

정 기 감 독 결 과	
불능 사유	연락두절, 신원미상
감독 경과	□ 제출요구서 송부 * 1회(일반): □ 송달 * 2회(독촉): □ 송달 □ 제출요구서 송달불능/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후속조치 * 전화 1회(날짜:): □ 수신 * 전화 2회(날짜:): □ 수신 □ 통화불능 후속조치 * 문자안내(날짜:) □ 전화번호조회 (□ 동일 □ 변경) □ 문자안내 무대응 후속조치 * 후견감독기일(날짜:): □ 불출석
감독관 의견	

7) 정기감독 집행조사 보고서

후견감독 집행조사 보고서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성년후견	재판부	50단독
감독대상기간	2021. 1. 1. ~ 2021. 12. 31.	담당감독관	제00감독관 ○○○
보고서 제출일	2021. 7. 10. (기간도과 제출)	차회 감독예정일	2022. 6. 30.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	김00 (60세, 처, 010-000-0000)	이00 (40세, 자, 010-000-0000)

부수사건	☐ 없음 ☐ 이행보고서 제출 ☐ 이행보고서 미제출(제출요구)

정 기 감 독 결 과

감 독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및 신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②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③ 후견감독인은 후견인·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④ 후견인·피후견인·관계인의 후견감독인에 대한 불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의견	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

8) 후견감독 조정조치보고서

<table>
<tr><th colspan="4">후견감독 조정조치보고서</th></tr>
<tr><td>사건번호</td><td>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조정조치기간</td><td>2021. 1. 1. ~ 2021. 12. 3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상담위원</td><td>김○○ 위원</td><td>연락처</td><td>010-1234-5678</td></tr>
<tr><td>상담의뢰일</td><td>2021. 7. 10.</td><td>결과회신일</td><td>2022. 6. 30.</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td><td colspan="2">김00 (60세, 처)</td><td></td></tr>
<tr><td>조정조치사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진행경과</td><td>일시</td><td>대상</td><td colspan="2">상담방법 및 장소</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감독관 의견</td><td colspan="4">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td></tr>
</table>

9) 심층후견감독 조사보고서(신상)

<table>
<tr><th colspan="5">심층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신상)</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조사 의뢰일</td><td colspan="2">2021. 1. 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1. 7. 10.</td><td>조사위원</td><td>이○○ 위원</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td><td colspan="2">김00 (60세, 처)</td><td></td></tr>
<tr><td colspan="5">진 행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 colspan="4">□ 후견인의 신상보호 활동에 특이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4">□ 후견인의 신상보호 활동에 특이사항이 관찰되어 감독의견 작성</td></tr>
<tr><td>진행결과 및 감독관 의견</td><td colspan="4">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td></tr>
</table>

10) 심층후견감독 조사보고서(재산)

<table>
<tr><th colspan="5">심층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재산)</th></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재판부</td><td>50단독</td></tr>
<tr><td>조사 의뢰일</td><td colspan="2">2021. 1. 1.</td><td>담당감독관</td><td>제00감독관 ○○○</td></tr>
<tr><td>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1. 7. 10.</td><td>조사위원</td><td>이○○ 위원</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td><td colspan="2">후견인</td><td>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김00 (60세)</td><td colspan="2">김00 (60세, 처)</td><td></td></tr>
<tr><td colspan="5">진 행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 colspan="4">□ 후견인의 재산관리 활동에 특이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4">□ 후견인의 재산관리 활동에 특이사항이 관찰되어 감독의견 작성</td></tr>
<tr><td>진행결과 및
감독관 의견</td><td colspan="4"></td></tr>
</table>

11)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종료사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종료사건)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성년후견	재판부	50단독
종료사유 발생일	2021. 7. 1.	담당감독관	제00감독관 ○○○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김00 (60세, 처)	

재산관련 감독관 의견	
종합의견	①

다. 특정후견

1) 후견감독 집행조사 보고서(특정후견)

후견감독 집행조사 보고서 (특정후견)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특정후견	재판부	50단독
감독대상기간	2021. 1. 1. ~ 2021. 12. 31.	담당감독관	제00감독관 ○○○
보고서 제출일	2021. 7. 10. (기간도과 제출)	차회 감독예정일	2022. 6. 30.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	김00 (60세, 처, 010-0000-0000)	서초구청 (담당자: 000, 010-000-0000)

부수사건	□ 없음 □ 이행보고서 제출 □ 이행보고서 미제출(제출요구)

정 기 감 독 결 과		
감 독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및 신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②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③ 후견감독인은 후견인·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④ 후견인·피후견인·관계인의 후견감독인에 대한 불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의견	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

2) 후견감독 조사보고서(특정후견 종료사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특정후견 종료사건)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특정후견	재판부	50단독
종료사유 발생일	2021. 7. 1.	담당감독관	제00감독관 ○○○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김00 (60세, 처)	

특정후견 목적	
종합의견	①

2.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

판 사 귀하 20 . . .

감독관

사건번호	2022후감OOO 성년후견감독(기본)				
감독대상기간			감독차수	1차	
보고서제출일			관련사건		

구분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및 거소	연락처
피후견인		본인			
후견인					

사건개요		
피후견인 관련 기본사항	기본 상태	진단명 등 후견개시사유 질환
	거주 상황	가정개호 or 시설개호 여부 (시설명 등)
	재산 상황	주요 재산상황 기재

감독경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후견인	기록검토 및 유선조사

신상 관련	1) 신상보호 상황 - 시설 개호 ① ② ③ 2) 향후 신상보호 계획 ① (거소지 변동, 건강 상태, 개호 적절성, 향후 신상보호 계획 등)

<table>
<tr><td>재산 관련</td><td colspan="5">(재산목록보고 검토 결과 포함시)
- 재산목록보고가 적절했는지(관리재산 확정 위하여) 누락보고 혹은 미제출된 증빙자료는 없는지 등 검토 내역 기재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결과)
- 수입, 지출 적절성, 재산변동 특히, 금융자산 변동의 적절성
- 부수사건 여부, 이행결과보고 여부 등
- 특이사항 기재</td></tr>
<tr><td rowspan="15">재산 관련
(예. 표 삽입형)</td><td colspan="2">항목</td><td>상세내역</td><td>재산목록</td><td>1차 후견사무</td><td>비고</td></tr>
<tr><td rowspan="8">적극재산</td><td>부동산</td><td></td><td></td><td></td><td></td></tr>
<tr><td>예금</td><td>4건</td><td>205,930</td><td></td><td></td></tr>
<tr><td>보험</td><td></td><td></td><td></td><td></td></tr>
<tr><td>증권</td><td></td><td></td><td></td><td></td></tr>
<tr><td>채권</td><td></td><td></td><td></td><td></td></tr>
<tr><td>차량</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소극재산</td><td>담보대출</td><td></td><td></td><td></td><td></td></tr>
<tr><td>채무</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합 계</td><td></td><td></td><td></td></tr>
<tr><td>항목</td><td colspan="2">상세내역</td><td>재산목록</td><td>1차 후견사무</td><td>비고</td></tr>
<tr><td rowspan="3">수입</td><td colspan="2">휴업급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간병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지출</td><td rowspan="2">개호비용</td><td>입원비 등</td><td></td><td></td><td></td></tr>
<tr><td>간병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가족생활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r>
</table>

	1) 재산 상태 및 변동내역 (2019. 12. 17.~ 2022. 12. 17.) ① ② ③ 2) 향후 재산관리 사정 및 계획 ① 지금과 같이 보험금을 수령해 피후견인 개호비로 사용할 계획임. ② 앞으로
처분 의견	■ 현행 유지 □ 경고 □ 후견인 변경 □ 고발조치 □ 기타
관리 의견	□ 정상관리(년) □ 관리대상 □ 특별관리
감독 방향	□ 신상보호에 집중 □ 재산관리에 집중 □ 후견감독인 지정 필요 □ 심층조사 실시 □ 조정조치 실시 □ 일반감독 --- □ 일반감독 □ 간이감독 (주기 변경 or 보고서제출의무 면제 or 신상심층 갈음 등) □ 심층감독 (재산 심층 or 신상 심층) □ 기타 (조정조치 실시 등)
차기후견감독예정일	• • 차기후견감독대상기간:

위와 같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끝.

3. 대구가정법원

가. 조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대구가정법원

조기후견감독조사보고서

판사 귀하 2022. . .

조사관 (인)

사건번호				심판확정일	
작성기준일		재산목록 보고서제출일		차회 감독예정일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	

	감 독 항 목	그렇다	보통	아니다
재산 목록	■ 후견인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기준일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다.			
	■ 후견인은 재산목록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			
	■ 후견인이 작성한 지출계획 항목은 적절하다.			
일반	■ 후견인은 후견인 교육에 참석하였다.			
	■ 후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관리	■ 관리재산 유무	□ 있음	□ 없음
	■ 사회보장급여 여부	□ 있음	□ 없음
	■ 개시사건 재산목록 대비 재산목록보고의 중대한 변동	□ 있음	□ 없음

감독경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감독 내용
2022. 0. 0. 00:00	후견인	유선조사	신상 및 재산 조사 교육 참석 안내 2022. . .까지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안내 (기준일 4개월 후) 제출요구서 발송
2022. . .	후견인	유선조사	신상 및 재산 조사 2022. . .까지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안내 (재산조회o 2주 후, 재산조회x 1개월 후)
2022. . .	후견인	유선조사 510호 조사실, 면접조사 조사불능	신상 및 재산조사 조사기일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불출석

종합의견

○ 신상보호: 거소 이동 여부, 건강상태 등
○ 재산상황: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③ 수입 및 지출:
④ 기타(상속재산처리 등):
○ 종합의견: 특이사항 없음. /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경고 및 후견사무활동에 대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후견감독조사보고서(기본)

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기본)

판사 귀하 2022. . .

조사관 (인)

개시 사건번호		감독 사건번호		사건분류	성년/한정/특정(년)/ 미성년후견
심판 확정일		감독 대상기간	-	관련사건	-

구분	성명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조 사 사 항

감독경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후견인	전화조사
후견인교육 이수여부	□ 이수 □ 미이수 □ 해당없음		
보고서 제출여부	■ 재산목록보고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후견사무보고서: □ 제출 □ 미제출 ■ 미제출 사유:		

감독항목

	감 독 항 목	그렇다	보통	아니다
신상보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건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후견인이 간호, 주거확보, 의료, 재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호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고 있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방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학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재산관리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지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수입누락이 관찰되지 않았다.			
	■ 지출항목이 적절하다.			
	■ 후견인의 개인 지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	■ 후견인의 재산 횡령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 후견인이 감독에 협조적이다.			
	■ 피후견인 및 관계인의 불만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됨.			
	□ 변경 의사	□ 후견인 □ 피후견인 □ 관계인		
	□ 변경 사유			
■ 위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 요약 보고함.				

□ 위와 같이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에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함.

□ 위와 같이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에 특이사항이 관찰되어 다음의 감독의견을 작성함.

감독의견

<table>
<tr><td rowspan="4">신상
보호</td><td>피후견인
심신상태</td><td>☐ 변동 없음
☐ 변동 있음</td></tr>
<tr><td>피후견인
감호상황</td><td>☐ 변동 없음
☐ 변동 있음</td></tr>
<tr><td>피후견인 현 상태</td><td>○
○
○</td></tr>
<tr><td>후견인 현 상태</td><td>○
○
○</td></tr>
<tr><td>재산
정보</td><td>경제 상태</td><td>○
○
○</td></tr>
<tr><td>신상에
관한
의견</td><td colspan="2">☐ 특이사항 없음
☐ 심층조사요망
▪ 심층조사 필요사유:</td></tr>
<tr><td>재산에
관한
의견</td><td colspan="2">☐ 특이사항 없음
☐ 심층조사요망
▪ 심층조사 필요사유:
▫ 지출항목의 부적합 ▫ 수입누락 ▫ 소명자료의 부족 ▫ 기타</td></tr>
<tr><td>처분
의견</td><td colspan="2">☐ 심층조사 후 의견 개진
☐ 현행유지
▫ 정상관리(2년) ▫ 정상관리(1년) ▫ 관리대상(6개월) ▫ 특별관리(3개월)</td></tr>
<tr><td>감독
방향</td><td colspan="2">☐ 특이사항 없음
☐ 신상보호에 집중
☐ 재산관리에 집중
☐ 후견감독인 지정 필요(후견감독인:)</td></tr>
<tr><td colspan="2">차기후견감독예정일</td><td></td></tr>
<tr><td colspan="2">후견인 추가 제출 증빙자료</td><td></td></tr>
</table>

다. 후견감독조사보고서(간이감독)

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간이)

판사 귀하 2024. . .

조사관 (인)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재판부	성년후견
심판확정일 (기준일)	2021. 12. 20. (매년 1. 1.)	감독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감독방법	☐ 보고서제출(2023. 12. 30.) ☐ 전화통화 ☐ 기타( )	차회 감독예정일	2024. 12. 31.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치매 ☐ 자택 ☐ 요양원 ☐ 병원/시설	김00 (60세, 처) 010-1234-5678	

정 기 감 독 결 과

신상감독	신상보호 변동	☐ 없음 ☐ 있음 (사유: 거소지변동, 건강상태, 후견인상태 등)
	신상보호 적절성	☐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후견인방치·학대, 요양부실, 무관심 등)
재산감독	중대한 재산변동	☐ 없음 ☐ 있음 (사유: 순재산 현저히 감소, 부동산 매각 등)
	재산관리 적절성	☐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사유: 수입·지출 부적절, 재산이탈, 무관심 등)
사건분류	관리 의견	☐ 간이 감독 (☐ 간이보고서 ☐ 신상심층조사 필요) ☐ 일반 감독
	변경 사유	(분류기준 미충족 사유 기재)
향후 감독방향		사회보장 수급자로서 재산 감독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병세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피후견인의 신상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집중 요망 ※ 별지 없이 (사유:)간이하게 사유기재 ※ 현재 기본감독사건도 간이는 2년, 보고서, 증빙서류 무리한 징구 없이 통화/신상심층조사로 정기감독 갈음할 수 있다. ▸ 심판문 기준 감독예정일 최초 간이 후견감독시행 ▸ 특이사항 없음 ▸ 간이감독 유지(2년)

라. 후견감독보고서(종료)

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종료)

부장판사 귀하 2024. . .

조사관 (인)

사건번호	2021후감00000	사건분류	성년후견
심판확정일 (기준일)	2021. 12. 20 (매년 1. 1.)	종료사유발생일	2023. 12. 31.
감독방법	□ 보고서제출 □ 전화통화 □ 기타( )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	2023. 12. 30.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김00 (60세)	김00 (60세, 처) 010-1234-5678	

재산관련 감독관 의견	(만약 간이사건인 경우, 별도의견작성 불요)
종합의견	2023. 12. 31.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해 감독종료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하고, 4개월 이상인 경우 제출요구서를 송달하여 재산계산보고서(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함

4. 부산가정법원

가.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판사 귀하

<table>
<tr><td>사건명</td><td colspan="6">20 후감00 성년(미성년, 한정)후견감독(기본)</td></tr>
<tr><td>개시사건
(심판확정일)</td><td colspan="2"></td><td>직권
개시일</td><td></td><td>감독 대상기간</td><td></td></tr>
<tr><td>구분</td><td>성명</td><td>관계</td><td>생년월일</td><td colspan="2">주소</td><td>연락처</td></tr>
<tr><td>피후견인</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후견인</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후견감독인</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3">보고서
제출 여부</td><td colspan="2">후견사무
보 고 서</td><td colspan="5">☐ 제출 (제출 날짜: 0000. 00. 00.)
ㄴ ☐ 증빙자료 완비 ☐ 증빙자료 미비 ☐ 증빙자료 없음
☐ 미제출</td></tr>
<tr><td colspan="2">후견감독
보 고 서</td><td colspan="5">☐ 제출 (제출 날짜: 0000. 00. 00.)
ㄴ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있음
☐ 미제출</td></tr>
<tr><td colspan="7">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특이사항 및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후속 조치상황 등에 관해 간략히 기재
▸</td></tr>
<tr><td rowspan="4">신상 관련</td><td colspan="2">피후견인의
심신상태</td><td colspan="5">☐ 변동 없음 ☐ 변동 있음</td></tr>
<tr><td colspan="2">피후견인의
감호상황</td><td colspan="5">☐ 변동 없음 ☐ 변동 있음</td></tr>
<tr><td colspan="2">신상에 관한
의견</td><td colspan="5">☐ 문제 없음
☐ 심층조사 요망: (사유 기재)</td></tr>
<tr><td colspan="7">개시 이후, 피후견인의 심신상태 및 감호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변화 내용을 간략히 작성
▸</td></tr>
</table>

재산 관련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 합계	
	수입 총액	
	지출 총액	
	기타 특이사항	*(보상금, 상속, 소송 등 관련)* ‣ 특이사항 없음.
	재산에 관한 의견	☐ 문제 없음 ☐ 심층조사 요망 ㄴ ☐ 지출항목 부적합 ☐ 수입 누락 ☐ 소명자료 부족 ☐ 기타:
처분 의견	☐ 현행 유지 ☐ 심층조사 후 의견 개진 ☐ 기타: *(후견인 변경, 고발, 경고 등)*	
감독 방향	☐ 신상보호에 집중 ☐ 재산관리에 집중 ☐ 후견감독인 지정 필요 ☐ 심층조사 실시 ☐ 조정조치 실시 ☐ 감독기간 2년으로 변경 ☐ 기타:	

20 . 00. 00.

○ ○ ○ 조사관

나.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조기감독)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조기)

판사 귀하

사건명	20 후감00 성년(미성년, 한정)후견감독(기본)					
개시사건 (심판확정일)			직권 개시일		감독 대상기간	

구분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고서 제출 여부		
	재산목록 보고서	□ 제출 (제출 날짜: 0000. 00. 00.) ㄴ □ 증빙자료 완비 □ 증빙자료 미비 □ 증빙자료 없음 □ 미제출
	후견감독 보고서	□ 제출 (제출 날짜: 0000. 00. 00.) ㄴ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있음 □ 미제출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특이사항 및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후속 조치상황 등에 관해 간략히 기재	

신상 관련		
	피후견인의 심신상태	□ 변동 없음 □ 변동 있음
	피후견인의 감호상황	□ 변동 없음 □ 변동 있음
	피후견인의 감호형태	□ 자택 개호 □ 시설 개호 (시설명:)
	신상에 관한 의견	□ 문제 없음 □ 심층조사 요망
	개시 이후, 피후견인의 심신상태 및 감호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변화 내용을 간략히 작성	

재산 관련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 합계	
	수입 총액	
	지출 총액	
	기타 특이사항	*(보상금, 상속, 소송 등 관련)* ‣ 특이사항 없음.
	재산에 관한 의견	□ 문제 없음 □ 심층조사 요망 ㄴ □ 지출항목 부적합 □ 수입 누락 □ 소명자료 부족 □ 기타:
사건 분류	분류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사건본인의 재산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건 □ 사건본인의 재산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2년이내 재산고갈 예상 □ 해당없음
	차기감독 관리의견	□ 간이 감독 □ 일반감독
감독 방향	□ 신상보호에 집중 □ 재산관리에 집중 □ 후견감독인 지정 필요 □ 심층조사 실시 □ 조정조치 실시 □ 감독기간 2년으로 변경 □ 기타:	

20 . 00. 00.
○ ○ ○ 조사관

5. 울산가정법원

가. 재산목록 후견감독보고서

<table>
<tr><td colspan="7">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2022. 03. 01.</td></tr>
<tr><td colspan="2">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
(성년/한정/미성년 표기)</td><td>담당감독관</td><td colspan="2">조사관 000</td></tr>
<tr><td colspan="2">작성기준일</td><td colspan="2">2022. 07. 01.</td><td>수명년월일</td><td colspan="2">2022. 03. 01.</td></tr>
<tr><td colspan="2">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2. 08. 31.</td><td>차회
감독예정일</td><td colspan="2">2023. 07. 01.
(2023. 07. 01. ~ 2024. 07. 01.)</td></tr>
<tr><td rowspan="3">피후견인</td><td>성명</td><td></td><td>성별/
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거소</td><td colspan="5"></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후견인</td><td>성명</td><td></td><td>성별/
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거소</td><td colspan="5"></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5">후견인의 딸(이OO) 연락처 : 010-0000-0000</td></tr>
<tr><td colspan="2">후견인 협조도</td><td colspan="5">■ 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후견인
사무능력</td><td colspan="5">□ 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부수사건</td><td colspan="5">후기사건만 기재</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5">후견인 외 가족, 관련기관, 관련인 연락처, 메모 등</td></tr>
<tr><td colspan="2">사 건 개 요</td><td colspan="5">(청구목적, 피후견인 상태, 면접교섭 갈등 유무, 부수사건 등)</td></tr>
<tr><td colspan="2">종 합 의 견</td><td colspan="5"></td></tr>
</table>

처 분 의 견	■ 현행유지 □ 경고 □ 후견인 변경 □ 고발조치 □ 후견감독인 선임 □ (신상)심층후견감독 □ (재산)심층후견감독
관 리 의 견	■ 정상관리(1년) □ 관리대상(6개월) □ 특별관리(3개월)
차기 감독시 확인할 사항	

재 산 목 록 표 (기준일자: 2021. 00. 00.)

[비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부동산	주소, 지목, 면적, 지분
자동차 등	차량명, 연식, 지분

[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금액	비 고
예·적금	농협 예금통장(-3123)	2,123,123	주거래 및 보험금 수령 계좌
	우체국 적금통장(-3124)	2,123,123	
예금재산 합계			

보험	삼성(1234)	월 40,000원	
	현대(5678)	-	불입완료
증권	유안타증권(2345)	평가금액	
보증금반환채권			계약만료시기
현금			
대여금 등 채권			
담보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계약만료시기
차용금 등			
소극재산 합계			

[예상수입 및 지출계획]

항 목		금액	비 고
수 입	정기수입	월 312만 원	
	비정기수입	-	예상 건강보험환급금, 보험수령금 등
지 출	정기지출	월 312만 원	
	비정기지출	-	예상 치과치료,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나.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일반)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022. 03. 01.

<table>
<tr><td colspan="2">사건번호</td><td colspan="2">2021후감00000 성년후견</td><td>담당감독관</td><td colspan="2">조사관 000</td></tr>
<tr><td colspan="2">감독대상기간</td><td colspan="2">2021. 01. 01.
~ 2021. 12. 31.</td><td>수명년월일</td><td colspan="2">2022. 03. 01.</td></tr>
<tr><td colspan="2">작성기준일</td><td colspan="2">2021. 07. 01.</td><td rowspan="2">부수사건</td><td colspan="2">☐ 있음 ☐ 없음</td></tr>
<tr><td colspan="2">보고서 제출일</td><td colspan="2">2023. 07. 01.
(☐ 기간도과)</td><td>이행
보고서</td><td>☐ 제출,
☐ 미제출(제출요구)
☐ 사건진행중</td></tr>
<tr><td rowspan="3">피후견인</td><td>성명</td><td></td><td>성별/
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거소</td><td colspan="5"></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후견인</td><td>성명</td><td></td><td>성별/
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거소</td><td colspan="5"></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5">후견인의 딸(이OO) 연락처 : 010-0000-0000</td></tr>
<tr><td colspan="7">정 기 감 독 결 과</td></tr>
<tr><td rowspan="2">신상감독</td><td>신상보호 변동</td><td colspan="5">☐ 없음
☐ 있음</td></tr>
<tr><td>신상보호
적절성</td><td colspan="5">☐ 문제 없음
☐ 문제 있음</td></tr>
<tr><td rowspan="2">재산감독</td><td>재산목록 변동</td><td colspan="5">☐ 없음
☐ 있음</td></tr>
<tr><td>재산관리
적절성</td><td colspan="5">☐ 문제 없음
☐ 문제 있음</td></tr>
<tr><td colspan="2">후견인 협조도</td><td colspan="5">☐ 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신상보호</td><td colspan="5">현재 돌봄 상태, 피후견인 변화, 거소변동 확인 등</td></tr>
</table>

종 합 의 견	
처 분 의 견	■ 현행유지 □ 경고 □ 후견인 변경 □ 고발조치 □ 후견감독인 선임 □ (신상)심층후견감독 □ (재산)심층후견감독
관 리 의 견	■ 정상관리(1년) □ 관리대상(6개월) □ 특별관리(3개월) □ 정상관리(2년)
차기 감독시 확인할 사항	
차 기 후 견 감독 예정일	

재 산 목 록 표 (기준일자: 2021. 00. 00.)

[비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부동산	□ 변동 있음 ☑ 변동 없음(총 4건)
	변동사항 있을 시 자세히 기록
자동차 등	□ 변동 있음 ☑ 변동 없음(총 4건)
	변동사항 있을 시 자세히 기록

[금융자산]

항 목	상세내역	금액(백만 원)	비 고
예·적금	농협 예금통장(-1234)		주거래 계좌
	농협 적금통장		2022. 01. 01. 만기예정
	신한 적금통장		2022. 01. 01. 만기예정
	농협 예금통장 (123123123123)		(신규가입)
	농협 1건, 신한은행 3건(예금통장)	총액	

예금 재산 합계			직전년도예금자산	원
			예변동	(+) (-)
보험	KB손해보험 4건	월 240,000원		
		-	불입완료	
증권	증권회사 3건	평가금액		
보증금반환채권				
현금				
대여금 등 채권				
담보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 등				
소극재산 합계				

[수입 및 지출]

항 목		연간금액(백만 원)	비 고
수 입 (a)	정기수입	월 312만 원	
	비정기수입	-	건강보험환급금(건보상환금), 보험수령금 등
지 출 (b)	정기지출		
	비정기지출	-	리모델링 비용

6. 광주가정법원

가. 후견감독조사보고서(성년후견)

광주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

판사 귀하 2024. . .

후견감독조사관

사 건		20 후감 성년후견감독(기본)			
감독대상기간			관련사건		
피후견인	성 명 (생년월일)			피후견인 상태	
	주 소				
	거 소			연락처	
후견인	성 명 (생년월일)			피후견인과 관계	
	주 소				
	송 달 장 소	상동		연락처	
종 합 의 견					
처 분 의 견		☑ 현행유지 ☐ 경고 ☐ 후견인 변경 ☐ 고발조치 ☐ 후견감독인 선임 ☐ (신상)심층후견감독 ☐ (재산)심층후견감독			
관 리 의 견		☑ 정상관리(1년☐, 2년☑) ☐ 관리대상(6개월) ☐ 특별관리(3개월)			

- 후견사무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재산 및 신상관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정상관리(2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신 상 관 리

-
-
-
-

재 산 관 리

- 부동산
  -
  ※ 특이사항

- 예금

	은 행	계 좌 번 호	금 액
1			원
2			원
3			원

※ 특이사항
-

- 보험

	보 험 사	총 납 입 금	비 고
1		원	
2		원	
3		원	

- 자동차
  - K5, 2020년식, 359모5580, 지분 1%

- 기타 채권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2		원	
합 계		원	

▸ 수입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합 계		원	

▸ 지출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합 계		원	

※ 특이사항

▸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

▸

조 사 경 과			
감 독 경 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2024. . .	후견인	기록검토 및 전화조사
차 기 후 견 감 독 예 정 일	2026. . .		

위와 같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끝.

나. 후견감독조사보고서(미성년후견)

광주가정법원
후견감독조사보고서

판사 귀하 2024. . .

후견감독조사관

<table>
<tr><td colspan="2">사 건</td><td colspan="4">20 후감 미성년후견감독(기본)</td></tr>
<tr><td colspan="2">감독대상기간</td><td></td><td>관련사건</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피후견인</td><td>성 명
(생년월일)</td><td colspan="2" rowspan="2"></td><td colspan="2">피후견인 상태</td></tr>
<tr><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후견인</td><td>거 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성 명
(생년월일)</td><td colspan="2"></td><td>피후견인과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송 달
장 소</td><td colspan="2">상동</td><td>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6">종 합 의 견</td></tr>
<tr><td colspan="2">처 분 의 견</td><td colspan="4">☑ 현행유지 ☐ 경고 ☐ 후견인 변경 ☐ 고발조치
☐ 후견감독인 선임 ☐ (신상)심층후견감독 ☐ (재산)심층후견감독</td></tr>
<tr><td colspan="2">관 리 의 견</td><td colspan="4">☑ 정상관리(1년☑, 2년☐) ☐ 관리대상(6개월) ☐ 특별관리(3개월)</td></tr>
<tr><td colspan="6">■ 후견사무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재산 및 신상관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정상관리(1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td></tr>
</table>

신 상 관 리

-
-
-
-

재 산 관 리

- 부동산
  -
  -

  ※ 특이사항

- 예금

	은 행	계 좌 번 호	금 액
1			원
2			원
3			원
합 계			원

- 보험

	보 험 사	총 납 입 금	비 고
1		원	
2		원	

- 주식

	목 록	주 식 수	1주당 평가금
1		주	5,000원
2		주	

- 기타 채권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 자동차

- 소나타, 2020년식, 00가0000, 지분 %

▸ 기타 채무 : 00,000,000원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합 계		원	

▸ 수입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2		원	
3		원	
합 계		원	

▸ 지출

	목 록	금 액	비 고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합 계		원	

※ 특이사항

▸

▸

1.

가.

-

나.

-

조 사 경 과			
감 독 경 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2024. . .	후견인	기록검토 및 전화조사
차 기 후 견 감 독 예 정 일	2025. . .		

위와 같이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끝.

다. 후견감독집행조사보고서(특정후견)

광주가정법원

후견감독 집행조사 보고서(특정후견)

판사 귀하 2024. . .

후견감독조사관

사 건 명	20 후감 특정후견감독(기본)				
피 후 견 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감독대상기간			보고서제출일		
감 독 일 시	2024. 기록검토 등		차회감독예정일		

정 기 감 독 결 과		
감 독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및 신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②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③ 후견감독인은 후견인·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④ 후견인·피후견인·관계인의 후견감독인에 대한 불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의견	▶ 신상관리 • • ▶ 재산관리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수입 • 지출 • • ▶ **종합의견** •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에 특이사항 없음.

위와 같이 후견감독집행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끝.

[별첨2] 설문조사 문항지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문항지

본 설문은 2014년 이후 후견감독사건(후감)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법원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법원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후견감독사건(후감)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경우 아래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중복되는 경우 담당한 마지막 연도가 속한 시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2014년 ~ 2016년
② 2017년 ~ 2019년
③ 2020년 ~ 2022년
④ 2023년 ~ 2025년

2.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근무한 법원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중복되는 경우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근무한 법원을 선택하고, 이하의 답변에서 해당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① 가정법원 본원
②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지방법원 본원
③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국 설치 지원)
④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국 미설치 지원)

3.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의 직렬 및 직급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법원사무직렬 사무관
② 법원사무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③ 법원사무직렬 서기 또는 서기보
④ 조사사무직렬 사무관
⑤ 조사사무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⑥ 조사사무직렬 서기 또는 서기보

4.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담당한 전체 업무의 업무량 중 후견(후견개시사건, 후견감독사건, 후견부수사건) 업무의 업무량이 차지한 비중은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5.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담당한 전체 업무의 업무량 중 후견감독사건 업무의 업무량이 차지한 비중은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 미만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6. 귀하가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할 당시 보직에서 수행한 전체적인 업무량을 다른 보직 담당자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비교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①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매우 적다
②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다소 적다
③ 평균적 업무량과 비슷하다
④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다소 많다
⑤ 평균적 업무량에 비하여 매우 많다

6-1. 다른 보직 담당자의 평균적인 업무량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즉, ④, 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겸임 업무의 과중
② 담당 후견감독사건 수의 과다
③ 누적된 미감독 사건 수의 과다
④ 후견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
⑤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후견사무 안내, 민원 응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과다
⑥ 기타 (기타의 경우 주관식 기재)

7. 후견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어려움이 없음

② 후견감독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

③ 후견감독사건의 전문성 요구로 인한 업무파악의 어려움

④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

⑤ 누적된 미감독 사건의 처리

⑥ 후견인 사무수행에 관한 안내 및 민원 응대

⑦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한 후견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⑧ 기타 (기타의 경우 주관식 기재)

8. 귀하는 후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적정 보직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9. 귀하는 후견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10.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 · 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 · 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 · 라오스 ·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 · 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 · 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 · 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5. 9. 25.
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2025. 9. 26.
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2025. 12. 29.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현안 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2025. 8. 20.
현안 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2025. 9. 10.
현안 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2025. 12. 12.
현안 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2025. 12. 30.

▣ 202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2026. 1. 29.
2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2026. 1. 30.
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이현호	2026. 2. 5.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하	2026. 2. 12.
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2026. 4. 30.
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2026. 5. 18.
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6. 5. 27.
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2026. 6. 30.
9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6. 7. 16.
10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 · 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6. 7. 23.
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6. 7. 24.
12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헌	2026. 7. 31.
13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유리	2026. 8. 6.
현안 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2026. 3. 10.
현안 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6. 3. 19.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6년 7월 27일 인쇄
2026년 8월 6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감디자인
TEL 031-939-3300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410-9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4109
ISBN 979-11-6168-410-9